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16-10

2007

인권상담사례집



2007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All Humanrights for All

2007 인권상담사례집

지은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펴낸날 2007년 10월 25일

펴낸이 안 경 환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Tel. 02-2125-9810

ISBN 978-89-6114-016-4 93330

홈페이지 <http://humanrights.go.kr>

디자인·제작 사회복지법인 너머인쇄사 (02-868-6854)

“국민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데 유용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2005년, 2006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설립 당시 인권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전화, 대면상담 또는 순회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국민에게 법적, 제도적 해결 절차 및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당했던 억울한 사연에서부터 이웃과의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상담사례집은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우리 위원회를 거쳐 간 1만 여건에 가까운 상담사례중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책자는 국민이 우리 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다양한 사례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우리나라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확인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 10.

2007 인권사례집 발간에 부쳐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상담집계 기간	10
2. 상담처리 결과	10
3. 상담경로와 유형별 현황	11
4. 인권침해 상담	12
5. 차별행위 상담	14
6. 기타상담	16
7. 내담자별 현황	16

인권침해

수사정보기관

사례 1. 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	24
사례 2. 벌금 납부와 관련한 인권 침해	26
사례 3. 검찰의 개인정보 누출에 의한 인권침해	29
사례 4. 검찰의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32
사례 5.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34
사례 6.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37
사례 7.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39
사례 8. 경찰의 가혹행위	43
사례 9. 경찰의 피의자 십지문 전자채취	45
사례 10.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48
사례 11. 전·의경 부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53
사례 12. 경찰의 응급조치 미흡	58
사례 13. 경찰의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60
사례 14. 미성년자 조사 시의 인권침해	63
사례 15. 경찰의 폭행	66
사례 16. 경찰의 인격권 침해	69

군대

사례 17. 군대 내 폭행	74
사례 18. 군대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79
사례 19. 군의 의료접근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83

다수인 보호시설

사례 20.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한 인권침해	88
사례 21. 정신병원의 사생활 침해	95
사례 22. 외부교통권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97
사례 23. 정신병원 계속 입원요청	105

구금시설

사례 24.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108
사례 25. 의료조치 미흡	111
사례 26. 수용자의 자살	113

지방자치단체

사례 27. 지방자치단체 행정실수로 인한 인권침해	116
사례 28. 지자체 공무원의 인격권 침해	119
사례 29.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121

교육기관

사례 30. 교사의 사생활 침해	124
사례 31. 교사의 폭언, 폭력	126
사례 32. 학교의 운동선수 이적 불허	129

사법기관

사례 33. 판사의 인격권 침해	134
사례 34.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135
사례 35.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	137

Contents

기타 국가기관

사례 36. 조선족 배우자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140
사례 37. 부당한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144
사례 38.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의 폭행 등	147
사례 39. 외국인 보호소 내의 폭력	150
사례 40. 재중동포 2세의 국적신청	152
사례 41.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	155
사례 42. 노동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157
사례 43.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159
사례 44. 새터민에 대한 인권침해	162

기타 인권위 조사대상이라고 볼수 없는 사례

사례 45. 검찰의 불기소처분	166
사례 46. 경찰의 편파수사	168
사례 47. 불공정한 재판	169
사례 48. 고용허가제 등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내용	171
사례 49. 난민신청	173
사례 50.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174
사례 51. 긴급출동 요청	175

차별행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52. 성별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신청 거부	182
사례 53.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184
사례 54. 직장상사의 예비참석 강요	188
사례 55. 사립대학의 예비참석 강요	190
사례 56. 중학교의 특정 종교 강요	19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57. 컴퓨터 실기 시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196
사례 58.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199
사례 59. 주주총회 자료제공 시 시각장애인 차별	20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60. 공무원채용 시의 나이차별 206
사례 61.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의 나이차별 208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62.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214
사례 63.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해고 216
사례 64.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218
사례 65. 사립학교 근무경력 불인정 222
사례 66. 개인택시 발급시 근속자 우대 224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67. 타지역 운전경력 불인정 230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68.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34
사례 69.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 238
사례 70.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성차별 241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71.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246
사례 72. 용모에 의한 고용차별 249
사례 73. 학교의 두발단속 251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74. 재혼가정자녀에 대한 입학차별 254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7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258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

- 사례 76. 혼인을 이유로 한 해고 262

Contents

사상·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7. 면접 시 정당가입 여부 조사	266
------------------------------	-----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8.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68
-----------------------------	-----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9.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재화공급이용 차별	272
--------------------------------------	-----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0. 자격증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278
------------------------------	-----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사례 81. 직장상사와 친분관계인 자의 성희롱	288
사례 82. 직장상사의 성희롱	290
사례 83. 파견지 상사의 성희롱	291

학교 내 성희롱

사례 84. 교수의 성희롱	296
----------------------	-----

비신체적 성희롱

사례 85. 직장상사의 성희롱적 발언	302
----------------------------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사례 86.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 무시	308
-----------------------------	-----

부록

국가인권위원회법

2007 인권상담 사례집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All Humanrights
for All*

1. 상담집계 기간
2. 상담처리 결과
3. 상담경로와 유형별 현황
4. 인권침해 상담
5. 차별행위 상담
6. 기타상담
7. 내담자의 현황

1. 상담집계 기간

‘2007 상담사례집’은 ‘2006 상담사례집’(2005. 7. 1. ~ 2006. 6.30.)에서의 1년 분량을 통계 처리한 후 2006. 7. 1. ~ 2007. 6.30.까지의 1년분에 해당하는 상담사례를 묶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상담사례 수는 9,073건으로 ‘2006 상담사례집’ 1년 합산 8,586건 보다 487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같은 수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지역사무소 제외)에서 전화와 대면, 인터넷을 통해 상담한 것이다.

구분	2004 상담사례집	2005 상담사례집	2006 상담사례집	2007 상담사례집
기 간	2001.11.25~2003.12.31	2004.1.1~2005.6.30	2005.7.1~2006.6.30	2006.7.1~2007.6.30
건 수	7,605건	8,262건	8,586건	9,073건

2. 상담처리 결과

상담처리 결과는 크게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진정예정, 재상담예정, 진정접수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다.

2-1.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처리유형		처리이유	전화	대면	인터넷문자	우편	이메일	FAX	합계
상담종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16	610	2	1			2,629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종결		424	109					533
	진술내용의 현실성/신빙성결여		230	93					323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933	212	1				1,146
	조사가능기간 초과		126	54	1				181
	상담으로 문제해결		212	71					283
	이미 진정한 상담		57	23					80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74	45		1			120
	기타		279	307	1				587
소계			4,351	1,524	5	2			5,882
타기관 안내	보다적절한 기관안내		208	63					271
	내담자가 타기관 문의		18	10					28
	기타		1	1					2
	소계			227	74				
진정예정	다른방법으로 진정예정		1,335	39	3				1,377
	고려후에 진정예정		246	29			1		276
	서류구비하여 진정예정		54	58					112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43	9					52
	사건추이보고 진정예정		175	23	1				199
	재상담후 진정예정		37	4					41
	기타		9	3					12
	소계			1,899	165	4		1	

재상담 예정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예정	127	1					128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예정	111	13					124
	사건추이보고 재상담예정	194	28					222
	내담자가 상담 원함	114	26					140
	상담시간부족 및 과다로 재상담예정	13	2					15
	기타	53	4					57
	소계	612	74					686
진정접수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	1				1	3	5
	조사대상은 불분명하나 위원회판단원함						1	1
	소계	1				1	4	6
기타	상담도중 전화끊김	63						63
	조사담당자 안내	4	1					5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뜬	1	2					3
	기타	47	11					58
	소계	115	14					129
합계	7,205	1,851	9	2	2	4	9,073	

총 상담사례 9,073건 중 상담종결이 5,882건으로 64.82%를 차지했다. 진정예정은 2,069건으로 22.8%를 차지하였고, 타기관 안내는 1,377건으로 15.17%, 재상담예정은 686건으로 7.56%를 차지 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상담은 129건인데 이는 상담도중 전화가 끊기거나 내담자가 자리를 뜨는 등으로 상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상담종결 5,882건을 보면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가 1,146건으로 가장 많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533건, 진술내용의 현실성이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323건 등이다.

3. 상담경로와 유형별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합계	
	FAX	대면	이메일	인터넷	전화	소계	FAX	대면	우편	이메일	인터넷	전화		소계
기타		400		2	1,524	1,926		604	2		1	1,932	2,539	4,465
차별	1	44	1	1	355	402		72		1	2	425	500	902
침해	1	250			1,333	1,584	3	480			3	1,636	2,122	3,706
합계	2	694	1	3	3,212	3,912	3	1,156	2	1	6	3,993	5,161	9,073

※ 인터넷상담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 문자상담 등을 말한다.

상담경로를 살펴보면 총 9,073건 중 전화상담이 7,205건(79.41%)으로 가장 많고, 대면상담이 1,850건(20.39%)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3,706건인 반면 차별은 902건을 차지하고 있다. 4,465건의 기타상담은 인권침해나 차별과 관계없거나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안되는 사례 등이다. 이에따라 비중이 높은 상담유형은 기타→침해→차별 순이다. 이와같은 상담유형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 인권침해 상담

4-1.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구분	년도별	2006년	2007년	총누계
합계		1,584(%)	2,122(%)	3,706(%)
검찰		123(7.8)	157(7.4)	280(7.6)
경찰		563(35.5)	560(26.4)	1,123(30.3)
구금시설		62(3.9)	66(3.1)	128(3.5)
국정원		6(4)	5(2)	11(3)
군검찰(군대/수사)		5(3)	1(0)	6(2)
군구금시설		3(2)	1(0)	4(1)
군헌병		1(1)	2(1)	3(1)
기타국가기관		188(11.9)	404(19)	592(16)
기타군사		68(4.3)	91(4.3)	159(4.3)
기타기관		2(1)	24(1.1)	26(7)
다수인보호시설		373(23.5)	554(26.1)	927(25)
사법기관		31(2)	37(1.7)	68(1.8)
입법기관		3(2)	1(0)	4(1)
지방자치단체		148(9.3)	211(9.9)	359(9.7)
특별사법경찰		8(5)	8(4)	16(4)

인권침해의 경우 피진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경찰관련 상담이 1,123건(30.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수인보호시설이 927건(25%), 기타국가기관이 592건(16%)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기까지는 기타국가기관과 관련된 상담이 다수인보호시설보다 많았으나 이번에 순위가 변경됐다. 실제로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상담은 전년도에 496건이던 것이 이번에 92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4-2.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인권침해 관련 상담 내용 중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사법경찰관 리 등 수사기관의 경우를 순위별로 보면 ① 편파·불공정 수사 ②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③ 과도한 신체검사, 인격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과 관련해서는 ① 위법·부당한 처분 ②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③ 인격권침해 ④ 사생활비밀 침해 순으로 많았다. 구금·보호시설과 관련한 상담으로는 ①의료조치미흡 ② 폭행, 가혹행위 ③ 부당처우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는 ① 불법, 강제수용 ② 폭행, 가혹행위 ③ 외부교통권 제한 ④ 시설, 환경 등의 순으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등 군사기관과 관련한 상담은 폭행, 가혹행위와 근무환경 등의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4-3.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유형		년도별		
합계		2006년	2007년	합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병, 기무사	소계	706	733	1,439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청, 과잉진압, 간접피해	58	44	102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119	122	241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침해	93	93	186
	편파, 불공정 수사	196	227	423
	불법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32	34	66
	함정수사, 부당 강압 증거확보	15	15	30
	피의자권리미고지, 가족에 미통지	13	17	30
	접견/교통권제한	2	1	3
	알권리 침해	8	9	17
	공소권 남용	12	12	24
	전과기록 미삭제	1	4	5
	부당한 사건분류	9	4	13
	내사/피의사실 유포	16	9	25
	의료권 방해/제한	8	9	17
사회적약자 보호조치미흡	18	7	25	
기타	106	126	232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소계	370	653	1,023
	위법/부당한 처분	119	118	237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82	123	205
	폭행/가혹행위	20	21	41
	인격권 침해	40	78	118
	사생활 비밀 침해	38	48	86
	알권리 침해	3	5	8
	공무원 부당 처우	8	12	20
	행정/제도 개선	12	9	21
	출입국 제한	5	1	6
기타	43	238	281	
구금/보호시설 (군구금시설 포함)	소계	65	67	132
	의료조치 미흡	26	20	46
	권리구제절차제한	1		1
	서신/집필제한	3	1	4
	부당한 조사징벌	4	3	7
	폭행/가혹행위	13	13	26
	부당처우	4	13	17
기타	14	17	31	
다수인보호 시설	소계	373	554	927
	불법/강제 수용	175	286	461
	폭행/가혹행위	65	71	136
	외부 교통권 제한	26	48	74
	의료조치 미흡	21	25	46
	강제노동	6	8	14
	인격권침해	11	31	42
	시설, 환경	24	29	53
기타	45	56	101	

군사기관 (군수사기관, 군구금 시설제외)	소계	68	91	159
	생명권 침해	4	4	8
	폭행/가혹행위	24	34	58
	근무환경	18	21	39
	불합리한 제도행정	5	12	17
	기타	17	20	37
기 타			26	26

5. 차별행위 상담

5-1. 차별행위 상담시 기관별 현황

구분	년도별	2006년	2007년	총누계
합계		402(%)	500(%)	902(%)
개인회사		76(18.9)	91(18.2)	167(18.5)
검찰/경찰		15(3.7)	9(1.8)	24(2.7)
공공기관(공법인)		23(5.7)	33(6.6)	56(6.2)
교육기관		41(10.2)	60(12)	101(11.2)
구금시설		1(2)		1(1)
군대		2(5)		2(2)
기타		14(3.5)	12(2.4)	26(2.9)
기타국가기관		24(6)	35(7)	59(6.5)
단체		7(1.7)	13(2.6)	20(2.2)
법인(사법인)		26(6.5)	32(6.4)	58(6.4)
보호시설		1(2)	5(1)	6(7)
사인		11(2.7)	19(3.8)	30(3.3)
주식회사 등(법인)		116(28.9)	153(30.6)	269(29.8)
지방자치단체		45(11.2)	38(7.6)	83(9.2)

차별행위의 경우 가해자(기관)별 유형을 보면 총 902건중 주식회사 등 법인에서의 차별상담이 269건(2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개인회사 167건(18.5%), 교육기관이 101건(11.2%), 기타국가기관이 59건(6.5%) 순이다.

5-2. 차별행위 상담시 사유별 현황

구분	년도별	2006년	2007년	합계
합계		402	500	902
가족상황		5	2	7
기타		44	53	97
나이		31	36	67
병력		18	19	37
사상, 정치적인견		2	5	7
사회적신분		50	53	103

성별	13	17	30
성희롱	136	181	317
용모, 신체조건	16	17	33
인종	2	2	4
임신, 출산	9	8	17
장애	34	52	86
전과	6	7	13
종교	3	5	8
출신국가	15	21	36
출신민족	2	1	3
출신지역	4	7	11
피부색		1	1
학벌/학력	6	5	11
혼인여부	6	8	14

상담내용을 차별사유별로 보면 성희롱이 가장 많은 가운데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5-3. 차별행위 상담시 영역별 현황

구분		년도별		합계	%	2007년	%	2006년	%
합계				902	100.0	500	100.0	402	100.0
고용관련	소계			460	51.0	264	52.8	196	48.8
	채용(고용)			61	6.8	33	6.6	28	7.0
	해고(고용)			57	6.3	26	5.2	31	7.7
	모집(고용)			48	5.3	34	6.8	14	3.5
	임금지급(고용)			25	2.8	15	3.0	10	2.5
	배치(고용)			42	4.7	25	5.0	17	4.2
	승진(고용)			14	1.6	6	1.2	8	2.0
	퇴직(고용)			12	1.3	10	2.0	2	0.5
	임금외 금품지급(고용)			10	1.1	4	0.8	6	1.5
	정년(고용)			5	0.6	2	0.4	3	0.7
	교육(고용)			3	0.3			3	0.7
기타(고용)			183	20.3	109	21.8	74	18.4	
재화/용역	소계			135	15.0	74	14.8	61	15.2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25	2.8	16	3.2	9	2.2
	용역의 공급이용			53	5.9	22	4.4	31	7.7
	재화의 공급이용			41	4.5	27	5.4	14	3.5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8	0.9	5	1.0	3	0.7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8	0.9	4	0.8	4	1.0
시설 등 이용			58	6.4	33	6.6	25	6.2	
기타			249	27.6	129	25.8	120	29.9	

고용관련 상담순위를 보면 채용, 해고, 모집, 배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화/용역 관련 상담은 용역의 공급이용, 재화의 공급이용, 상업시설의 공급이용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6. 기타상담

기타 상담 4,465건은 위원회의 업무영역이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단순한 주장 혹은 하소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인간 침해(회사나 기타 단체에 의한 침해 포함)와 관련된 상담이 1,879건(42.1%)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관련 상담이 353건(7.9%), 입법/재판과 관련된 상담 213건(4.8%), 법률문의를 174건(3.9%) 등이다.

6-1. 기타상담

유형	2006년	2007년	누계
합계	1,926(%)	2,539(%)	4,465(%)
사인간침해(사인간 침해, 회사, 기타단체)	846(43.9)	1,033(40.7)	1,879(42.1)
재산권	71(3.7)	66(2.6)	137(3.1)
국가기관	168(8.7)	185(7.3)	353(7.9)
법률문의	79(4.1)	95(3.7)	174(3.9)
입법/재판	105(5.5)	108(4.3)	213(4.8)
법령제도개선	32(1.7)	43(1.7)	75(1.7)
위원회업무불만	47(2.4)	79(3.1)	126(2.8)
위원회업무문의	215(11.2)	277(10.9)	492(11)
위원회관련제안	13(0.7)	19(0.7)	32(0.7)
기타	350(18.2)	634(25)	984(22)

7. 내담자의 현황

7-1. 내담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누계
합계	3,912(%)	5,161(%)	9,073(%)
강원	47(1.2)	47(0.9)	94(1)
경기	361(9.2)	351(6.8)	712(7.8)
경남	118(3)	142(2.8)	260(2.9)
경북	72(1.8)	45(0.9)	117(1.3)
광주	69(1.8)	159(3.1)	228(2.5)
대구	80(2)	59(1.1)	139(1.5)
대전	40(1)	55(1.1)	95(1)
미상	1,914(48.9)	2,752(53.3)	4,666(51.4)
부산	179(4.6)	340(6.6)	519(5.7)
서울	620(15.8)	445(8.6)	1,065(11.7)
울산	25(0.6)	44(0.9)	69(0.8)
인천	113(2.9)	79(1.5)	192(2.1)
전남	106(2.7)	127(2.5)	233(2.6)
전북	56(1.4)	250(4.8)	306(3.4)

제주	12(1.3)	83(1.6)	95(1)
충남	51(1.3)	61(1.2)	112(1.2)
충북	49(1.3)	122(2.4)	171(1.9)

지역별 내담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4,666건(51.4%)인데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밝히기를 꺼리는 결과로 보인다. 지역이 파악된 곳은 역시 서울이 가장 높은 1,065건(11.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경기 712건(7.8%), 전북이 306건(3.4%), 전남이 233건(2.6%), 광주가 228건(2.5%) 순이다.

7-2. 내담자의 성별 분포 현황

년도별 구분	2006년				2007년			
	기타	차별	인권침해	합계	기타	차별	인권침해	합계
남	1,409(73.2)	241(60)	1,255(79.2)	2,905(74.3)	1,824(71.8)	307(61.4)	1,681(79.2)	3,812(73.9)
미상	1(1)			1(0)	2(1)		2(1)	4(1)
여	516(26.8)	160(39.8)	329(20.8)	1,005(25.7)	713(28.1)	193(38.6)	439(20.7)	1,345(26.1)
여(트랜스젠더)		1(2)		1(0)				
합계	1,926(%)	402(%)	1,584(%)	3,912(%)	2,539(%)	500(%)	2,122(%)	5,161(%)

내담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이 3812명(73.9%)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이 1,345명(26.1%)인 가운데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내담자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 내담자의 연령별 현황

년도별 구분	2006년						2007년						합계	
	FAX	대면	이메일	인터넷	전화	소계	FAX	대면	우편	이메일	인터넷	전화		소계
10세미만					1	1								1
10~20세		1			5	6		1				4	5	11
20~30세		11			44	55		22				18	40	95
30~40세	1	31			61	93		36	1			61	98	191
40~50세		50			92	142		85				98	183	325
50~60세		52			59	111		89				48	137	248
60~70세		30			29	59		64	1			26	91	150
70세이상		27			23	50		54				23	77	127
불명	1	492	1	3	2,898	3,395	3	805		1	6	3,715	4,530	7,925
합계	2	694	1	3	3,212	3,912	3	1,156	2	1	6	3,993	5,161	9,073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나이를 밝히지 않은 내담자가 7,925명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4. 외국인 내담자 대륙별 국적별 현황

구분		년도별		2006년				2007년				합계
		기타	차별	침해	소계	기타	차별	침해	소계			
기타	미상	9	2	2	13		1		1	14		
	소계	9	2	2	13		1		1	14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1		1					1		
	페루	1			1					1		
	소계	1	1		2					2		
북아메리카	미국	3	1		4	2	5		7	11		
	캐나다	1			1			1	1	2		
	소계	4	1		5	2	5	1	8	13		
아시아	그루지아					3		1	4	4		
	대한민국					10		1	11	11		
	몽골					5			5	5		
	방글라데시	11		2	13					13		
	베트남	1	1		2	6			6	8		
	사우디아라비아					1			1	1		
	스리랑카	8	1		9	4	1		5	14		
	아프가니스탄	1			1					1		
	우즈베키스탄					1			1	1		
	이란	1		3	4	1			1	5		
	인도						1		1	1		
	인도네시아			1	1	1			1	2		
	일본	2	1		3	1			1	4		
	중국	33	5	4	42	63	2	5	70	112		
	카자흐스탄	1			1	1			1	2		
	타이완		1		1			2	2	3		
	파키스탄	2		2	4	1			1	5		
	필리핀					7			7	7		
소계	60	9	12	81	105	4	9	118	199			
아프리카	가나	1			1					1		
	나이지리아	2	1	3	6	6		6	12	18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1		
	라이베리아	1			1					1		
	에티오피아	1			1			1	1	2		
	우간다	1			1					1		
	카메룬	1			1					1		
	코트디부아르	1			1	1			1	2		
소계	9	1	3	13	7		7	14	27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			1	1		
	소계					1			1	1		
유럽	독일					1			1	1		
	프랑스	2			2					2		
	소계	2			2	1			1	3		
합계		85	14	17	116	116	10	17	143	259		

외국인 내담자는 259명인데,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인이 1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대륙별로도 아시아인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상담을 내용별로 보면 침해가 34건, 차별 행위가 24건이고 기타가 200건을 차지하고 있다.

7-5. 상담 소요시간 현황

년도별 구분	2006년					2007년					합계
	미등록	30분 미만	30분 ~ 1시간	1시간 ~ 2시간	소계	미등록	30분 미만	30분 ~ 1시간	1시간 ~ 2시간	소계	
FAX		2			2			3		3	5
대면	18	211	441	24	694	18	447	658	33	1,156	1,850
우편								1	1	2	2
이메일			1		1			1		1	2
인터넷			3		3			6		6	9
전화	36	1,643	1,528	5	3,212	39	1,683	2,270	1	3,993	7,205
합계	54	1,856	1,973	29	3,912	57	2,130	2,939	35	5,161	9,073

1회당 상담소요 시간은 전화의 경우 30분~1시간이 3796건(41.86%)으로 가장 많고, 30분 미만 이 3,326건(36.65%)이고 1시간 이상 상담한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인권상담 사례집

인권침해

*All Humanrights
for All*

수사·정보 기관

구금시설

군대·군 관련기관

다수인 보호시설

기타국가기관

외국인

기타사례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수사 정보기관

제목 : 불법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담요지

- ① 2007.2.20 밤 8시 30분경 ○○우체국(○○시 ○○동 소재)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나오던 중 △△△검찰수사관이 내담자를 마약범죄자로 오인하고 내담자에게 달려들어 내담자를 밀치고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서 화단 난간에 내동댕이쳤음.
- ② 내담자가 일어서는데 △△△이 수갑을 가지고 있길래 경찰인 것 같아 내담자는 △△△한테 몸을 맡기고 반항조차 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내담자를 수갑 채운 후 다시 땅바닥에 넘어뜨려서 발로 복부를 한차례 가격한 후 마약법위반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였음.
- ③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해도 △△△은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담자를 내담자의 차량에 태웠고 그 이후에야 자신의 신분과 미란다원칙을 이야기하였음. 내담자는 “죄가 없으니 수갑을 풀고 대화로 하자”라고 요청하였지만 △△△은 그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하였음.
- ④ 내담자는 후배(□□□, 당시 후배는 내담자의 차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와 함께 ○○검찰청 검사실로 연행되었는데, 검사실에서 소변검사를 받고 음성반응이 나와 2007.2.20. 밤 12시경에 풀려났음.
- ⑤ 검찰이 내담자를 마약범죄자로 오인하여 불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과 체포과정에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원함.

답변요지

- ① 진정사건으로 접수함.
- ② 내담자는 △△△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원함.
- 참고로, 내담자는 병원진료비로 20만원을 썼다고 하며, 이 일로 인해 오늘 회사(운수업)에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위 상담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7. 09.

검토의견 : 권고

조치내용 :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인정사실

- 종 략 -

진정인은 차량을 위 우체국 정문 앞 도로 위에 정차를 한 뒤 하차하여 정차지점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현금인출기에 들어가서 약 3~4분 정도 머무르다 밖으로 나와 위 차량에 다시 승차하려고 할 때 피진정인에 의해 긴급체포 당하였고 수갑이 채워져 진정인 차량 뒷좌석에 태워진 상태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음.

-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 동행자인 참고인 □□□을 긴급체포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우고 위 두 사람을 OO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OO호실로 인치시킨 후 소변검사를 하였으나 음성반응이 나와 동일 23:00경 모두 석방하였음

- 진정 외 ◎◎◎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은 진정인과 참고인 □□□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진정인은 2007. 2. 22. 00시 소재 OO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음

소 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미란다원칙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긴급체포를 하고 과실로 진정인을 마약사건 피의자로 오인하여 감금 및 폭행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제목 : 검찰의 과도한 벌금 납부 강요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2006. 8. 경 ○○지방검찰청에서 벌금형(50만원)을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휴대폰으로 3통의 안내문자(고지서 발급 방법 안내 등)가 들어왔고, 기한이 지나자마자 4통의 문자(전국지명수배, 형집행)가 들어왔음.
- ② 벌금 50만원인데 거의 공갈 협박 수준임. 벌금을 납부할건지 하지 않을 건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협박 수준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③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음. 조서를 작성할 때도 다른 번호를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까지 알아내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제임.

답변요지

- ① 검찰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벌금 납부를 과도하게 강요하여 내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는 조만간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차 상담하고, 진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함.

벌금 납부와 관련한 기타 상담사례

제목 : 검찰의 미흡한 벌금 통지

내담자의 아버지(피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지청에서 벌금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 수배가 되어 2007. 02. 09. 아침,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음. 내담자가 ○○지청에 확인해 본 바, ○○지청에서는 두 차례 벌금통지를 했으나 반송되었다고 함. 그러나 내담자는 피해자가 항상 거주지에 있었기 때문에 벌금 통지서가 반송된 것을 이해할 수 없음. 이는 ○○지청의 착오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제목 : 검찰의 벌금통지서 미발송

얼마 전, 내담자는 OO지청에서 벌금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금 미납을 이유로 체포되어 OO경찰서 유치장, OO교도소에 구금되었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음. 벌금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 구금당한 것은 부당함.

벌금형 집행과정 등에서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제목 : 벌금형 집행과정 등에서 인권침해의 건 2007. 06. 18

I. 직권조사 배경

벌금형의 형집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또한 벌금 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구금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2006. 4. 26.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는 “벌금형 집행과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함

II. 쟁점

1. 벌금납부명령서 등을 받지 못하고 인신이 구금되는 송달의 문제
2. 형집행장 집행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행정편의적인 인신구금 여부, 경고문 부착시 사생활 침해 등 논란, 지명수배 발령 관행 문제
3. 벌금미납자의 노역장유치 실효성의 문제

- 종 략 -

IV. 조치의견

1.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1호
2. 권고내용
 - 가. 송달과 관련하여
 -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에게 약식명령청구통지서, 약식명령등본 송부, 납부고지서 및 납부독촉서 송부시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 나. 형집행장 집행과 관련하여
 - 1)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벌금미납자 체포·구인시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제반 권리고지절차를 지키고, 가족에게 통보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2) 검찰총장에게 벌금형 집행에 있어서 가능한 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선행하도록 권고
 - 3) 벌금미납자의 자택이나 직장출입문에 ‘벌금미납에 따른 형집행장 발부고지(경고문)’ 부착하는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

- 4) 검찰총장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벌금미납자에 대해 벌금수배자란 표현으로 지명수배를 발령하지 않도록 권고

다.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 1) 법무부장관에게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벌금형의 연납·분납제도, 노역장유치집행 면제제도, 벌금형에 대한 가석방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전 건강검진 등 노역장 유치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 3) 법무부장관에게 노역장유치자의 분류 및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벌금 미납과 관련한 기사

“돈없어 벌금 못낼 경우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 가능”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주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벌금을 낼 뜻이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내지 못한 경우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검사가 허가하면 사회봉사로 노역장 유치를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사실상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결과를 초래했다. 법안은 그러나 새 방안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죄질이 나빠 고액벌금을 선고 받은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 신청을 벌금 3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이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범죄자 낙인,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벌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한겨레신문 2007. 09. 19)

사례 3

검찰의 개인정보 누출에 의한 인권침해

제목 : 검찰의 사생활 침해

상담요지

- 1 내담자는 졸업논문 대필 문제로 ○○지검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음. 그런데 약식명령서에는 같은 문제로 약식명령을 받은 5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회사명과 사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약식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생활침해, 개인정보 침해로 생각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음.

답변요지

- 1 내담자가 주장하는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개인정보누출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검찰의 전과 사실 누설

내담자의 남편 ○○○(피해자)는 음주 운전 벌금을 미납하고 있었음. 2006. 12. 22. ○○지청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인사과 및 피해자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연행하려 함. 피해자는 당일 지급받은 월급을 벌금으로 납부함. 이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에 다니지 못할 지경임.

제목 : 피해자 신원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내담자는 2006년 8월 하순경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가 성추행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음(현재 재판이 진행중임.) 내담자는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내담자의 신원을 피고소인측에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 최근 피고소인은 내담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게되어 내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등 위협을 주고 있음. 수사기관에서 내담자의 신원을 피고소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길 원함.

제목 : 피해사실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내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2006. 7월경 OO지방검찰청 OO 검사실(검사 000)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은 약식기소되었다는 내용)를 내담자에게 보냈음. 검찰에서 발송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이었으며, 더욱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봉투에 봉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구나 쉽게 개봉이 가능한 형태(요금납부고지서 형태)였는데, 내담자의 아들(고2)이 학원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우편함에 들어있는 상기 통지서를 개봉하여 내담자가 강제추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될까 염려됨. 강제추행 등 내담자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검찰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누구나 쉽게 개봉할 수 있는 형태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개인정보누출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사생활의 비밀침해 2006. 11. 10

검토의견 : 권고

조치내용 :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진정요지

진정인은 인터넷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도박을 하여 경찰수사 및 OO지방법원의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진정인 등에게 발송한 약식명령은 피고인 전체 21명의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진정인도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었음.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는 이의없지만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은 부당함.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진정내용 약식사건의 진정인 등 피고인들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위반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진정내용과 같이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유사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 : 검찰의 고소취하 강요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교수를 강간치상혐의로 ○○지검에 2006. 9. 고소했음. 검찰은 수사하면서 기자에게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건관련 취재를 승인하여 보도가 되었으며, 실명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은 내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② 교수가 피해자인 내담자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여 내담자도 다시 무고로 맞고소를 하게 되었음. 담당 검사는 계속하여 내담자에게 강간치상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회유하였음. 결국 내담자는 취하를 하게 되었음.
- ③ 검찰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해자 관련 사실 언론 누설과 고소취하 강요 등에 대한 조사를 바랍. 방문하여 재상담한 후 진정할 예정임.

답변요지

- 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관련사건을 누설하였다면 개인정보 침해, 피해사실 유포 등 부당함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검사의 고소취하 강요사안에 대해서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효율적일 수 있음을 설명함.

경찰의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인격권 침해 2007. 04. 30.

진정요지

- 1) 2006. 1. 18. 01:52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무고로 고소한 000 계장을 용서해 줄 것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진정인을 어떻게든 뚝뚝 엮으려는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서 진정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던 말든 일단 기소해서 공판시 담당검사의 강력한 대응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
- 2) 같은 날 오전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벽 쪽으로 밀어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둔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3) 2006. 3.경 피진정인2, 피진정인3과 면담하여 피진정인1의 행위에 대해 호소했으나, 피진정인1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주문

1. 00지방경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2, 피진정인3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조사결과

가. 진정요지 1)항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다, 검사도 처음에는 기소하려고 했다, 진정인 편에 선 사람이 없다, 다른 놈이 이 사건을 맡았다면 뒤집어졌을 거다, 어떻게 하든 뚝뚝만다” 고 하면서, 무고사건의 고소인을 용서하고, 사건을 포기하고, 고발사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바, 이는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를 위반한 것임.

나. 진정요지 2)항

피진정인1이 술에 취해 밤늦은 시간에 만나자고 전화한 점, 진정인을 꺼안고 안아보자는 말을 수회한 점에 대한 진정인과 피진정인1의 동일한 진술, 성추행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수사관들의 재연 결과 나타난 진정인 진술의 부합성, 현장 구조, 녹음화일에서 나타나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진정내용과 같은 추행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서 성희롱, 성추행이 인정됨.

다. 진정요지 3)항

녹음화일에 의하면 피진정인2, 피진정인3은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1의 행동에 대한 호소를 듣고 녹취록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성추행 사실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녹취록을 통해 밤늦은 시간에 여성피의자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 안아보자는 말을 한 것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지휘·감독 소홀, 직무태만이 인정됨.

사례 5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제목 : 수사기관 수사경력자료표의 전과기록 미삭제

상담요지

- 1 내담자는 1996~2006년 사이 십여 건의 사건으로 수사와 형을 받았으나, 사건의 대부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의해 수사경력자료표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것임.
- 2 위 법 제 8조의 2는 2005년 신설된 것인데, 현재까지 수사경력자료표에서 그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음. 이는 부당함.

답변요지

- 1 수사기관 수사경력자료표의 부당한 전과기록 미삭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의하여 범죄경력이 정리대상이 아니거나 수사경력이 정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3 수사기관의 행정착오나 행정지연에 의한 것일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을 요청해볼 수 있음을 설명함.
- 4 내담자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본 후 우리 위원회 진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2003. 11. 03.

진정요지

-중략-

경찰청에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진정인의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을 실효시켜야 하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길 원함.

조치내용 : 각하

각하사유 :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종전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처분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전과 기록으로 관리되었으나, 개정 “형실효법”이 2003. 3. 6. 시행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으로 범죄경력이 축소되고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은 ‘수사경력’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 됨. 그리고 ‘수사경력자료’는 “형실효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이 도과되면 전산 상 삭제하도록 규정됨

조사결과

진정인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에 위 개정 “형실효법”에 의하여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나, 개정 ‘형실효법’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사경력’에 관한 것으로 ‘범죄경력’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진정인의 ‘수사경력’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회한 바 2회가 조회되었으나 ‘기소중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건으로 ‘형실효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님.(표1)

따라서 경찰청이 진정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형실효법’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아니거나(범죄경력), 정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수사경력) 때문이므로 위 진정내용은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시행일 2003. 3. 6.)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표1 용어의 정의와 기록정리 기준〉

구 분	정 의	기록정리 기준	관 리	
전 과 기 록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 형실효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때 -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검찰청 및 군검찰부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	-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때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
	범죄 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없 음	경찰청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p>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경찰청
--------	--	--	-----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사

소년사범 무혐의 땀 수사기록 삭제 법무부 개정안 추진... 기소유예 처분은 3년 후 폐기

앞으로 만 20세 미만의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된 자료들이 즉시 삭제된다.

법무부는 소년 사범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자료열람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사경력 자료란 벌금 미만의 형이나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 등을 말한다. 최대 10년까지 보존 가능한 수사경력자료는 보존 기간이 너무 길어 소년사범 등의 취업 등에서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소년 사범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시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나 법원 보호처분 관련 기록의 열람 제한 시점도 '처분 이후 5년 경과 후'에서 '3년 경과 후'로 앞당겼고 본인의 요구가 없으면 결정 후 3년이 지난 처분 전력은 볼 수 없도록 했다.

성인 사범도 형기 종료 시나 집행을 면제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한 해당 형을 삭제한 뒤 보여주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단축 등으로 48만명, 실효된 형의 열람제한에 따라 770만여 명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한국일보 2007. 09. 28.)

사례 6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제목 : 교통신호위반 적발과정에서 교통경찰의 인권침해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퀵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배달일을 주로 하는데, 2007. 6. 15. 오전 11시경 ○○동 로타리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등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여 서게 되었음. 잠시 후 내담자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뒤, 오토바이를 약간 움직여 횡단보도를 지나갔음. 아직 녹색신호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사거리를 주행하지는 않았음.
- ② 그런데 이때 ○○경찰서 소속 교통순경 ○○○이 멈춰 서있는 내담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접근하여 왔음.
- ③ 내담자에게 다가온 뒤, 위 교통순경은 내담자에게 경례를 하거나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인사를 하지도 않고, 내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오토바이로 다가와서는 내담자의 허락도 없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 키를 임의로 빼서 가져가 버렸음.
- ④ 그리고 난 후에야 내담자에게 정지선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함. 이후에도 위 순경은 정지선위반이 아니라는 내담자의 항의에 억압적 자세를 취하는 등 내담자의 인격을 침해하였음.

답변요지

- ① 정지선위반, 신호위반 여부를 떠나서 담당경찰이 적발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용무를 말한 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무작정 오토바이 키를 빼앗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진정접수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 제목 :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7. 30.

합의종결 내용

피진정인은 오토바이 단속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 건 민원을 야기한데 대해서 진정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진정인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

사례 7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제목 : 경찰의 미란다 원칙 불이행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농장으로 06. 9. 22. 경찰이 와서 갑자기 내담자를 체포하였음. 경찰은 신분도 밝히지 않고 죄목도 얘기해주지 않은 채 체포영장만 보여주고 내담자를 차에 태우려 하였음. 이에 내담자가 반항하자 수갑을 채웠음.
- ② 또한 경찰은 내담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마을에 있는 집에 데리고 가서 내담자의 집을 수색하였음. 이에 내담자가 수색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자, 체포영장만 있어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였음.

답변요지

- ① 경찰의 미란다 원칙 불이행과 수색영장 없는 가택수색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없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진정하기를 원하여, 인터넷을 통한 진정방법과 진정사건처리과정을 안내함.

미란다원칙 미고지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06년 8월 22일 OO지방경찰청 OO2계 OO1팀(OOO팀장, △△△담당, □□□부담당)에서 죄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으나 “죄목과 장소만 보여주고” 나서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생산 장비일체와 집으로 동행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도 압수하였음. 그리고 OO지방경찰청으로 동행하였고 내담자가 “체포영장도 없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도 되냐?” 라고 질문하였는데 담당 형사인 △△△씨가 “현행범은 체포영장이 필요없다”라고 하였음. 동행하면서 차안에서 내담자가 “내가 너무 억울한데 잘못이 없으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냐?”라고 물으니 동행경찰관중 한 명이 “인지수사라 하소연 할 데가 없다”라고 하였음. 그리고 담당형사인 △△△씨가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짜증스럽게 말하였음. OO지방경찰청에 도착해서 40분

동안 의자에 앉혀 놓고 있다가 △△△담당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 주며 미란다 원칙을 말해주었음. 다음날 OO지방경찰청 OO과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내와 동생, 참고인들이 볼 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하여 억울하고 내담자는 몹시 수치감을 느꼈고 마치 중죄인을 다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

제목 :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내담자는 그에게 경찰에 공갈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내담자의 팔을 꺾어 인대가 늘어났고, 조사 과정에서 계속 수갑을 채우고 잠을 채우지 않은 채로 혐의를 인정할 것을 종용하였음. 내담자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불법 체포 및 감금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 고소를 고려 중인 상태로 위원회에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함.

미란다 원칙 미고지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6. 12. 27.

진정요지

2006. 9. 29. 09:30경 피진정인 1)이 사건현장에서 치안센터로 임의동행 시 거부의사를 표명했으나 강압적으로 연행하였고, 피진정인 2) 3)은 치안센터에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으나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강압적으로 지구대로 연행한 후 임의동행 동의서에 강제로 날인하라고 하였음.

권고내용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 3) 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

권고이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임의동행 시 진정인이 거부의를 명백히 했음에도 강압적으로 경찰관서로 데려간 것은 임의동행의 임의성을 상실한 것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와 같이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규정

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 할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강제 임의동행 경찰폭행 무죄

범죄사실이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강제 임의동행하려는 경찰관에 맞서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25일 무전취식 혐의를 조사하려고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혀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 co.kr

(서울신문 2007. 07. 26.)

사례 8 경찰의 가혹행위

제목 : 경찰의 가혹행위

상담요지

- ① ○○시 ○○경찰서의 ○○○형사는 2006. 12. 19. 내담자의 직장 동료인 △△△을 연행한 후 유치장에 가두어 두면서, 양말을 벗기고 추운 냉방에서 이틀 동안 지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음.
- ② ○○○형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람.

답변요지

- ① 사안의 경우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의 의사에 의해 진정을 접수함.

위 상담 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2007. 03. 05.

권고내용

○○시 ○○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난방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시설개선 권고

권고이유

- 가. 2005년 동절기에 이미 유치실 보일러 고장으로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는 것은 유치인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 나. 향후 유사행위재발 방지 차원에서 권고내용과 같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관련규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일부개정 2006. 3. 22 훈령 제479호]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처우의 적정) 유치중의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적정으로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설비) ①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유치인의 도주·자살·통모·죄증인멸·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또한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내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풍·채광·구획·면적·설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유치장에는 경보종,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8조(기본방향)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기타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유치장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환경 및 시설개선) 유치장 내부는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환기통, 변소 등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 보안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 9

경찰의 피의자 십지문 전자채취

제목 : 경찰의 피의자 십지문 전자채취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노조간부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
- ②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전자십지문채취를 요구함.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피의자는 모두 채취하는 것이라 함.
- ③ 경찰의 전자십지문채취를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답변요지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피의자 지문채취는 관련 법이나 규칙에 의한 것이며 07. 1. 1부터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함.

- ① 위 내용을 설명하고, 내담자가 지문채취를 계속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거부할 수 없음을 설명함.
- ② 피의자 십지문채취는 제도적인 문제로 우리 위원회법의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함.
- ③ 다만 생체정보의 전산화로 인한 인권침해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제도적인 문제로 보아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함.

지문날인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경찰의 인격권 침해

내담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열흘 전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3일 전에 2차 조사를 받았음. 어제 ○○경찰서의 담당 경찰로부터 지문날인이 필요하니 오늘 아침 9시까지 경찰서에 나와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일이 바쁘니 다른 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경찰은 내담자의 25년 전 벌금 전과를 들먹이며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지문날일도 모르냐.”고 하면서 모욕을 주었음. 내담자는 11시까지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음.

지문날인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6. 04. 26.

진정요지

2005. 6. 9. 16:20~23:00까지 OO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진정인들이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진정인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손가락을 펴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팔을 다쳤다.

판단

나. 형사피의자에게도 신체의 자유 등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동의 없는 지문채취는 수사 상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강제지문채취는 헌법 제12조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필요하다. -종략-

조치의견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자체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시킬 것을 권고함

관련규정

* 경찰청 과학 수사과 - 7799(2004.3.6.)공문

수사자료표 지문날인 거부시 처리지침

피의자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 거부시 다음 지침에 의거 처리

■ 근거법령상의 원칙

-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형사소송법 §24호, §5①)
- 형법, 집시법, 특가법 등 42개 법률위반자는 직접 지문을 채취하고 여타 피의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복사하여 첨부

다만 42개 법률위반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주민등록증 미제시, ②제시한 자료에 의해 신원확인 곤란, ③ 구속, ④수사상 특히 필요하여 동의를 얻은 때에는 지문을 직접 채취(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2)

■ 사례별 대응지침

- 인적사항 묵비로 신원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영장에 의거 강제로 지문채취 가능하므로 십지문채취를 통하여 신원확인 후, 입건대상피의자에 한하

여 수사자료표에 직접 지문 채취

※십지지문 원본은 수사자료표에 첨부, 경찰청에 송부

○ 인적사항은 밝혀냈으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 구속피의자 :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거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조치

- 불구속피의자 :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채취하되 일단 석방하게 되면 소환불응·소재 불명 등으로 채취 곤란하므로 경찰서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영장 신청 → 지문채취 후 석방

관련법령

가. 헌법

- 제12조(신체의 자유)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형사소송법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제2조 ④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 제2조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수사자료표'라 함은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경우에는 지문원지를 포함한다.)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마.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

- 제2조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위반 피의자

2. 벌표에 정하여진 법률위반 피의자(벌표 생략)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목 :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상담요지

- ① 06. 10. 30. ○○ 지구대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과 다툼으로 인해 진술을 요구받았는데, 변호사요청을 하였으나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3번의 출석요청에 불참하였음.
- ② 07. 2. 27.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에 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입감되었고 가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함.
- ③ 07.2.28.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고 심의조사를 받으라고 하며,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였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대답을 들음.
- ④ 경찰에게 인권위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연락처를 얻어 공단의 요청으로 오후에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었으나 저녁에는 이유없이 관례라고 하며 다시 수갑과 포승줄로 묶었음.

답변요지

- ① 위원회의 업무와 조사대상에 대해서 설명함.
- ② 피의자의 경우 체포, 구속적부심신청시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없음을 설명함.
- ③ 수사기관에서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고 신문한 것은 과잉수사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진정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진정접수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4. 16.

조치의견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계고」조치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인정사실 및 판단

- 중 략 -

나. 진정인이 2008. 3. 28. 2회에 걸쳐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유치장에서 출감할 때부터 수감·포승으로 결박된 상태로 조사실로 이동하여 1차 조사 시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로부터 “진정인이 도주우려 없다면 포승줄은 해제하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포승줄은 해제하여 수감만 채우고 조사를 하였지만, 2차 조사 시에는 수감과 포승으로 결박된 채 약3시간정도를 계속 결박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에 응해야만 했음. - 중 략 -

관련규정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849호(2006. 2. 21)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경찰청훈령 제479호(2006. 3. 22)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①유치인보호관이 근무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되며 언어, 태도 등을 엄정히 하여 바르게 하여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유치인보호관은 근무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행위 등의 유무를 유의하여 관찰하므로써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개정:03. 1. 25) 유치인보호주무자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및 낙서행위
3. 중범자나 먼저 입감된자 또는 범죄경력 등을 내세워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
4. 언쟁, 소란 등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5. 건물, 유치실 시설내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
6. 식사를 기피하거나 식사중 혼잡을 고의로 야기하거나 식사한 후 식기, 수저 등을 은닉하는 행위
7. 질병의 발생

8.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
 9. 유심히 유치인보호관의 동태나 거동만을 살피는 행위
 10. 유치장 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유치장 내로 투입되는 행위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 ③자살 또는 도주우려등 사고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재하고 특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 ④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유치장에는 관계직원이라 하더라도 필요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치인보호관은 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없이 필요없는 자의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⑥유치실의 열쇠는 응급조치 등에 대비하여 근무중인 유치인보호관 중 선임 유치인 보호관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②경찰관이 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⑤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보호주무자가 계구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과도한 장구사용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과도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2. 13.

진정요지

2006. 11. 25 12시경 친구와 술한잔 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문쪽에 흠집을 내어 택시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지구대를 경유하여 OO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함.

가. 경찰서에 들어갈 때 목발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목발을 뺏고 여러 사람이 사지를 잡고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옆구리와 겨드랑이 쪽을 쿡쿡치며 고통을 주고, O형사라는 사람이 허를 내밀며 조롱함.

나. 오른팔에 강제로 수갑을 채워 매달아 놓았으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5시간 정도 수갑을 찬 채로 있었음.

검토의견 : 기각

기각사유

가. 진정요지 가. :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진정요지 나. :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경찰서에 사지가 들어 들어갈 때 피진정인들이 옆구리와 겨드랑이 쪽을 쳐 고통을 주고, 허를 내밀며 조롱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 모두 경황이 없어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며, 조롱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부인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음.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매달아 놓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5시간 정도 수갑을 찬 채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경찰서 내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점, 진정인의 위해를 저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수갑으로 인한 상처가 진정인의 저항으로 발생하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정도도 아닌 점, 수갑사용시간은 2시간여인 점 등에서 피진정인의 수갑사용 행위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움.

과도한 장구사용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경찰의 부당한 수갑 사용 등

내담자는 07. 01. 22.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었음. 그래서 기사에게 집에 도착해서 주겠다고 했더니 그냥 내리라고 했음. 그래서 기사에게 “×× 놈아 내가 내릴 줄 아느냐?”라고 했더니 기사는

OO지구대에 내려놓고 가버렸음. 기억에 없는데 경찰에 의하면 내담자가 조사 받으러 온 한 남성의 뺨을 때려서 수갑을 채웠다고 함.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는데 웃웃이 거의 벗겨진 상태였음. 경찰은 내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기억에 없음. △△경찰서로 이송할 때도 수갑을 사용했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뒤로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함.

과도한 장구사용과 관련한 기사

“장시간 손발 묶인 상태에서 경찰에 욕설했다면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박영래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등)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장시간 동안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욕설를 하며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신체 구속을 당한 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구대 사무실 의자 가죽을 물어뜯은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신체 고속을 당하게 된 경위와 구속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보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3명의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였고 경찰관들은 박씨 등 뒤로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두 발은 넥타이로 묶었다. 박씨는 2시간 30분 동안 지구대 바닥에 방치된 채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한겨레신문 2007. 08. 15.)

사례 11

전·의경 부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제목 : 의무경찰부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축소 은폐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피해자(내담자의 아들)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장한 청년이었다 함.
- ② 그런데 2006. 3. 20. 피해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대에서 병가를 내고 집에서 통일치료를 하였다 함.
- ③ 내담자는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는 무관하게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어 병원 진료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심한 우울증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증세가 보인다는 진료 결과를 받게 되었다함.
- ④ 내담자는 소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정밀검사 결과를 받을 동안 귀대일을 연장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소대장은 부대 복귀일인 5월7일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복귀하라고 하였음. 내담자는 결국 피해자를 5월7일 복귀시키기로 하였음.
- ⑤ 그런데 5월3일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중대장 명이라며 5월4일 오후6시까지 피해자를 복귀시키고 이에 불응할 경우 탈영 처리하겠다고 했다함.
- ⑥ 내담자는 어쩔 수 없이 5월 4일 피해자를 부대에 복귀시키며 소대장에게 피해자를 잘 돌보아줄 것을 신신당부 하였다함. 이에 소대장도 걱정 말라며 안심하라고 했다함.
- ⑦ 그러나 5월5일 아침에 피해자에게서 계속 전화가 와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뛰어내려 죽겠다고 했다함.
- ⑧ 내담자는 피해자와의 전화 내용이 너무 걱정되어 다시 부대로 갔더니 소대장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소대장 방에 격리시켜 놓았다고 하고 5월 8일 경찰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와 치료를 하겠다고 했다함. 내담자는 부대 측에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였다함.

- 9 5월 6일 아침 소대장이 내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의 전화 연결을 시켜주었는데 피해자는 어머니인 내담자의 목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누구세요만 반복했다함.
- 10 그리고 한시간 후 소대장이 다시 전화를 해서 중대장이 피해자 문제로 내담자와 상의할 것이 있다며 오전 중으로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다함.
- 11 내담자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 중대장은 자리에 없었고, 소대장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의가사 제대 문제를 거론했다함.
- 12 내담자가 소대장에게 경찰병원 입원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을 이야기 하니 소대장은 경찰병원의 예약이 밀려 3개월 후에나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하고 싶다면 진료비 일체를 부대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은 후 데리고 나가라 했다함.
- 13 내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 동공이 풀린 채로 계속 구토를 하며 내담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등 중세가 심각하여 결국 하는 수 없이 각서에 도장을 찍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함.
- 14 ○○ 병원 의사는 환자(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5월14일 격리병동에 입원시켰다함. 그리고 진단결과 해리성 기억상실증과 전환 장애였다함.
- 15 내담자는 피해자가 입원하기 전인 5월12일 5월4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겨우 기억하며, 5월 4일 당시 고참인 ○○○, △△△로부터 부대 내 체육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것이 중대장과 소대장의 허락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함.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자해를 하였음.(피해자 본인은 자해사실을 기억 못함.)
- 16 내담자는 피해자가 의무경찰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치료가 요구되던 긴박한 시기에 부모의 간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등은 부하들을 시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하였다고 주장함.
- 17 내담자는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요구되고 치료기간이 얼마나 될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가족들이 지게 되었다고 주장함.
- 18 내담자는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였는데, 당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

던 ○○○만 15일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제대를 한 상황이며,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대장과 중대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함.

- 19 내담자는 책임자에 대한 법적인 문책과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이 있기를 바랍.

답변요지

- 1 내담자에게 의무경찰부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이에 대한 상관의 지시 또는 방조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된다고 설명함.
- 2 내담자에게 아들에 대한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대 측이 치료비 일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또는 이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함.
- 3 내담자가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위하여 진정접수 함.

전 · 의경의 인권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고참 의경의 폭행

내담자는 의경으로 군 복무 중인데, 06. 8. 중순 경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치아가 부러졌음. 당시 부대에서 넘어진 것으로 처리하였고, 내담자도 이를 받아들였음.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위 고참이 다시 내담자를 구타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고소하면 의경 전체가 기함을 받거나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므로, 인권위에서 조사하기를 원함.

제목 : 전경 고참병의 폭행

내담자의 아들(이하 피해자)은 ○○시에서 전경으로 복무 중임. 2주 전(2006. 10. 말), 피해자는 ○○전투경찰대 운동장에서 고참 전경에게 진압장비 봉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가격당해 기절하였음.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는 부대 건물 현관으로 이송되어 있었고, 착용했던 “하이바”(내담자 표현으로 진압 시 착용하는 모자를 말함.)가 깨져 있었음. 피해자는 현재 경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음. 피해자는 상습적으로 고참 전경에게 가슴과 얼굴을 구타당했다고 함.

제목 : 전투경찰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OO전투경찰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임. 피해자는 부대 안에서 선배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였으며 며칠 전에는 고막이 다쳤음.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고 싶으나 피해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함.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전·의경 잇단 자살 및 구타 등 해결 위해서는 인권상황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사건 등 최근까지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해 그동안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조사결과 전·의경 인권상황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전·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종합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동 권고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예산지원 및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도 함께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과도한 출동·근무 최소화 대책,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대책, △비민주적·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대책,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개선대책, △전·의경 인권교육 강화 및 시스템 구축, △전·의경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대책, △전·의경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전·의경 식사수준의 질적 향상 및 교통비 현실화 방안,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입건 조사 등 법적책임 강화 대책, △영창제도 폐지 등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권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개선권고 내용 및 관련 현황과 문제점은 <별첨>.

전·의경 자살은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전인 25일, 대구 모 경찰서에서는 전입 온 지 1달된 전경이 부대생활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경찰서 4층 강당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3일에는 100일 휴가를 나온 제주 해안경비단 전경이 복귀하지 않고 서울 지하철역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로서 현행 전·의경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며,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기관들이 제도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검토보다는 전·의경의 개인적

인 문제 및 부대 내의 문제로 한정하여 관련자 징계와 같은 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 해결해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라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전·의경의 인권상황과 제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문별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입니다.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시위문화 및 시위관리·대처 등에 대한 인권적 개선방안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임 현황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위로 인한 전·의경 부상자 및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과격한 시위진압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새로운 인권침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내 국무총리와 민간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평화시위민관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임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위문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전·의경 인권향상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의경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7. 02. 27.)

제목 : 경찰의 응급조치 미흡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부부는 07. 05. 19.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음. 112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에서 출동했음. 저녁 9시쯤 ○○지구대로 연행되었으나 남편은 손가락을 다쳐 부어오르고 통증으로 인하여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 없었음. 그래서 병원에 먼저 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바로 △△경찰서로 이송했음. 경찰서에서도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조치를 받은 후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조사를 마친 후 가라면서 보내주지 않았음.
- ② 새벽 2시가 되어서 조사를 마치고 ○○부속병원으로 갈 수 있었으나 상해진단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병원으로 갔음. △△병원에서는 25만 원의 선금을 요구했으나 선금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왔음.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손가락이 부러지고 빠지고 했다고 하여 수술을 했음. 의사에 의하면 응급조치가 너무 늦어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함.
- ③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응급조치를 지연시켜 장애가 남게 한 것은 부당함.

답변요지

- ① 내담자가 주장하는 응급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경찰의 의료조치 미흡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수사과정에서 환자 피의자 보호조치 미흡 2006. 03. 23.

진정요지

- 1) 진정인은 2005. 2. 2. 02:00경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응급환자 증을 보여주며 진정인이 희귀혈액질환인 “발작성야간혈뇨증” 환자이니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귀가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신은 가해자다. 불치병환자여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더구나 진정인은 피가 섞인 소변을 컵에 받아 보여 주면서까지 애원 하였음.

- 2) 피진정인은 이를 목살하고 진정인을 05:30까지 지구대에 방치 하므로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는 바, 심야시간에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람.

조치의견 : 권고

권고내용

- 1)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 2)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심신장애인, 질병환자, 미성년자 등 노약자에 대한 조사 시에는 향후 이와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수사업무 담당 직원들을 교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9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71조에 따르면, 가료중인 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167조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에에서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진정인이 OO지구대에 도착하여 응급환자차량 증표를 보여 주면서 혈액희귀병으로 투명중인 환자로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나 귀가 시켜 달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수사업무 종사자로서 심신이 나약한 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긴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 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위에서 열거한 적정절차를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건강권), 제12조에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된 신체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64조(심야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야조사치 않으면 석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경우 2.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피의자의 서면 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심야조사 시에는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붙임 # 1 참조)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소년 등의 피의자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⑤ 심야조사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호 미흡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성폭력 피해자임. 올 1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제3자가 없는 공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 중 다른 직원들이 와서 사건을 보고 가는 등의 피해를 입음. 내담자는 그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뛰쳐나감.
- ②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 중 검사 2인과 계장 2인, 다른 조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없었음.
- ③ 사건은 결국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났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이 같은 수사 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전화한 것임.

답변요지

- 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호 미흡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진정을 원하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자, 우편으로 진정하겠다고 하여 상담종결함.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관련 인권위 결정

● 제목 : 성희롱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2005. 10. 18.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성추행을 당하여 112신고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 진정인의 112신고 접수 및 초동수사에 소홀해 가해자 검거의 중요한 단서인 목격자 확보 등에 실패하였고
 나. 진정인을 대상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여경 입회하의 격리된 장소’가 아닌 지구대의 공

개된 장소에서 남자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서 작성 중 다른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 고 진술을 읽어보는 등으로 인해 진정인의 수치심을 유발시켰음

검토의견 : 각하

1.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
2. 각하사유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피진정인들 각 진정요지 시인
- 나. OO지방경찰청은 피진정인들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초동수사 미흡, 여성범죄피해자 인권보호조치 및 성폭력수사지침의 규정 미준수 등의 비위사실 확인한 후, 2005. 7. 2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 원 징계(견책) 처분
- 다. 진정인 진정 취하(2005. 10. 4.)

성폭력피해자 조사 시의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상담 및 조사 시 여전” 인권위, 해당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고조치할 것 권고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등의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1월 김모씨(여,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김모(남, 40세)경찰관과 진정인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내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XXX이, 그 XX하고 이렇게 했지, 이게 나가면서 주먹이 날라 가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 퍼는 거야.’” 등의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진정인을 모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의 전화하였기에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남편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피해, 즉 안했다고 해도 남편은 믿지 않을 거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해자도 기혼이니 가해자의 아내, 진정인의 남편을 생각해서 빨리,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피해자는 보호보다는 사회적인 비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공무원집행자의 남성 중심적이고 부적절한 성 관념 및 성 인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 죄책감 등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무원집행자라는 점,

△그럼에도 과거 사회·가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되풀이되던 비극적 피해 상황을 일반화·보편화하여 사실처럼 부적절하게 설명하고, 단정 짓고, 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설명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나 고의적인 비난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과 설명을 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7. 06. 05.)

사례 14

미성년자 조사 시의 인권침해

제목 : 미성년자 경찰 진술 시 가족에게 미통지

상담내용

- ① 피해자(2명)는 초등학교 4학년 임. 우연히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모습을 목격 후 경찰에 신고 함.
- ② 경찰서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음. 이로 인하여 후유증에 시달림.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음.

답변내용

- ①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는 과정 중 미성년자 보호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우리위원회는 상황은 다르나 “피의자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음을 설명함.
- ③ 피해자의 부모와 상담 후 진정하겠다고 함.

미성년의 수사시의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미성년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경찰서장 주의조치 및 진정인 법률구조요청

진정인 K(남, 55세)씨는 2005년 5월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들(17세)을 긴급체포하고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경기도 의정부 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

장에 대한 주의조치 및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진정사건의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는 △2005년 3월 7일 00:00경 성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 △3월 8일 06:00경 긴급체포를 당한 후 계속조사를 받다 21:40경 검사지휘로 석방될 때까지 약 46시간 동안 야간·심야 조사를 받았으며 △석방된 당일 자정 무렵 집으로 일시 귀가했다가 2005년 3월 9일 06:10 의정부 소재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는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자살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및 범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에 비하여 자기방어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판단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집으로 전화 했으나 받지 않았다’, ‘서면통지를 하였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최초 연행 시각(24: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중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 당시 고소인과 그의 부모 등이 출석하여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대로 방치할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최초 입수한 시간 이후에도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연락했다는 시간에 진정인은 집에 있었으나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고 전화상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진정인들의 주장 자체의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서면으로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발송했다는 체포통지는 경찰서 자체 발송 기록 대장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 진정인에게 결국 도달하지도 않았고 △우편 통지가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들이 보호자 연락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 및 ‘소년경찰직무규칙 제31조’ 는 형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조사 내지 밤샘조사의 경우 그 지속시간과 방법, 정신적 및 육체적 효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나아가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피의자의 수면권, 휴식권은 물론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진정사건의 피해자는 2005년 3월 7일 00:00경 임의동행 되어 다음날 18:50경까지 약 43시간 동안 적절할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야간조사가 불가피한 경우(피조사자나 변호인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공소시효 압박의 경우, 체포기간 내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의동행자 신분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법의 조사는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수면권, 휴식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연행 현장에 있었던 친구의 진술, 피진정인들이 자정무렵에 미성년 피해자를 경찰서로 동행 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한 임의동행’ 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법’ 등에도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소년경찰직무규칙’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포, 구금 등 강제조치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 때에도 당해 소년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체포서의 긴급체포 사유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막연히 긴급성만을 설명할 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체포 당시 피해자는 순순히 연행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도주 시도 없이 경찰관서 내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태로 강제조치인 긴급체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미성년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그 시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임의수사) 및 200조의3(긴급체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인권위는 경찰조사가 피해자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구체적 입증은 어려우나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진술, 보호관찰상황일지,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직원의 진술(피해자는 자살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음) 등을 종합할 때,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달리 자살의 동기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직후 자살하였다는 사실은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처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 등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인데,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나 변호인 등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적절한 조력을 했거나, 적어도 석방 후에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만 있었다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피해자의 자살과 경찰관들의 위법사실 및 인권침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진정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5. 12. 26)

제목 : 경찰의 폭행

상담요지

- ① 2007. 04. 18. 새벽, 내담자는 택시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 같아 택시 기사와 함께 인근 지구대에 갔는데, 경찰이 내담자가 술 마시고 난동을 부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내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함.
- ② 내담자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자의 옆에 있던 성명불상 경찰이 04:00 경, 내담자를 피의자 조사실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폭행함. 내담자는 조서 작성을 마친 후 가해 경찰의 이름을 물었는데, 가해 경찰이 다시 내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09:00 까지 방치함.
- ③ 2007. 04. 18. 내담자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 경찰을 ○○지검에 고소하였음.
- ④ 내담자는 인권위에 이 사안을 진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뒤,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함.

답변내용

- ① 경찰의 폭행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를 의뢰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진정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고 각하함을 설명함.
- ③ 내담자가 위원회 조사를 원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해야 함을 설명함.

경찰의 폭행 관련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경찰의 폭행 2002. 6. 27.

진정요지

2001. 11. 20. 02:00경 진정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러 OO동에 갔다가 불량배들과 친구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OO파출소로 연행되는 동안 파출소 문 앞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경찰 3명(OOO부소장, △△△경사, □□□순경)으로부터 심한 폭행(주먹, 구두발, 숨을 쉬지 못하는 목졸림)을 당했음.

진정인은 같은 해 12.4.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OO경찰서에서 고소를 했으며 OO경찰서는 2002. 1. 31. 각하 의견으로 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고 OO지방검찰청은 4.23. 피진정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음. 진정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5.17 항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OO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이 계속되어 있음.

이에 진정인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다른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 및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혀주기를 원함.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근거법령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의 폭행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4. 02.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1. 12. 새벽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OO경찰서 형사계로 연행되었는데, 당시 위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로부터 구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음

검토의견 : 기각

기각사유 : 사실이 아닌 경우

판단

진정인은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이 OO경찰서 수사과 폭력2팀 사무실과 같은 서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은 피 진정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당시 위 사무실에서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000(남, 45세)와 △△△(남, 45세)이 “진정인이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밖에서 만나면 눈깔을 빼 죽여 버리겠다면서 20~30여분 간 온갖 폭언을 하였으나 동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셋째, 당시 유치장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어있던 참고인 □□□(남, 52세)이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유치장에 들어와 처음부터 담당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철창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이를 들어주었는데도 계속 난동을 부려 동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넷째, 사건 당일 녹화된 폭력2팀 사무실과 유치장 CCTV 녹화기록에도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례 16

경찰의 인격권 침해

제목 : 경찰의 모욕행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2006. 5. 14. 저녁 친구와 함께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사소한 일로 술집 여종업원과 언쟁이 생기자 여러 종업원들이 달려들어 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일이 있음.
-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술집 주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임) 내담자와 여종업원을 ○○경찰서에 연행하였음. 사건의 담당인 ○○경장은 조사과정 중 피해자인 내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며 극히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기에 내담자가 이에 항의하자 내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2차례 내담자의 얼굴에 끼얹는 등 모욕을 주었음.
- ③ 내담자는 폭행의 피해자일 뿐인데도 경찰은 쌍방피의자로 몰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반면에 내담자에게는 약식명령에 의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내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
- ④ ○○경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랍.

답변요지

- ① 사안의 경우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내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종결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합의결정

● 제목 : 인격권 침해 2006. 12. 06.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6. 5. 14. 경 진정인을 'OOO'란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성명불상 종업원들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OO경찰서로 연행한 후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입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받았으나 묵살하고, 진정인을 위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하고 이와 같이 불공정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이 항의하자 양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종이컵에 물을 담아 두 번 진정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음.

합의종결 내용

피진정인은 진정원이 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진정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며 향후 위 양자는 상호 민사·형사·행정 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인격권 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경찰의 인격권 침해

내담자가 OO동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2007. 1. 1. 가족단위의 낯선 술 취한 사람들이 욕설하고 밀쳐서 경찰에 신고했음. OO동 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는데, 내담자가 욕먹은 사실을 알렸더니 OOO 경찰은 “녹음했어. 녹음도 안하고 어떻게 고소할 생각을 해”라고 으름장을 놓았음. 내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했다고 하니 OOO 경찰은 “정초부터 싸가지 없는 년이.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같이 욕하면 되잖아”라고 했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호조치와 중재는 커녕, 오히려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하여 사과와 처벌을 바람.

제목 : 검찰의 인격권 침해

내담자는 특가법 및 알선수재혐의로 OO지청 OO호 수사과(담당 △△△ 조사계장)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 OOO수사관으로부터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엄마이름이 무엇이야?”라고 묻는 등 내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음. 또 “너 죽을려고 환장했어?”, “장가들은 머리가 니처럼 둔해?”라고 하는 등 내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내담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였음.

제목 : 검찰의 조사과정에서의 폭언 등

내담자는 2006. 9. 11. 10:00부터 OO지방검찰청 OOO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음. 고소인과 피고소인 (내담자, △△△, □□□, ◇◇◇, ▽▽▽)을 동시에 불러놓고 조사하였음. 검사는 △△△에게 “전화통화 할 때부터 빠리 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라고 했고, □□□에게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 하려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라고 했고, 내담자에게는 “검사 앞에 조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요? 형편없는 사람이네.”라고 했고, 뇌경색으로 언어가 다소 어눌한 ◇◇◇에게 “장사는 당신이 더 할 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해!”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어를 계속 하였음. 너무 강압적인 검사의 행동에 주눅이 들어 앞뒤 생각도 못하고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냥 낯인을 하였음. 검사의 위압적인 언행과 태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음.

인격권 침해 관련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제목 : 인격권 침해 2007. 06. 05.****진정요지**

2007. 3. 9. 새벽 5:50경에 갑자기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검문을 당해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인간성이 그것밖에 안돼니까 나쁘게 생각한다,” (“신분증에 대해) 이 새끼가 달라면 주지, 말이 참 많은데,” “야, 임마, 똑바로 살아,” 라고 빈정거리면서 얘기하고 ”꼬우면 파출소 따라와, 차 타“ 라고 하였음.

합의종결 내용

2007. 5. 17. 상담센터(7층)에서 조사관 입회하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진정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정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진정사건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제26조(합의)에 근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정을 종결하기로 합의함.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군대

제목 : 군대 내 폭행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들(이하 피해자)은 05. 12. 20. 군에 입대하여 ○○시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 중임.
- ② 07. 03. 01. 휴가를 나왔는데 일이 빠진 상태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상태가 이상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현재 입원한 상태임.
- ③ 피해자에 의하면 06. 01. 29. 구정 효도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 △△△에게 구타를 당함. 통신병 병장 □□□외 1명이 수송부 외곽에서 K-2소총 탄창 장전 상태로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위협함. 07. 02. 15. 상병 ◇◇◇이 주먹으로 가슴을 8회 강타하고 화장실에서 세면 중 다가와서 항문에 성추행을 강요한 적도 있음.
- ④ 지난 금요일(9일) 대대장, 중대장, 군의관을 만났는데 조사를 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음.

답변요지

- ① 군대 내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단 현병대에서 수사를 할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하될 수도 있음을 안내함.
- ② 내담자는 피해자가 금요일에 퇴원을 하게 되므로 그때까지 군 수사를 지켜 본 후 진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분신사고

내담자는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인 피해자가 2005. 8. 31. 군입대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계속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06. 1. 31.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몸에 경유를 붓고 분신을 기도하여 전신82%, 3도 화상을 입었고, 이에 치료 중 2007. 3. 28.자로 강제 전역되었음. 사고 후부터 OO병원에 계속 입원치료중임. 그 일과 관련하여, 군검찰이 가혹행위 등 분신 기도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선임병 2명을 벌금형에 처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국방부에 공상군경승인 신청하였으나, 최근 불승인처분을 받았음.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를 원하며, 군 내사고이고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이며 아직 치료중임에도 강제전역조치하고 그 치료비를 내담자등 개인에게 부담시킴은 부당하므로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해주는 등으로 시정해주기를 원함.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한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1. 15.

진정요지

피해자가 2006. 6. 18. 경. 가혹행위 등에 의해 사망한 바 타살의혹 규명 및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계자 처벌을 원함.

주문

1.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2. 국방부장관에게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3. OO사단 OO여단장에게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경고 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 중 략 -

* 피 진정인 7) 8) 9)에 대한 자체징계 및 수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순번	행 위	징계	수사	비고
피 진 정 인 7)	1	'05.11.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방수카바를 접었다 폄다하는 일을 시킴.	사 고 전	○	○ ○ 지방 검찰청
	2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내무반 침상에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앉혀놓고 개새끼 쌍욕을 함.		○	
	3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연병장에서 나는 할 수 있다 30회 외치게 함.		○	
	4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축구골대를 4회 돌고 오도록 함.		○	
	5	'05.12.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장갑차 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10여회 시킴.		○	
	6	'06.1.말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10여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전 역 하 여	○	○ ○ 폭 행
	7	'06.1.말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15분여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	
	8	'05.10.부터 '06.4.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오후에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자 체 징 계 없 음	○	○ ○ ○ ○ ○ 혐 의 없 음
	9	'05.8.말부터 '06.4.초까지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를 손으로 치거나 앞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함.		○	
	10	'05.12.말 18시경 생활관에서 2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놓고 야 개새끼야 장갑차 일지 똑바로 적지못하니며 욕을 함.		×	
	11	'06.1.말 10시경 차량호에서 2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놓고 세차똑바로 하라며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욕설과 폭언을 함.		×	
	12	'06.3.초순 오전과 오후 2회 차량호에서 조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10~15분간 차려자세 시켜놓고 개새끼 씨발새끼 미친놈 이라는 욕을 함.		×	
피 진 정 인 8)	13	'06.1.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자기할일도 못하는 새끼가 후임하고 담배피고 있냐고 고함 및 욕을 함.	×	×	사 단 검 찰 부 / 폭 행
	14	'06.1.말. 09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흑한기 훈련을 제대로 준비 안한다며“ 1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 놓고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 그런것도 모르냐고 욕을함.	×	○	
	15	'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조종이 미숙하다며 10분간씩 수회 차려자세 시켜 놓고 씨발새끼등 욕을 함	×	○	
	16	'06.6.17. 생활관에게 예전엔 취침근기가 있었다 씨발 새끼야 긴장하고 조심해라라고 욕을 함.	×	×	
	17	'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선임병에게 사고자 대신 욕먹었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차려자세 시켜놓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등 욕을 함.	×	×	
	18	'06.4중순 17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방수카바를 잘못 씌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차려자세시켜 놓고 똑같은 욕을 함.	×	○	
	19	'06.6.8. 08시경 차량호에서 배터리 결함을 제대로 못한다며 10분정도 차려자세 시켜 놓고 병신같은 새끼 니가 제대로 하는게 뭐가있냐며 욕을 함.	×	○	
	20	'06.6.14. 17시경 차량호에서 방수카바 제대로 씌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려자세 시켜놓고 10분간 욕을 함	×	○	
	21	'06.6.16. 15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장갑차 공구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이제 어떻게 할꺼냐? 니네집 돈 많냐? 니돈 가지고 사서 써라” “한번만 더 걸리면 죽는다” 라는 욕을 함.	영창 12일	○	

	22	OOO 머릿통을 때리자, OOO가 왜 때리냐고 하여 더 혼냈다.	×	×
피 진 정 인 9)	23	'06.3초순. 14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 때문에 피진정인 8)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5분간 차려자세 시켜 놓고 야 이새끼야 그런것도 못하냐라며 폭언을 하였다"하고 그 횡수는 피진정인 8)에게 질책 당할 경우로 일주일에 2회정도 였다	×	○
	24	'06.3월경 생활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약 3회정도 갈굼을 하였다	×	○
	25	피진정인 7)8)의 욕설사항을 지휘보고 안함	(영창 7일) -휴가 5일	

결론

군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육군본부 전사망심의 위원회에서 이미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는 지휘/감독 책임을 묻은바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기사

**군대 내 구타 · 욕설 법으로 금지
복무기본법안 의결... 사병간 명령 · 간섭도 제한**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의 언어폭력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구인복 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병 상호 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명령 지시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가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사병은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은 직무권한이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병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사안별로 구체적 적용 대상을 정하고, 징계조항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 제정으로 군내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가운데 병사 상호 간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한 조항을 놓고 군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들의 권익만 강조하다보니 군 기강이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한국일보 2007. 07. 11.)

군 자살자도 순직처리 검토 보훈처장 “불가피성 인정될때”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순직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28일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 문제와 관련,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이나 여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다른 근거법령 개정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자살자를 순직자로 처리해 이를 보훈대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1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 복무 기간에 발병한 공무 외 질병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7. 05. 29.)

제목 : 군대의 의료조치 미흡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들은 05년 군에서 허리를 다쳤음. ○○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군의관은 입대 전 허리를 다친 바 있다는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여 아들은 허위 자백을 했음.
- ② 아들은 06. 03.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음. 그런데 군의관은 신경치료만 하고 자대 복귀시켰음. 외부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는데 인대파열이라고 했음. 허리와 무릎 인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이유로 아들은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06. 11. 15. 의병제대했음. 07. 01. 16. 유공자 인정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 ③ 허위 자백을 하도록 협박한 군의관과 의료조치 미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줄 수 있는지 알고자 전화를 했음.

답변요지

- ① 내담자가 주장하는 군의관의 협박, 의료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사병 의료권 침해 사건 2007. 07. 09.

진정요지

- 진정인은 피해자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함.

- 1) 피해자 ○○○는 2005. 7. 20사단 ○○중대 복무 중 허리부상을 당했는데 피진정인 1)이 “피병부리지 마라”며 의료조치를 미뤘고, 국군○○병원에서 복귀 후 기브스를 하는 등 정상복무가 불가능한 몸이었는데도 내무생활을 시켰음
-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수술을 받고 요양 차 2006. 3. 8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피진

정인 2)가 진료를 제대로 안했고, 진정인과 통화 중 고함을 지르고 2006. 3. 17.복귀시키겠다고 해놓고서 악의적으로 2006. 3. 14. 복귀시켰음.

- 3) 2006. 4. 20. 국군△△병원에 2차 입원하여 십자인대수술시 수술을 시행한 피진정인 3)과 후임군의관인 피진정인 4)간에 재활에 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진정인 4)가 2달여간 재활치료를 방치하여 환부가 경직되었고, 피진정인 4)에게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민원 넣으면 외부민간 진료를 불러 하겠다”며 협박하고 고함을 쳤음.

판단

가. 진정요지 1) 관련

피해자 000을 원 소속부대에서 의료조치를 미뤘고, 부당하게 내무생활을 시켰다는 주장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의무대에 있도록 한 점,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몸 상태를 전한 점, 청원휴가를 허락하고 병원 위문 등을 한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원 소속부대에서 환자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진정요지 2) 관련

피해자 000가 후송을 간 국군00병원에서 군의관이 제대로 진료를 안하고 악의적으로 복귀시켰다는 주장은 피진정인 2)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면담을 통하여 부대복귀를 결정한 점, 진정인에게 퇴원 사유를 설명한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 2)가 환자를 방치하고 악의적으로 복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진정요지 3) 관련

피진정인 4)가 파견을 가면서 환자를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전임군의관인 피진정인 3)이 이미 피해자에게 재활하라고 교육한 점, 파견 전 피진정인 4)가 재활을 교육한 점, 파견기간 중에 간호장교가 환자에게 재활을 교육한 점,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동료군의관이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점, 피진정인 4)가 명령에 의해 파견근무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4)가 객관적으로 환자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군의관 간의 인수인계 부분은 피진정인 4)가 파견 및 위로휴가 시 대체근무자 지정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병원 내 특별한 규정도 없음. 이와 같이 군병원내 군의관 인수인계 규정이 없어 환자가 방치될 수 있고, 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 민간 대학병원 등에서 보듯이 철저한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치의견 : 권고

권고내용

1) 진정요지 3)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파견/연수/휴가 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관리 시스템을 보완 할 것을 권고함.

군대내 의료조치 미흡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7. 09.

진정요지

피해자인 진정인의 아들은 신검 1급을 받고 건장한 몸으로 2006. 6. 27. OO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뇌수막염이 발병하였으나 본데, 군의관이 감기약만 처방하고, 상급자들은 외진 등을 시켜주지 않아 입소 2개월만인 2006. 8. 신체6급 장애 3급으로 제대하였음. 철저한 조사를 원함(국가유공자 신청해 놓았음)

권고내용

국방부 장관에게 입원환자가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함.

판단

피진정인의 의료 과실 부분은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상급병원 후송과정에서 차량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이를 후에서야 후송된 것은 적시·적기에 보장되어야 할 군인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이며, 이는 헌법 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의료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됨.

피진정인의 의료과실 부분은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대대급 의무대를 거쳐, 2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사단 의무대 및 3차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군병원에 이르기 까지 5명의 군의관이 진료를 하면서 전부터 내과적 접근만 하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은 오진여부를 떠나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군 의료시설을 믿지 못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인 것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군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군의 의료조치 미흡

내담자의 동생(피해자)은 군 복무 중이던 2006. 05. 훈련 중 무릎을 다쳤음. 피해자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반환성 연골 파열로 진단받았으나, 응급입원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대 복귀한 뒤, 4주 후 입원함. 피해자는 2006. 07. 반환성 연골의 완전 절개 수술을 받았음. 완전 절개술의 경우 인공 관절 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 측은 수술비가 고가라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다가 의가사 제대 결정을 내림. 내담자와 가족들은 국방부에 문제제기했으나, 실효가 없었고, 전역 후 국가보훈처의 도움을 받으라는 답변만을 들었음.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로 결정될 지는 미지수이고,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내담자는 수술비가 고가라는 이유로 군에서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지 않는 군의 의료서비스가 문제라며, 진정하겠다고 함.

제목 : 군대의 의료조치 미흡 등

내담자의 아들은 군 복무 중임. 그런데 07. 2.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기운이 없어 2. 21. 의무실에 갔더니 의무실에서는 수액 한 병만 처방하였음. 아들은 계속 체중이 줄고 힘들어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의무실 담당자가 피병이라고 무시하면서 “네가 낫발이 좋으면 한번 해봐라, 나는 곧 전역한다”는 등의 말까지 하였음. 그리고 아들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면 장염이라고 하면서 변비약만 줬음. 아들은 3.7.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으며, 심각한 급성 당뇨로 진단 받고 의가사 제대하였음. 부대에서 아들을 방치하여 병이 심각해졌는데, 공상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음.

제목 : 군복무에 의한 부상을 공상처리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들은 2006. 10. 군대에서 제대하였음. 그런데 군복무 중인 2005년 손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그러나 결국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앞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② 내담자는 군에 공상처리를 요구하였지만 군에서는 내담자 아들의 부상이 군복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공상처리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③ 내담자는 군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조차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군복무에 의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도움을 요구함.

답변내용

- ① 내담자에게 아들의 군복무 중 부상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우리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를 원함.

군의 의료접근권 제한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원인 규명 요청 등

내담자의 아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하던 중 16개월이 지날 무렵 정신질환이 왔음. 2006. 4. 아들은 의가사제대를 했는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10일전 거부처분을 받았음. 아들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므로 원인을 규명하여 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

군의 의료접근권 제한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2006. 12. 06.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4. 7. 21. 피진정부대에 배치되어 GOP 근무중인 2004. 8. 15. GOP대대 군의관이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견했음에도 피진정인 1)2)의 조치부실로 2005. 4. 7. 00병원 정신과 진료 받기까지 약 7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접근권을 박탈당했고, 2005.11.7. 중세 호전되어 부대 복귀했으나 피진정인 3)이 가혹행위 등을 방치하여 2006. 3. 27. 재입원 해야했고 2006. 5. 23. 치료 중에 만기 제대하게 된 것은 피진정들의 잘못임.

판단

가. 의료접근권 박탈여부

-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1항 및 2항은 모든 사람의 건강권, 질병발생 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적절한 의료접근권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는 적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 피해자는 입대전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인데도, 군복무수행 중 정신병을 얻고 입원하였다가 병원에서 만기전역하면서 아무런 혜택 없이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매월 수백만 원 상당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며 치료받고 있는 것은 GOP 군의관이 정신과치료가 필요함을 소견했음에도 정신과 진료를 지연조치한 피진정인 1)2)의 판단 및 조치가 잘못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됨.

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진정인이 지목한 참고인 조사 및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등을 검토해 볼 때 가혹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치의견 : 권고

권고내용

- 육군 제00사단장 및 육군 교육사령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1)2)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권고이유

- 피진정인 1) 2)는 대대 군의관 및 소대장의 건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적기에 치료를 받게 할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판단 및 처신으로 피해자의 적시·적기 의료접근권을 침해하였음.

군 집단따돌림 정신질환 국가유공자에 해당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군복무 중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법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입대 전에 정신질환 등을 앓은 경력이 없었으나 입대 후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특히 코골이를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의 정신질환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설령 유전적 요인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정신질환은 단체생활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5월 전투경찰대에 배치받은 뒤 코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같은 해 10월 ‘급성 정신분열증 등을 동반한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2005년 4월의 병전역했다.

김씨는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생겼다”며 서울지방법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국민일보 2007. 06. 30.)

“군복무중 얻은 질병 국가보상 검토” 보훈처장 법개정 밝혀

군 복무 중 질병을 얻은 사람은 공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28일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라면 공무 외 질병으로 판정 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의 관계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심사에서만 1,864건이 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동안 기질성·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했던 경우도 복무 중 악화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보훈병원에서 무상 진료 받는 것을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해서 질병 정도에 따라 추가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한국일보 2007. 05. 29.)

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 복지시설
3. 정신보건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7. 갱생보호시설

제목 : 정신병원의 강박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의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서너 차례 입원한 적이 있었고, 현재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음. ○○의원은 외부와 환자들을 격리시켜 환자들을 고립시키고, 기저귀를 채운 채 환자들을 묶어 놓기도 함.
- ② 내담자는 자세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편으로 진정하겠다고 함.

답변요지

- ① 정신병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를 의뢰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주소를 안내하고 상담을 마침.

위 상담 진정 사례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2007. 07. 09.

진정요지

진정인은 술로 인해 피진정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적이 있는데,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면(부당한 입원, 격리·강박, 전화제한 등)에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어, 입원환자들이 구금시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인권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길 원한다.

결정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 및 ○○○가 피해자 △△△외 22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고발.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 ○○○ 및 ○○○가 피해자 △△△외 22명의 진료기록부 등에 입원 및

-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3. OO시장에게, 피진정인 000가 운영하는 OO정신과의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OO시 보건소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4. 피진정병원장에게,
 - 가. 정신보건법규를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나. 피진정인 000, 같은 □□□ 및 피진정병원 종사자 전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관련규정

- 1. 「정신보건법」
 - 가.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 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이하 생략)
 - 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라. 정신보건법 제39조(보고·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마. 제40조(입원금지 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바.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사. 제46조(환자의 격리 제한) ①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차.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카.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가. 제14조(입원동의서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이하 생략).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나.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4. 「격리및강박지침」(2007.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가. 적용기준

-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나. 적용시의 원칙

-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서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 6)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한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8)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 9)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 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5. 「작업치료지침」(2007.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가. 적용원칙

- 1)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 ㉔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㉕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㉖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㉗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 ㉘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나. 적용(참여)기준

- 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
- ② 동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
- ③ 작업치료를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6. 「의료법」

- 가. 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나. 제53조(자격정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7.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법」

- 가.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가.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동)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정신병원의 부당한 처우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

내담자는 2007. 2. 2 술을 마시고 집에 있는데, 아내의 신고로 OO병원(OO시 소재) 직원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당함.(2007. 2. 14 퇴원함) 당시 병원 호송과정에 병원직원(성명불상)에 의해 옆구리를 맞았음. 당시 내담자가 술이 취한 상태라 병원직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나 당시 상황을 아내가 보았음.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에게 강제입원의 부당성과 입원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하여 하소연하였는데, 내담자는 곧바로 보호실에 수용되어 강박을 하루 동안 당함. 동료환자 000(여, 6병동)의 경우에도 2007년 2월경 보호실에 여러차례 수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 가령, 병동에서 운다고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병원의 식판이 새로 교체된 것에 대해 000 환자가 "이 병원 돈 많이 벌었는가 보다"라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되어 보호실에 수용되기도 하였음. 6병동의 경우 한 병실에 20~25명을 수용하고 있음. 한때 스티로폼,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된 칸막이를 설치하여 병실을 3개로 나눈 적도 있었으나, 소방점검이후 모두 철거하였음. 6병동의 경우에는 옥상(80평방미터)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나, 3,5병동의 경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병동 내 비상대피구가 없음.

제목 : 정신의료시설의 부당한 처우 등

환자들과 보호사가 함께 고스톱을 칩. 병원규칙을 어기거나 보호사, 간호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환자가 있으면 끈으로 묶음. 약을 아침과 저녁에 처방해 주는 데, 아무런 고지 없이 갑자기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음. 그 이유에 대해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초조하고 불안해 보여 약을 처방을 달리했다.”고 얘기함. 치매가 있는 노인들을 입원시켜 요양원처럼 운영함. 노인들을 돌보는 일들은 도움이(입원해 있는 환자)가 하고 있으며,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경우 담배를 한 갑씩 주고 있음. 도움이 중 실장은 한달에 5만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도움이들은 전혀 돈을 받지 않음.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음.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어야 하는데 도움이만 나갈 수 있으며 일반 환자들은 출입을 통제함. 목에서 피가 나서 간호사에게 집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들어주지 않음. 정신과약이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음.

제목 : 요양병원의 환자 방치로 인한 환자 사망 등

내담자는 00도 00군 소재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본 병원은 일반내과의사 1명만 배치되어 있는 등 병원 설비가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 2006년 보호자가 없는 1종 보호환자 000가 입원했는데, 00는 자기 표현을 못하는 1급 정신지체장애인이었음. 000는 입원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틀 후 혼수상태에 빠졌음. 내담자는 000의 타 병원 이송을 주장했으나, 병원 업무부장은 이를 묵살하고 000를 방치함. 다음날 000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 산소마스크 외 다른 의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음. 이틀 후 000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함. 000가 이송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거의 시체를 보냈다고 함. 또 본 병원에는 치매 환자인 △△△(82년생, 여)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 옷을 벗는다는 이유로 묶어 놓고 있음. 본 병원 5층에는 치매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음. 현재 병원에서는 5층 출입문을 잠가 놓아, 5층에 입원한 환자들은 병원 외부는 물론 4층 이하를 출입하지 못하고 있음. 엘리베이터 비밀번호를 아는 직원만이 5층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태임. 현재 병원은 환자 수를 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받을 계획으로, 환자 머릿수를 채우는데 급급한 상황임. 내담자는 병원을 옮길 생각임. 내담자는 동종업계에 종사할 예정이라 내담자가 병원의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움. 내담자는 진정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함.

사례 21

정신병원의 사생활 침해

제목 : 정신병원의 목욕탕 CCTV 설치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은 목욕탕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음.
- ② 내담자는 ○○병원의 목욕탕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인지 문의한 뒤, 이에 대해 진정하겠다고 함.

답변요지

- ① 정신병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면, 진정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의뢰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 내담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음.

개인정보누출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정신병원의 공동 공간 감시카메라 설치

내담자는 ○○시의 정신건강병원에 06. 4.~06. 7.7. 입원했었음. 병원에는 환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TV방과 책방, 컴퓨터방 등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곳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을 감시하였음. 내담자가 병원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카메라 작동 중이라는 안내 문구를 붙일 예정이라고 하였음. 또한 내담자가 감시카메라에 대해 경찰에 문의하였더니, 환자보호차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음.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 시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임.

정신병원의 CCTV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2007. 04. 09.

진정요지

1. 샤워시설로 함께 사용되는 병원의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장면이 바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전화사용 횟수 제한, 전화통화 내용 기록,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 정지, 면회 시 보호사를 입회시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3.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욕설과 구타를 한다.
4. 환자 박00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
5. 소화전을 잠그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결정요지

1. 피진정인 OO병원장에 대하여 입원환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 전화사용 제한조치는 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것,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 감독기관인 OO시장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OO보건소장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것, 정신과전문의 배치 기준·격리 및 강박기준·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에 대한 통지의무 등 「정신보건법령」을 위반한 OO병원장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기타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

제목 : 군정신병원의 외부교통권 침해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알코올로 부인에 의하여 129 구급차에 실려 ○○시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음. 병원은 편지도 검열하고 보내지 않고, 형제에게 전화도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했음.
- ② ○○시 ○○병원은 △△시 △△병원과 동일 계열로 다른 수용자의 경우 퇴원시점이 되면 통보도 없이 병원간 이송을 하고 있음.
- ③ 내담자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편지담당 사회복지사가 검토하더니 “아직까지 술이 덜 깬다면 상담을 더해라”고 하고, 의사는 “너 인간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했음.

답변요지

- ① 정신병원의 서신검열이나 통화 제한에 대해서 외부교통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퇴원심사청구를 하지 않거나, 병원간 불법 이송을 시키는 회전문현상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진정할 것을 설명함.
- ③ 내담자의 진정서는 송부되지 않았음을 설명함. 우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를 개봉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진정권 방해에 해당되어 벌칙이 있음을 설명함.

외부교통권 제한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내담자는 OO병원에 아버지에 의하여 2007. 3. 초 경 입원되어 2007. 3. 20.경 퇴원 함. OO병원 6병동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환자가 직접 통화 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대신 받아 소식을 전해 줌. 내담자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친이 2번 정도 전화를 했으나 내담자가 받을 수 없었음.

제목 : OO신경정신과의 외부교통권 제한

내담자의 아들이 누나를 OO시 소재 OO신경정신과에 알코올중독으로 2007. 1. 1. 입원시켰음. 딸의 건강이 악화되어 2. 22. △△시 △△병원 검사가 예약된 상태였으나 내담자가 딸과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를 못 받게 하였으며, 이후 아들이 면회를 금지시켜 병원에서 면회를 거절했음. 또한 아들이 내담자의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딸이 전화를 해도 받을 수 없음. 한달 전 병원 측에서는 주 1회 30분의 면회를 허용해 주었음. 내담자는 딸이 정신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딸을 퇴원시키기 위해 오늘 경찰 2명과 함께 병원에 찾아갔는데, 경찰은 병원 측의 설명을 듣더니 가족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돌아갔음. 경찰이 돌아가자 병원 측은 앞으로는 일체 면회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였음.

외부교통권 제한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전화사용제한에 의한 인권침해등(보호) 2007. 02. 12.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환자들을 송/죽/매라는 그룹체계로 나누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 중 략 -

판단

〈2006. 3. 현재 권익체계운영현황〉

구 분	분류기준	그룹별 특권
송	스티커 개수 24개 이상	- 공중전화 주3회 사용 - 500CC 이하 물병 냉동실 보관 - 프로그램 참여 기능 (우선권 부여 1일 1회) - 배식 교대로 유지
죽	스티커 14개 이상	- 공중전화 주2회 사용 - 프로그램 참여

매	스티커 8개 이상	- 공중전화 주1회 사용 - 프로그램 참여
국	스티커 8개 미만	

※ 스티커 지급은 병동도우미, 배식, 체조 등을 하는 경우 스티커를 지급함. 자해 및 타해, 폭력 등의 상황으로 인해 억제치료 되는 경우에는 국 그룹으로 하향 조정되고, 스티커 수거되는데, 스티커 개수가 8개 되는 날부터 매 그룹으로 상향조정되고 당일 전화 가능

결정요지

정신병원 측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고, 정신보건법 제45조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및 시설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 경고할 것과 전화통화제도의 개선을 권고함

정신병원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2007년 8월 2일

**“강제입원, 퇴원 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국가인권위 올 상반기 권고 사례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설립 이후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미 권고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올 들어 권고 결정을 한 10여 건의 진정사건에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현실은 아직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검찰 고발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켜 왔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부당한 입원, 격리·강박, 전화제한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입원환자들이 구금시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인권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진정일자 2006. 10. 결정일자 2007. 7.)

- 그동안 위 병원은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들을(올케, 외삼촌, 시설장 및 시설직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로 하여 환자들을 입원시켰고, 입원동의서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환자들에게 입원사유,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매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한(별첨 1표 참조)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별첨 2표 참조)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켰고(별첨 3표 참조),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하는 것이고「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퇴원한 적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의사지시서·Progress Note·간호기록지 등)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한 것처럼 기록한 것은「의료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아 간호사실에 있는 전화를 사용토록 하면서 통화횟수는 2주에 1회로 제한했고, 통화시간도 3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작성한 편지는 간호사실에서 열람한 후 발송여부를 결정했고 진정권 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격리 및 강박의 경우도 병동규칙으로 사유 및 시간 등을 정해 놓고 임의대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환자들이 병원의 화장실, 복도, 홀 등을 청소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위 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감독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병원장에게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2.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환자들을 그룹체제로 나누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가 입원하면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을 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5.11. 2006.6 결정일자 2007.2.)

진정요지 대전 소재 모정신병원은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정을 방해했으며, 부당한

격리와 강박은 물론 강제입원 및 강제퇴원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진정을 원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6.7. 2006.8. 결정일자 2007.3.)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은 물론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정지시켜놓고, 외부인의 환자 면회 시 보호사를 입회시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진정일자 2005. 12. 결정일자 2007.4.)

-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되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면서 특히 강박 시에는 시행 당시 환자상태, 사유, 방법,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시간, 시행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통신의 자유 제한 등 입원 환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되 그 이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 등에 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 소재 병원에서는 통상 개별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관한 지시 없이 입원 초기 내려진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또는 병원규칙에 따라 사실상 간호사, 보호사가 격리·강박을 시행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대한 판단 없이 입원 환자들을 권익체계에 따라 그룹화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병원규칙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행동 제한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입원 환자의 전화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과도한 CCTV 설치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샤워시설로 함께 사용되는 병원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장면이 바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진정을 원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위 병원의 경우, 화장실과 샤워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그 안에 CCTV까지 설치하여 환자들의 신체부위가 다른 환자나 병원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국가인권위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 및 샤워실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CCTV를 철거하였지만, 화장실 차폐막 설치하는 환자들의 상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흡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이러한 행위는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하고 환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화장실의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5. 3. 14.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환자 폭행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욕설과 구타를 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진정요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뇌가 손상되어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에게 손가락에 불펜을 끼워 넣어 괴롭혔다. 또 약을 똑바로 먹지 않는다고 보호사가 환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광 소리가 나게 부딪혔다.

-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과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일부 보호사들이 방어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폭행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머리를 때리거나 손가락에 불펜을 끼워 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의 경우 징계 절차 중에 피진정인이 사직했고,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피진정인들에 대해서 시달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참작하여 피진정병원장에게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했습니다.

5. 진단서 무단발급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정신질환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정인의 진단서를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었다(진정일자 2006.7.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기록열람 등)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진정인의 법령상 정당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7조와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단서를 권한 없는 자에게 발급해 준 정신과전문을 주의조치 할 것과 위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권고하였습니다.

6. 부당 입원 및 서면고지 의무 위반

진정요지1) 진정인은 포항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 입원(2005.11.)되었는데, 피진정인인 병원장은 입원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진정일자 2006.6. 결정일자 2007.4.)

진정요지2) 진정인은 형제들에 의해 인천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입원(2005.5.)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퇴원을 불허하고 있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5.)

-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법 조문은 자료의 첨부 참조)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정신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입원 당사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소재 모정신병원, 충남 소재 모정신병원, 인천 소재 모정신병원,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청구를 밟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비자발적 입원환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보호자 동의 및 전문의 진단에 의해 입원된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하고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 포항 소재 모병원장을 비롯한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비자발적 입원환자들이 자신의 입원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 입원 환자가 퇴원심사청구를 밟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즉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입원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병원장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7. 병원 치료환경 훼손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충북 소재 모병원은 병원 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화성기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조성하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7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조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장은 병원 구내와 이에 인접한 곳에 대형 조각상 수십 점을 설치하여, 이를 관광객에게 관람시키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냄으로써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병원 구내에 조각상 관광객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8. 부당한 종교의 자유 제한

진정요지 > 충북 소재 모정신병원은 타 종교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종교 및 종교행사에 참여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병동 찬양행사와 찬양대회를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병동내의 강제적인 찬양행사와 찬양대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9. 지도 감독 관련(공통)

- 위와 같이 피진정병원들에서는 정신보건법령 등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들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해당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제목 : 정신병원 계속입원 요구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과 피해망상증 환자로서 결혼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한번도 돈을 벌어 온 적이 없으면서 술만 먹으면 내담자에게 폭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내담자를 괴롭혀 왔음. 몇 해 전에 견디다 못하여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냈다가 몇 달 후 퇴원을 시켰는데, 그 후 자신을 병원에 보낸데 대하여 앙심을 갖고 폭행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음.
- ② 작년 5월 4일 남편을 ○○시 ○○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며, 6개월 후의 퇴원심사에서 계속 입원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입원생활을 계속 중임.
- ③ 내담자는 남편이 퇴원할 경우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이들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할 생각도 없으며, 다만 남편이 정상상태로 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음. 내담자는 남편의 입원비로 매월 8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음.
- ④ 남편의 음주와 폭행 때문에 아이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온 가족이 남편이 퇴원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음.
- ⑤ 병원의 원무과 직원의 말에 의하면 유사한 경우에 인권위에서 환자의 장기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인권위에서 내담자에게도 그런 도움을 주기 바람.

답변요지

- ① 내담자의 남편에 대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한 적법한 입원으로서, 시·도지사의 퇴원명령이 없는 한 계속입원이 가능함을 설명함.
- ②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위로서는 가족간의 문제에 개입하여 입원을 연장하도록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함.

정신병원 계속 입원 요청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퇴원 명령의 부당함

내담자의 남편은 알콜 중독으로 4회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00시 00병원에 2년째 입원생활을 하고 있는 중임. 남편은 최근 정확한 명칭은 모르나 모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퇴원심사를 청구하여 퇴원 명령을 받아내었으며, 이에 병원 측에서는 남편을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내담자의 남편은 2년 전 술에 취하여 미리 준비해 둔 4개의 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내담자의 딸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입회 하에 병원에 보내진 것임, 남편이 퇴원하면 내담자와 내담자의 딸은 남편의 폭력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임. 남편과 같은 사람을 퇴원시키는 것은 환자 가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람.

제목 : 정신병원의 강제퇴원 위협

내담자의 남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괴롭힘이 심각하며, 특히 칼부림을 할 때도 있다고 함. 그래서 00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는데, 남편이 인권위에 진정접수를 하고 퇴원심사청구를 하며 소송까지 진행함으로 해서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맡기가 곤란하다며 무조건 퇴원시키라고 한다 함. 병원 측에서는 금일 오후 4시까지 보호자가 와서 퇴원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퇴원시키겠다고 했다함. 내담자는 남편과 대화가 힘들고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퇴원하면 모두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등 가족들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서의 퇴원은 위험한 일이라고 함. 내담자는 병원 측의 태도에는 인권위도 책임이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구금시설

제목 : 구금시설의 폭행

상담요지

- ① 2007. 2. 21. 내담자는 아들을 ○○교도소에서 면회했음. 아들은 얼굴이 부어있고, 얼굴 안쪽 볼이 터져 있었음. 또한 옷이 완전히 찢어진 상태로 독방에서 나왔다고 했음. 아들은 같은 수용실의 연장자와 말다툼으로 자꾸 매를 맞게 되어 교도관에게 전방을 요구했으나 불허되었음. 아들의 전방요청을 무시하고 설득하던 교도관 4명(주임 2명, 부장 1명, ○○○계장)은 2007. 2. 17. 밤 8시30분경 아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 따라서 조사하여 징계를 주기 원함.
- ② 내담자가 고충처리반을 면담하니 처음엔 아들을 때린바 없다고 하더니,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음.

답변요지

- ①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한 폭행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증거보전을 위하여 면전진정을 요청하면서 즉각 출동을 요구하여 전화녹음으로 진정접수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5. 28.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1. OO교도소에 수용중인 아들을 면회했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고, 입 안쪽 볼이 터져 있었음. 아들의 말에 의하면, 2007. 2. 17. 교도관들이 폭행하였다고 함. 교도관들을 징계하여 주시기 바람.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000, 피진정인 △△△ 및 피진정인 □□□은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등과 뺨을 살짝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000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때렸(폭행)는바, 피진정인 000가 피해자를 때린(폭행) 것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000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교도관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함.

내담자는 00교도소에서 제10작업장에서 출역 중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여 2006.11.29 조사실(10동)에 수용되었음. 동년동월동일 오후 5시경 내담자는 사동복도에서 다른 거실에 있는 수용자와 이야기 하던 중 사동청소부의 제지에 사동청소부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본 담당근무자(000 교위)가 “××놈 만기 다 되었다고 만기 곤조 부리는 거가? 죽어볼래”라고 폭언을 하면서 본인의 목살을 잡고 보조근무자(성명불상, 계급 교사)는 발로 얼굴을 밟았음. 이후 내담자는 미지정관구실로 끌려갔는데, 동 관구실에서 담당근무자와 보조근무자는 본인의 손목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본인이 반항하자 보조근무자가 발로 내담자의 얼굴을 밟으면서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이후 담당근무자와 보조근무자는 내담자의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음. 이후 담당근무자는 쇠사슬을 내담자의 발목에 채워 내담자를 상담실(관구실 바로 옆에 있음)로 데려갔고, 동 상담실에서 보조담당자와 함께 다리를 뒤로 꺾은 상태에서 쇠사슬로 다리와 몸통을 2~3시간 동안 묶었음. 그리고 보조담당자는 발로 얼굴을 밟고 000 관구계장은 발로 옆구리와 다리부분을 2차례 가격하였음. 현재 내담자는 교도관의 폭행으로 앞니가 조금 깨어졌으며, 사슬을 너무 심하게 조여서 팔부분에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손부분에 약간의 마비증상이 있음.

제목 : 부당한 노역장 유치와 구치소 교도관의 폭언, 폭행

내담자는 폭행혐의로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을 11월 9일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함. 내담자는 11.9. 00지구대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경찰관은 내담자가 수배자라며 곧바로 00구치소로 데리고 갔다고 함. 내담자는 16시30분 경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00구치소에서 22:45경에 석방되었다함. 00구치소 000 교위는 내담자가 옷을 벗도록 강요하였고 내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2회 찼다고 함. 또한 앉아 일어서를 반복하고 항문을 벌릴 것을 강요하여 이에 불응하자 “야이 ××놈아, 죽을래” 라며 폭언을 하였다함.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4. 6. 29. 법무부령 제556호)

제4조 (계구사용 명령)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②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행한다.

제8조 (의무관의 건강점검 등) ①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의무관"이라 한다)는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계속적인 계구 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계구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관이 계구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계구사용심사부에 계구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의무관이 없거나 휴일 또는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에는 소장은 미리 지정한 의료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관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목 : 교도소의 의료조치미흡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06. 09.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음. 내담자는 출소 7개월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며 외부 진료를 요구했으나, 의무과장은 과민성대장염 약만 처방함.
- ② 내담자는 복통을 호소한 지 7개월이 지나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 병원 측은 몇 개월 전에 발견했다면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병이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함. 내담자는 현재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음.
- ③ 내담자는 교도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 까지 오게 되었다며, 의무과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우편으로 진정하겠다고 함.

답변요지

- ① 구금시설의 의료조치 미흡 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는 피해자가 금요일에 퇴원을 하게 되므로 그때까지 수사를 지켜 본 후 진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의료조치 미흡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의료조치 미흡 등

내담자의 아들이 폭행죄로 구속되어 OO구치소에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눈 위 부분을 12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어 OO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구치소에 돌아온 후 통증이 심하여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진통제조차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함. 내담자는 며칠 전 면회를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 아들의 상처가 흉이 남지 않도록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직원은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이에 내담자가 법무부에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법무부의 직원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음. 어제 내담자가 면회를 갔는데 아들의 말이 법무부에 전화한 사실과 관련하여 담당 교도관이 내담자의 아들을 심하게 욕박질렀다고 함.

의료조치 미흡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6. 06. 12.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백반증 환자로 피진정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악화되자 뒤늦게 형식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계호문제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루고 있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로 대체하고 있다.

- 중 략 -

결정요지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OO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제목 : 유가족의 알권리 침해

상담요지

- ① 2006. 8. 22. ○○구치소로부터 내담자의 동생이 수감 중 자살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유서로 보아 동생이 자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치소 측의 관리책임 소홀에 대한 의혹이 많음. 구치소 측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거나 거짓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며, 중요 사실에 있어 동료수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의혹이 있음.
- ② 구치소 측에 CCTV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보안과장은 고장이 났다는 등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고 있음.
- ③ 동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치소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녹화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족의 알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생각함.
- ④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랍.

답변요지

- ① 사안의 경우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함.
- ② 위원회에 대한 진정과 병행하여 구치소 측에 문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권유함.
- ③ 내담자가 진정을 원하여 이를 접수함.

수용자의 자살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결정

- 구치소 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2007. 01. 22.

진정요지

진정인의 부친은 ○○구치소 수용중 사망하였다. ○○구치소측은 유가족에게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 주장하

면서도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체를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다.

결정요지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

구금시설 내 사망사건과 관련한 기사

인권위 “관리소홀로 인한 수감자 자살 국가가 배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구치소의 관리 소홀로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31일 “2006년 5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 측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구치소가 피해자를 자살 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해왔으며 CCTV가 설치된 병동에서 당뇨 및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경과 관찰 중이었지만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구치소측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고 당일 새벽 6시 관구 교위와 교사가 아침 기상점검 중 화장실 내 수도배관에 압박봉대로 목이 매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압박봉대를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가능성이 없으며 사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숨진 ○씨의 딸은 지난해 5월 “구치소측은 유가족에게 부친이 목을 매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손봉석 경향닷컴 기자/paulsohn@khan.co.kr〉

(경향신문 2007. 07. 31.)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제목 :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 등

상담요지

- ① 07. 1. 12.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내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다른 사람에게 발급하였음.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나 사생활이 노출되었는데, 직원이 사과하지 않음.
- ② 이에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직원의 실수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
- ③ 이는 억울하며, 동사무소 직원의 사과를 바랍.
- ④ 지난 금요일(9일) 대대장, 중대장, 군의관을 만났는데 조사를 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음.

답변요지

- ①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를 고의적인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건은 우리 위원회법 32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함.
- ②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함.

지자체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처리 등

내담자의 딸은 21살인데 06. 02.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했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하 가해자)이 주민등록증을 찾아갔고, 인감증명서도 발급 받아 갔음. 가해자는 미성년자인데 자녀를 출생하여 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여 딸은 미혼모가 된 것임. 동사무소에서는 경찰에서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음.

지자체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6. 28.

진정요지

- 1) 진정인이 모친에게 인감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모친과 동생이 2006. 7. 12. 001동사무소에 가서 진정인의 인감을 신고하고 3통을 위법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001동사무소는 모친을 고발하여 모친이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
-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우울증)를 모친에게 복사해 주어 법원서류, 가정폭력상담소, 병원, 경찰서 등에 있었음. 아무런 근거없이 진단서를 복사·유출한 것은 부당함.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2006. 11. 13. 진단서 유출경위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피진정인의 답변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진단서를 부양의무자인 모친에게 복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음. 모친은 78세이며 정신병원에 3~4차례 입원하신 분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분으로 동생의 조종에 의하여 좌우되는 분임.

결정요지

1. 피진정기관의 인감증명서 발급 부분 : 기각
 - 이유 : 진정인의 모친은 진정인을 대리하여 진정인의 인감신고 및 발급이 가능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민원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2. 진정인 진단서 복사·유출 부분 : 인용
 - 조치내용 : 피진정기관의 소속기관장인 00시 00구청장에게 001동사무소장에게 주의 조치 및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이유 : 진정인의 진단서를 복사·유출한 당사자가 진정인의 부양의무자인 모친이고, 진단서에 “수년간 만성 우울증으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개인(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복사하여준 점을 감안하나, 진정인의 진단서 복사·유출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정보보호)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2006년 12월 5일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있다면 가족일지라도 주민등록표 열람·발급은 인권침해”
인권위,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주민등록법시행령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민등록 열람시스템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하면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005년 10월, 박모씨(33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박모씨는 △자신의 큰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큰형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하면서 주소가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8항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5. 7. 29.경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공포(05. 7. 1) 및 그동안 주민등록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 업무관련 개선지침(05. 8. 1.부터 시행)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주민등록표의 임의 열람·발급 제한 관련 조항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도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교부 신청서’에는 입증서류를 기재하고 첨부토록 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직계혈족 및 동일호적 내의 가족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 제한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조항들은 청구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가족간의 내밀한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는 피청구인의 요청 및 그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정보주체는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는 타인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발급받을 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공개제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를 보호토록 하는 취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 수정은 가능하지만, 기 생성된 자료의 경우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할뿐더러,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를 「헌법」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제목 : 공무원의 인격권 침해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광역시 ○○구 ○○복지관 사랑의 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함.
- ② 2006. 12. 14 오전 11시경 ○○광역시 ○○구청 사회복지사업과장(성명미상)이 내담자에게 “○○사회복지관 사랑의 식당에서는 아무나 밥을 먹을 수 있다. 사랑의 식당을 계속 이용했으면서 불만이 많나? 영세민 주제에 민원을 제기하느냐. 아들도 아파트에서 도시락 받아 먹는 주제에 주는 데로 먹지.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을 받으면서 밥이 적느니 많느니 불평이 많나. 주는 데로 안 먹고 자꾸 이야기 하느냐? 당신만 보면 골치가 아프다” 고 직원과 민원인 앞에서 언성을 높여 수치심을 느낌.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을 처벌해 주길 원하며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답변요지

- ①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 함.
- ② 진정절차 안내 후 진정 접수 함.

지자체 공무원의 인격권 침해 관련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 제목 : 인격권 침해 2006. 10. 16.

진정요지

피해자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OO구청에 신고하자, 피진정인이 “그리 할 짓이 없냐?”

포상금 제도 목적이 너 같은 놈 돈벌어 먹고 살라고 생긴 게 아니다, 너는 지탄받아야 한다” 등의 폭언을 하였음.

조사결과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한 OO공동체 민원부장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한 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피진정기관인 OO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원만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어 진정 취하를 원함.

1. 적용 법조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
2. 각하사유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함

제목 : OO군청 건설과의 부당처분

상담내용

① 내담자는 1993년 OO군으로 213평의 토지를 사서 이사를 했고, OO군청 지적과에서 경계 측량을 하여 담장을 쌓았음. 2005. 5. 24. 군청 지적과에서 토지를 측량하여 담장 쌓은 곳이 경계임을 확인해 주었음. 그런데 2006. 봄에 군청 건설과에서 재측량을 하더니 내담자의 담장이 국가소유지인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있다면서 자기비용을 들여 부수라고 했음. 군청의 측량에 의하여 13년간 설치된 담장을 이제와서 잘못되었다고 부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또한 내담자의 담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만큼 소유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내담자의 213평 땅에 대한 지적도면 대로의 경계를 찾아주기 바람. 군청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내담자의 손해도 보상해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 ① 군청의 토지 경계에 대해서 군청의 지적 측량과 담장을 부수라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다만, 원인사실의 발생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난 것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사유에 해당됨을 설명함.
- ②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임을 설명함. 또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설명함.

위 상담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부당한 경계측량으로 인한 인권침해 2007. 02. 13.

검토의견 : 각하

사유 : 위 진정은 경계측량의 잘못을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바라는 내용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권(헌법 제10조 내지 제 22조) 이외의 권리임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교육기관

제목 : 가족 상황 조사에 있어 교사의 질문 부담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사가 신학기라 가족 상황 조사를 한다며 아이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이혼한 가정 자녀들은 손 들어보라.”고 함.
- ② 내담자의 자녀는 상관이 없으나 교사의 이 같은 공공연한 질문이 이혼 가정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답변요지

- ① 공립학교 교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을 필요로 하나, 가족 상황 조사에 있어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임을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비밀 침해

내담자는 00시 00읍에 위치한 00중학교 학생 강간 사건의 피해가족을 돕고 있음. 00중학교는 동 학교 체육교사의 학생 강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실명을 기재한 유인물을 전교생에게 배포하였고, 학부모들이 이에 항의하고 배포 중단을 요구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유인물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여 무차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은 자폐아이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을 팔아 돈을 뜯어 내려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제목 : 교사의 초상권 침해

내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장애 학생이 몽둥이로 폭행을 당했음. 내담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6년생으로 담임이 학교에서 남학생만 1명씩 칠판 앞에 세우고 디카로 사진을 찍었음. 담임이 아이들의 사진을 피해자와 부모, 피해학생의 담임에게 공개한 것 같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담자의 아들을 보고 담임은 “네가 떳떳하지 않으니깐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범인으로 지목을 했음. 내담자의 아들은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시간상 알리바이가 있음. 학교 측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공개한 부당함에 대해서 이의제기 했으나 담임은 사진 찍은 게 어떡냐는 반응임. 교사가 아이들 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은 부당함.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기사

학교서 “부모 별거 이유 적어내라” 물의

학교에서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적어내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김모(45·여)씨가 딸의 학교에서 어머니하고만 사는 이유를 적어내라고 해 딸이 상처를 입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최근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만 따로 불러 그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모와 사는 학생들의 가정사가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향닷컴 2007. 09. 08.)

제목 : 학교 교사의 폭력과 폭언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담임으로부터 뺨을 맞고 발로 차이는 등 폭력을 당했음. 또 자료실에 데려가서 “칼로 배를 찌르고 싶다.”고 했음.
- ② 이후 아들이 선생과 수업하기 싫다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고는 했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줄 알았음.
- ③ 모든 얘기를 아들에게 들었음. 다른 학생들에게 문제아라고 하면서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음. 담임과 통화한 결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음.
- ④ 오후에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을 만나볼 예정임. 선생이 너무한다고 생각되어 전화함.

답변요지

- ① 위원회의 업무와 조사대상에 대해 설명함. 학교교사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는 오후에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을 만나본 후 진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여 상담으로 종결함.

교사의 폭언, 폭력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교육공무원의 인격권침해 등

내담자의 아들(이하 피해자)은 초등학교(공립) 6학년임. 06. 06.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피해자에게 가져갔다면서 아침 08:30부터 16:30까지 피해자를 감금시킨 후 4명의 선생님이 조사를 했음. 선생님들은 지갑을 내놓으라고 추궁하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했음.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하여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임. 학교 측에서 내담자를 불러서 갔는데

2학년 담임은 내담자에게 “이혼하여 영세민으로 살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느냐? 자백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처낼겠다.”고 인격모독과 협박을 했음. 관할청인 OO교육청에 위의 사실을 진정했는데 교육감은 내담자에게 “영세민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요구하느냐?” 등의 인격권침해를 했음.

제목 : 공립학교 교사의 부당한 체벌 등

내담자는 OO시 OO초등학교(공립)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임. 그런데 자녀의 담임교사의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필기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교실 바닥에서 필기를 하게하고 반장을 시켜 체벌을 가하거나 필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욕설을 함. 내담자의 자녀는 이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고 있음. 내담자는 학교 측에 문제 제기했으나 교사 재량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1주일 전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교사의 폭행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4. 16.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제주도 수학여행 중 피진정인의 학생지도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팔굽혀펴기 벌을 받은 후 개별상담 중 말대꾸를 한다며 뺨과 머리를 난타 당하고, 학생부장 선생이 이를 만류하자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려가 또 다시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
나. 또한 위 사안으로 진정인이 학교를 항의 방문하자 피진정인은 교장·교감·진정인 등이 참석한 공식 회의석상에서 매우 불쾌해 하며 피해자를 “싸가지 없는 놈, 재수 없는 놈, 교활한 놈”이라고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및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주문

OO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결론

피진정인이 수학여행 기간에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소속학교의 「체벌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과도한 체벌을 한 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OO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규정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 체벌규정(00고등학교)

제2조(시행원칙) ①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불허한다.

②교내 규율 유지 및 밝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마음의 교정 및 선도, 타 학생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다.

③체벌 문화를 지양하고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을 위해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체벌의 인정범위) ①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

②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체벌을 원할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

제5조(체벌의 절차) ①체벌전 학생이 무엇을 잘 못했는가를 밝힌다.

②체벌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한다.

③체벌은 교장이나 교감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을 한 후에 체벌사실을 교장이나 교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④담임 선생님은 체벌을 한 후에 체벌 사실을 교장 교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체벌의 방법)

①체벌은 기합에 의한 체벌과 매에 의한 체벌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한 일부 학생의 과오 행위에 대하여 학급전체나 분단 전체를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②체벌은 해당 교원과 학생의 감정순화를 위하여 즉시 체벌만을 가급적 피한다.

③체벌은 가급적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시한다. 특히 매에 의한 체벌은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

④기합에 의한 체벌은 팔을 뻗고 엎드리기, 무릎 꿇고 앉아있기, 쪼그려 앉아서 걷기, 손들고 서있기, 일정한 거리를 달리기 등으로 제한한다.

⑤매에 의한 체벌은 회초리(길이 60cm 이내, 지름 2cm이내의 표피가 매끈한 나무)나 주걱(길이 60cm 이내, 주걱 부분(15cm×30cm×1.5cm 이내의 나무)만을 사용하여 10대까지만 할 수 있다.

⑥다음과 같은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된다.

가. 대걸레 자루, 야구 방망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

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뺨이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손, 발을 이용한 체벌

다. 원산폭격, 책상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라. 인격 모독적인 언어, 비속어, 신체장애 및 성적 모욕어 등을 사용한 언어폭력

제목 :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상담요지

- ① 피해자는 초등학교 4년으로 야구부 선수 활동을 함.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는 ○○시 였으나 학교 측에서 주소지를 학교관사로 옮겨주어 6학년 1학기까지 선수생활을 하였음.
- ② ○○초등학교는 선수생활을 시작할 당시 이적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없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타 지역으로 진학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6학년이 되자 ○○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진학 할 수 있다고 함. 이에 이적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이 거부 함.
- ③ 피해자는 ○○시 △△중학교에 진학은 하였으나 이적동의서가 없어 2년 동안 시험에 출전하지 못하게 됨.
- ④ 여러 차례 이적동의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거부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모른 채 하고 있음.
- 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더 이상 아이가 상처 받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랍.

답변요지

- ① 학생운동선수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 함.
- ②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의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바 있음을 설명 함.
- ③ 내담자가 진정접수 원하여 절차 및 방법 안내 후 진정접수 함.

운동선수의 이적불허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학교의 야구선수 전학 불허

내담자의 아들은 OO상고(공립) 1학년 야구선수로 특기생으로 입학했음. 내담자가 OO시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전학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서류를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더니 계속 전학을 불허하고 있음. 학교는 운동선수가 없으면 야구부 운영이 어렵다고 했음.

제목 : 중학 축구선수에 대한 교육청의 진학 학교 강요 부담

내담자의 딸은 OO시 소재 OO중학교 3년 재학 중으로 축구선수임. 학교와 OO시 교육청은 OO시의 예산으로 키워진 선수인 점을 주장하며, 2005년에 타지역 진학 학생에게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선수의 고등학교 진학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 지역적 제한없이 전국의 원하는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OO시내의 학교에만 진학하도록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담함. 딸의 학교에는 순회코치(교육 공무원은 아니나 교육청에서 승인하며 급료가 지급되고 있음)가 있는데 선수들이 타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은 순회코치를 주지 않겠다고 했음. OO시 OO구 교육청 장학사는 2006. 2. 4. 3학년 축구선수 학부모 8명으로 하여금 OO시 OO고등학교에만 진학할 것을 강요하는 서약서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시켰음. 학교와 교육청이 타지역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과, 지정된 학교에만 가도록 서약서를 강요한 부담함에 대한 조사를 하여 타지역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운동선수 이적불허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운동선수 이적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9. 07.

진정요지

피해자는 OO초등학교 2학년에서 야구 활동을 하던 중 4학년을 맞이하여 2007. 3월 OO시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선수 이적 동의를 불허한 것은 부담함.

검토의견 : 인용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조치내용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다. 권고이유

- 1)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적동의 불허는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교육이념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자기운명 결정권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함.

관련규정

가. 대한체육회「선수등록규정」

-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0조(선수활동의 제한) ①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 ④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나. 「교육기본법」

-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참고사항 : 운동선수 이적동의관련 위원회 기 권고결정사항

- 진 정 인 : 000(전 00시청 역도선수)

- 피진정인 : 00시장

- 진정요지

진정인은 00시청 소속 역도선수로 활동하다가 퇴직하고 군 입대 및 전역이후 △△공사 역도 팀에 입단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 권고사항(2003. 6. 16 제2소위원회)

이적 동의 발급 거부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기운명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 수용여부 : 이적동의서 발급 수용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사법기관

제목 : 판사의 인격권 침해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공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 되었음.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오늘 ○○시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음. 재판 내내 서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 손을 대고 받았는데 판사는 내담자에게 “태도가 그게 뭐냐?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등의 폭언을 하여 공포를 느꼈음.

답변요지

- ① 재판 중 판사로부터 인격권침해를 당하였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하지만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증거,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사법부의 인권 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판사의 인격권 침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판사는 내담자에게 “도장 내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등의 인격권 침해를 했음.

제목 : 법원 조정위원의 인격권 침해

내담자는 어제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조정을 했음. 3명의 조정위원과 재판장이 있었는데 ○○○조정위원은 내담자에게 “애들 소꿉장난하느냐? 애들 장난 같으니 빨리 결정을 해라.” 등의 언어폭력을 했음. 재판장은 한 번 더 조정시간을 가져 보자고 했지만 내담자는 위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조정할 생각이 없어졌음. 그래서 재판장에게 더 이상 조정은 필요 없으니 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여 재판 날짜가 잡혔음. 조정위원이 위와 같은 언어 폭력을 하면서 조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의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징계에 처해주길 원함.

사례 34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제목 :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했음. 어느 날 가해자는 전화를 하여 합의해 줄 것을 강요했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지원에서 합의해 보라며 이름, 나이,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했음.
- ② ○○지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모두 알려주어 제2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항의했더니 법원 직원은 가해자에게도 열람권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했음. 성추행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답변요지

- ①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2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

“성범죄 피해자 주소공개는 인권침해”
청소년위, 법원에 우려 표명… 재발 방지 촉구

법원 직원이 성폭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소송서류를 가해자에게 복사해 준 사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청소년위는 7일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피해자 A(여)씨는 법원 직원이 자신을 성폭행한 K씨에게 복사해준 소송기록에 자신의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바람에 K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에게 헐박편지를 보내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법원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

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위는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기본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서류 제공이 피고인의 자기방어를 위한 형소법상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주소 공개는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소송 진행상 방어권 보호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청소년위는 같은 일이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 되풀이 되는 것을 꼬집으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희 청소년위 위원장은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형사소송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만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법원은 검찰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진경기자

(세계일보 2007. 10. 08.)

사례 35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

제목 : 강제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담요지

- ① 새벽 6시50분경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40~50명이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사전고지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모든 집기를 강제로 차량에 옮겨 실었음.
- ② 집달관들이 모든 살림과 집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현재 갈아입을 옷이나 손가락도 하나 없는 실정임.
- ③ 강제집행 당시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4명의 원생(24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와 살림과 집기를 강제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함.
- ④ 참고로, 진정인은 ○○동 재건축 예정지역에서 25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정인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음.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가가 2억9천5백만원으로 턱없이 낮아서 도저히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50여평)을 운영할 수가 없었음.
- ⑤ 이후 ○○건설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경 1심판결에서는 감정가대로 명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현재 2심재판 진행중임.

답변요지

- ① 진정사건으로 접수함.
- ② 당시 상황을 ○○○가 목격하였음.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부당한 인권침해 2007. 05. 07.

진정요지

피진정인(OO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40~50명)은 2007. 4. 10 오전 6시 50분경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사전고지도 없이 들이닥쳐 집안으로 들어와 갈아입을 옷이나 숟가락 하나없이 살림과 집기 등 모든 물건을 강제집행하는 인권침해를 하였음.

※ 동 어린이집은 재건축 예정지역으로서 진정인은 감정가(2억9천15백만원)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측(OO2지구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OO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1월 1심판결에서 감정가대로 명도하라는 판결이 났음.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강제집행 관련

- 피진정인의 동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24조(강제집행과 중국판결), OO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 판결 등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목적은 목적물(부동산) 내에 있는 모든 물품을 목적물 밖으로 반출하고 그 부동산을 직접 채권자 지배로 옮기는데 있으므로, 동 강제집행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전고지 여부 관련

-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으면 할 수 있고(제28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5조), 강제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사전고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피진정인은 사전고지 의무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전 진정인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예고하였는 바, 동 강제집행에 있어서 사전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결론 : 기각

기각 사유 :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국가기관

국가기관이란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나, 통상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혹은 “국가의사의 결정, 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통치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국가기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행위주체의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업무나 기능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실질설이 있다. 기관이 사인과 동등한 위치가 아닌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에 의한 권력작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즉 국가작용의 일부를 이양 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은 실질설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목 : 조선족 배우자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2005. 3. 경 조선족 여자 ○○○과 결혼하였는데, 입국비자를 발급해주지 아니하고 있어 처가 입국을 못하고 있음.
 - 내담자는 사업차 중국을 가끔 나가는데, 2003. 12. 민박집에서 ○○○을 처음 만났음. 당시 ○○○은 민박집에서 가정부일을 하고 있었음.
 - 위 인연으로 ○○○과 교제하게 되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전화통화로 계속 교제하였음
 - 그러다가 2004. 12. 경 중국으로 다시 나가 결혼하기로 약속하였고, 귀국하여 2005. 3. 경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음.
 - 그런데 중국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에 대한 입국비자발급을 불허하였고, 이에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가 2006.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수차 위 ○○○의 입국비자발급을 신청하고 문의하였으나, 위장결혼의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입국비자발급이 불허되었음.

답변요지

- ① 진정접수를 하면, 먼저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여하에 따라 구제될 여지가 있다고 답변함. 다만, 위장결혼이라면 오히려 입건되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알림.
- ② 그럼에도 내담자가 위장결혼이 절대 아니라고 하며 조속한 구제를 원하고, 아울러 이 사안은 법률, 정책적으로도 조사확인 및 판단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정접수를 권유하고 안내함.

위 상담 진정의 인권위 이송 결정

● 제목 : 입국비자 발급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8. 06.

진정요지

- 진정인은 사업차 중국에 다니던 중 2004. 12월경 중국 연길에서 조선족과 결혼하였고 2005. 3월경 국내 입국 후 혼인신고를 마쳤음. 이후, 처는 한국에 입국하려고 중국에 비자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었음.
- 진정인은 위 문제로 2006. 3월부터 7월까지 몇 번에 걸쳐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발급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계속 불허되었음.

결론 : 각하 후 이송

각하사유

- 가. 피진정인에 의하면 “2006. 8. 2. 진정인에 대한 혼인의 진정성 심사 결과, 진정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신용불량상태로 금융 등 거래관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진정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초청 사유서, 소개경위서가 허위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판명되어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 하지만 사증발급이 불허된 사실이 있어도 진정인이 과거 허위서류 제출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할만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할 경우 재조사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나. 이에 본 사건을 각하 후 소관 부서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혼인의 계속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배우자의 체류자격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2007. 04. 1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국적인 피해자와 2003. 9. 14. 혼인하여 11. 4.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 후 피해자의 체류자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을 사후에 알고 2005. 12. 13. 피해자의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범칙금 납부 후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6. 8. 10.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피해자는 국민인 진정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 결정은 가족의 결합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가. 혼인의 진정성여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OO대사관 및 한국에 2003.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고, 2004.부터 2006.까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소지의 타 거주자들이 진정인과 남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고 있거나 동거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 10.부터 거주하고 있는 현 주소지에서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 여부가 분명하고 집 주인이 이들의 동거여부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동거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바,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피진정인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진술을 한 것이 사유가 된 것이나,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거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진정인 또한 이러한 진술이 강압적 분위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결혼 등에 의한 가족관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회의 기초 단위이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의하여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혼인은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있는 바, 가족의 결합은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원칙이다. 우리 위원회도 국민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권고하는 등 가족 재결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보호하도록 결정하여 왔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여 출국하도록 결정한 것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 재결합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우자의 입국거부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출입국관리소의 입국거부

내담자는 중국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할 의사로 2005. 12. 6. 혼인신고를 하여 입국하였으나 OO공항에서 배우자의 입국이 거부됨.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 배우자의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입국 거부함. 중국영사부에 문의전화를 했으나 한국 측이 규제를 풀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고 함. 현재 법무부는 1년 후에 재신청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함.

제목 : 부당한 입국불허 등

상담요지

- ① 부당한 입국불허
2007. 5. 12. OO출입국사무소는 피해자를 입국심사하면서 피해자(○○국적)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함.
- ② 출입국 직원의 폭행
2007. 5. 12. 오전(09시~12시경) 입국심사장 부근 사무실안에서 입국심사 담당직원과 상담 중에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내리침.
- ③ 내담자가 원하는 것
 -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 2) 피해자에 대한 입국불허로 인해 내담자가 부담한 항공요금에 대한 보전

답변요지

- ① 상기와 같이 진정내용을 전화상담으로 보완함.
- ② 피해자의 여권 상 성명과 입국심사 담당직원의 성명에 대하여 내담자가 확인 후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로 진정인과 통화가 되지 않음.

입국불허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 침해

내담자는 화교1세로 그동안 한국에서 화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였음. 그동안 화교라는 이유로 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음. 2006. 8. 19. OO시 OO구청과 차이나타운 건설을 위한 협의를 하고, 2006. 11. 20. 중국에서 투자자 10명이 OO공항에 도착 함. 그런데 OO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지 중국인들이 농사꾼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를 함. 이에 내담자는 관련 증빙서

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이는 얼마 전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술자리에서 500만원을 요구 한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음. 중국에서 온 투자자들이 보호소에 감금되어 출국 당함.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또한 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하고 자 함.

제목 : 출입국사무소의 부당조사 등

한국인 80세 노인이 중국거주 5촌 자매 2명을 초청했음. 두 자매는 2006. 12. 11. 허위초청으로 인정되어 OO공항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퇴거 대상으로 입국하지 못했음. 당시 출입국 직원은 80세 노인이 보도록 책상 위에 수갑을 놓으며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하고 허위초청을 했다고 진술하라는 협박을 하였음. 노인은 무서워서 허위초청이라는 진술을 했고 자매는 OO보호소로 이송되었음. 노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퇴거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2007. 1. 9. OO보호소에 있는 자매 중 동생을 출입국 직원이 공항사무소까지 다시 데려가 조사를 했음. 보호소에 보호된 사람을 공항으로 다시 데려가 조사를 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과 압박을 느끼게 한 것은 부당함. 따라서 조사방법 등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함.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2004년 7월 15일

“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에게 이의신청권 부여해야” 국가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입국을 불허당한 외국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계 중국인 A씨(20세)가 2003년 1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을 불허당하자 2003년 2월 그 부당함을 진정한 것을 계기로 △출입국관리행정 중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관련해 자의적 판단 우려나 △불복절차의 합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법(제12조 제3항)에 근거해 여권(선원수첩), 사증, 체류자격과 입국목적의 일치여부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요건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동시행령 등 관련법은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의 내부규정인 ‘출입국관리업무편람’과 ‘외국인입국심사 절차개선방안’에만 해당 출입국관리지방사무소에 의한 재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입국불허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해당 외국인에게 불복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심사절차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무절제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행정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무절제하게 이의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심사결정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불안정한 신분상태에서 출국대기 기간도 길어져 또다른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의신청제도가 외국인의 입국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거부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할 경우 입국불허결정이 현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입국심사의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불허대상 외국인에게 소명을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속하고 용이한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외국인 입국심사제도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제목 : 불법 체류 단속 과정의 폭행 / 진료권 제한

상담요지

- ① 지난 11월 7일, 내담자의 친구는 파주의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출입국 단속반원들에 의해 체포당하였음. 그 후 그는 ○○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었음.
- ② 11월 11일, 피해자는 내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상황을 알려왔음. 피해자는 체포 과정에서 단속 반원들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특히 얼굴을 많이 맞아 눈이 많이 붓고 심지어 피를 흘리기도 하였음.
- ③ 보호소에서 피해자는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치료를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음. 약간의 의약품이 지급된 정도인데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
- ④ 단속 과정의 폭행은 명백한 인권 침해임. 또한 직원들에 의해 생긴 폭행임에도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음. 폭행과 진료권 제한으로 진정 접수 하고자 함.

답변요지

- ① 내담자들에게 인권위의 업무를 안내함. 조사관 배정과 조사 과정, 권고의 성격 등을 설명함.
- ② 진정 접수함.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출입국관리소의 영장 없는 숙박업소 객실 수색

내담자는 파주에서 숙박업소를 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영장도 없이 수시로 찾아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명목으로 객실을 수색함. 영장 없이 객실을 일일이 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제목 : OO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도한 단속

내담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 08. 31. OO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000를 포함한 6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음. 000는 사업장에 들어와 신분을 밝히고, 법무부에서 나왔다며 직원들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 이 과정에서 000 외 5인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반말로 직원들을 대했음. 이 때문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불편을 느꼈음.

출입국공무원의 외국인 고용업소 단속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2005년 12월 1일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출입국공무원의 외국인고용업소 단속 및 외국인 주거단속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향)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사업장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37세)씨는 지난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법적 체류자인 N(남, 27세, 러시아인)씨의 주거에 무단 진입해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진정을 △진정인 김모(남, 56세, 외국인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 사업주)씨가 2004년 9월 B출입국단속반원들이 회사건물에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외국인을 연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들은 단속시 신분증제시와 함께 단속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는 설명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및 진정인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N씨와 관련한 진정은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전모씨 외 7명이 야간 22:50경 N씨가 거주하고 있던 쪽방 5개에 대한 동시단속을 실시하면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문을 열어 수갑을 채운 후 신분확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목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던 사실과, 진정인 김모씨의 경우 △B출입국 직원 한모씨 외 7명이 2004년 9월 17:00경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김모씨의 동의없이 사업장에 무단진입하여 불법체류 외국인2명을 단속하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외국인단속의 법적근거 요구 및 단속에 대해 계속하여 항의하자 △112를 통해 경찰관을 부르기 까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주거 및 사업장 진입시 피해자나 진정인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업소(공장 등)단속 및 주거(주택 등)에 대해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

는 규정 등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한 바, 영장제시나 사전동의절차없이 관계인(사업주, 건물주 등)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개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영장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연행하는 것은 위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영장제시나 진정인 및 피해자의 동의절차 없이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야간에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진입해 단속한 행위 및 신원확인을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단속책임자 각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강제단속을 위한 업소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참고자료

1. 현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 ‘외국인의 동향조사, 체류관계 등의 조사를 위해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동향조사 등을 위해 ‘방문’,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로 규정한 것은 조사의 목적 및 방법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통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식품위생법의 경우 ‘출입’, ‘검사’, ‘수거’, ‘열람’ 등의 규정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장소 등에 진입하여 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위 행위를 거부하였을 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반해, 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방문’, ‘질문’,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하였을 때, 행정질서 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법 제81조에서 부여한 권한이 공무원의 강제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입검’,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위와같은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목 : 외국인 보호소 내의 폭력행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불법체류자로 지난 10월 첫째 주 서울에서 적발되어 현재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중임.
- ② 3일전 23일 월요일, 보호소 직원들의 질문에 응대하던 내담자는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려가 3, 4명의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음. 내담자에 직원들은 계속 한국 욕을 계속 내뱉었음.(내담자가 한국어로 기억하고 있음)
- ③ 불법 체류하여 체포된 것은 사실이나, 이런 식의 비인간적 대우는 더 이상 참기 힘들. 이틀째 식사를 거부하고 있음.
- ④ 인권위의 조사와 처우 개선을 바람. 내일 다시 전화하겠음. 내담자가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목격자들의 이름 등도 넣어 내일 진정 접수하기로 함.

답변요지

- ① 인권위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함.
- ②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부당한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진정 접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함.

위 상담 사례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1. 10.

진정요지

- 1) 피해자는 '06. 10. 23. 보호소 직원 3~4명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보호소 측에서는 병원에 데려갈 것을 미루고 있음.

- 2) 피해자는 위 진정 이후 '06. 11. 24. 보호소 직원 20명 이상 되는 직원들에게 20분 이상 구타를 당하였음.

판단

- 1) 진정인은 보호소 입소 후 피해자가 '06. 10. 23.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일 거실 보호외국인 진술과 근무자 진술에 의하면 10. 23일에는 직원들의 구타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10. 24일부터 식사거부 후 10. 27일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에 미루어 볼 때 보호소 거부에 의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진료결과: 염증증세로 항생제 2일분 처방

- 2) '06. 11. 24.자 폭행

(가) 진정인은 '06. 11. 24. 보호소 직원 20여명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73호실(피해자 거주) 복도에 비치된 CCTV에 촬영된 기록을 조사관이 확인한 결과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보호소 경비과 직원(5~6명정도)들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구타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음.

(나) 또한, 당시 73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보호외국인 진술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가 식사를 거부하여 보호소 직원들이 73호실에 온 후 식사를 거부한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배방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직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중 략 -

(라) 이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본 결과 OO외국인보호소 경비과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제목 : 국적 요구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버지는 조선족으로 07. 02. 08. 한국 국적을 회복했음. 아버지는 아들인 내담자를 초청한 후 04. 27. 사망했음. 내담자는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초청비자로 04. 29. 한국에 입국했음. 어제 한국 국적을 신청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한 자만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 그렇다면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라도 우선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비자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함.
- ② 아버지의 사망 여부를 떠나서 아버지는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한국 사람이므로 그의 아들인 본인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됨.

답변요지

-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국적 회복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함.
- *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실에 문의하니, 중국동포 1세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동포 2세의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하고, 12개의 기본 서류가 갖추어졌다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함.

국적신청 관련 진정의 인권의 기각 · 각하 결정

- 제목 : 국적회복에 있어서 재중동포 2세 차별 2007. 05. 10.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1949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 조선족 동포 2세로서 한국국적 취득을 위하여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에 의하여 거부당하였다. 같은 중국동포 2세라 하더라도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 1949. 10. 1.을 기준으로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귀화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동 시점 이후에 태어난 동포2세를 차별하고 있다.

나. 특히 간이귀화 신청 시 합법적으로 3년이상 체류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3년 이내의 체류만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국적취득이 불가능하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하고, 나.항은 각하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조선족 동포 2세에 대하여 국적취득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제도의 도입취지 등 목적에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을 기준으로 국적취득 절차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적법」에 의하면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아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국적취득 요건을 달리 정한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경우 불운했던 과거역사상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으며 한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보다는 좀 더 완화된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에 대한 ‘국적회복’과 외국인에 대한 ‘귀화’는 그 개념상 차이가 있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에 대해 1949. 10. 1. 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시 중국에 있던 동포들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이 모두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하여 국적국으로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동포들의 법적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는 바(2006. 3. 30. 2003헌마806),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영토에 거주하던 조선족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이 부여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출생한 조선족 동포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 시점 이후에 중국에서 출생한 동포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귀화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치는 일응 그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진정인은 간이귀화 시 합법적으로 3년이상 체류하여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귀화 요건에 있어서 중국동포 2세에 대한 국적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정 내용은 「국적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

의 입법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 의 주장은 이를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진정요지 나.의 주장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규정

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외국국적 동포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제규정) 중국국적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의 제한)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목 : 외교통상부의 외국 거주민에 대한 직무유기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중국 공안당국에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어 1997. 9. 6 중국 ○○과 △△감옥에 수용되었다가 2006. 9. 6. 출소했음. 중국의 구금시설은 인권이 상실된 국가로 한국민에 대해서만 13~17시간 무보수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음. 전염병 환자(폐결핵)와 동일 거실에 수용시키고 자기비용으로만 의료치료가 가능함. 또한 가석방 제도 등 감형에 중국인과 차별이 있음(중국인은 3년 반 정도 감형하는 반면 내담자는 1년 감형 받았음).
- ② △△감옥에는 한국인 기결수가 50여명 있고, 전 중국에 미결수가 200여명 있음. 그런데 중국주재 영사나 외교통상부에서는 중국의 자국민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하는 일이 없음. 내담자의 큰형은 옥사하고 후배는 사형을 당했는데 한국대사관 직원이 구금된 지 4년 만에 내담자를 방문하였음. 당시 중국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내담자 사건을 통보했으나 담당자가 누락시킨 것임. 외교통상부의 자국민 보호를 해태한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를 바람.
- ③ 따라서 외교통상부가 향후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와 정치적인 교섭을 하여 자국민의 구금시설에서의 편의(특히 식생활 개선)를 개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검토를 하도록 인권위에서 촉구해 주기 바람.

답변요지

- ① 중국 정부에 의한 중국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함. 내담자의 주장과 같이 외교통상부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 수립 등에 대해서 촉구해 볼 수는 있음을 설명함.
- ②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다만, 내담자 사안의 경우 원인사실의 발생이 1년이 도과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각하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원하여 인권실천시민연대 안내함.

외교통상부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외교통상부의 수사협조요청 거부 부당

내담자의 동생이 2006.1. OO나라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폭력 3인으로부터 살해당했음. 2인은 OO나라에서 재판을 받아 10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으나 두목 1인은 OO나라 정부에 살인 용의자로 수배된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했음. 경찰은 두목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만 하고 석방했으며, 살인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음. OO나라 정부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국 정부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외교통상부가 OO나라 정부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야 OO나라 경찰이 한국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음. 내담자가 외교통상부에 수차례 OO나라 정부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살인범 체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민원에 대한 소홀함과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를 하여, 수사협조 요청이 되어 동생의 살인범이 체포되기를 바람.

제목 : 주중 한국영사관의 입국사증 거부

내담자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중국여성에 대하여 OO영사관에서 사증신청이 불허되었음. 그 이유는 “서류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임. 이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으나, 답변해주지 않고 있음. OO영사관의 사증에 대한 조사절차의 불투명성이 문제이며,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제목 :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여 퇴직하였는데, 이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경영해 왔음.
- ② 퇴사 직후인 2006. 7. 10. 경 내담자는 고용보험안정센터에 실업보험 급여를 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2006. 7. 17.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해고를 신고하였음.
- ③ 고용보험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은 상담을 통하여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이때 내담자의 비밀은 보호된다고 하였음), 이에 내담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내담자의 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급여명세서 화일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였음.
- ④ 그런데 며칠 후 회사의 사장이 내담자가 우송한 서류를 내담자에게 보여주면서 회사기밀을 유출하였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였음. 내담자가 우송한 서류를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이 서류를 사장에게 넘겨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함.
- ⑤ 고용보험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의 서류 유출 경위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랍.

답변요지

- ① 사안의 경우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함.
- ② 진정방법과 진정 접수 후의 처리절차를 안내함.

노동부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노동부의 사전 동의 없는 카드 발급

내담자는 실직 후 취업훈련기관에서 취업 훈련을 받고 있음. 취업훈련기관에서는 노동부 지시라며 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우체국 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일괄적으로 신용카드를 겸한 출입카드를 지급함. 그리고 신용카드의 출금 계좌로 훈련 수당이 지급되는 우체국 계좌로 지정함. 출입카드 제작을 위해 신용카드 신청서가 쓰이고 있는 실정임. 이는 직업 훈련생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직업 훈련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내담자는 서울시립대의 신용카드 겸용 학생증에 대한 인권의 보도를 접했다며, 인터넷으로 진정하겠다고 함.

제목 :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피진정인에 대한 반말 등

내담자는 OO사의 하청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아 인터넷 영업을 하고 있으며, 07년 2월과 4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2차례 진정을 당했음.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내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진정사건과는 관련 없는 원청업체에 내담자의 피진정 사실을 알렸음. 이는 내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임. 또한 담당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고압적인 태도와 반말을 사용하였으며, 감독관의 말에 조금이라도 거스를 경우 “협조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등의 협박적인 말을 여러 차례 하였음.

제목 : 정부부처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부당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오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OO부에 전화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음. 국가기관에서 민원창구를 이렇게 막아 놓는 것은 부당하며 매우 기분이 나쁨.

답변요지

- 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OO청에 전화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침해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을 안내함.

개인정보 입력 강요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4. 02.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0. 경 OO청에서 운영하는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를 피진정기관에 문의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본 상담소의 통계와 참조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니 개인정보 누출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하였다.

주문

OO청장에게,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 1)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한 '민원사무'에 해당되며 그 상담신청인인 진정인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민원

인'으로 볼 수 있다.

- 2) 또한 상기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에게 요구한 주민등록번호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민원인의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성명·주소'가 아닌 그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진정인 고유의 개인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 3) 또 다른 주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민원인이 전화로 상담을 이용할 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상담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조회 및 본인에 대한 식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상담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 4)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인지의 구분 없이 진정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미 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전화상담 신청 시 그 상담내용의 확인 및 이에 따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강요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고객센터를 운영 하면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강요하고 미 입력시 상담원과의 통화 및 민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 기재 강요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개인정보 기재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3. 05.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6. 9. 8.경, 진정인이 OO부에 정보공개 업무상담차 OO청사를 방문하여 후문 안내실을 통해 청사 내로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방문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으나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여 민원인을 그냥 귀가하게 하였음.

판단

이상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정인의 청사 방문시 신분증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의 개인정보 기재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및「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출입자를 기록 유지하며, 동 규정 제6조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전화번호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관 피 방문부서

에 확인을 받아 출입시킨다고는 하나, 위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제6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방문자의 전화번호의 기재가 출입허용 요건의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치의견 (인용)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나. 권고내용 : OO청사관리소장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 입력 강요 관련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주민번호 입력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1. 23.

진정요지

OO청 연말정산 관련 ARS 음성 안내 전화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상담을 할 수 있음. 불필요한 주민번호 입력은 주민번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고 개인정보 남용이므로 시정하여주기 바람

결론 : 각하

- 사유

위 진정은 OO청 연말정산 ARS 음성 전화 이용시 주민번호 입력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법제30조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목 : 새터민의 혼인신고 거부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탈북하여 2004. 7. 28. 남한에 도착 함. 친척으로부터 2004. 12. 북에 있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 ② 탈북했던 아들들(2명)이 북송되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힘들어 2006. 5. 재혼 함.
- ③ 그러나 남한에 도착해 국정원에 혼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기에 재혼 한 남편과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음.
- ④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 남편의 사망신고와 더불어 재혼한 남편과의 혼인 신고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람.

답변요지

- ① 새터민의 사망신고와 혼인신고 관련하여 입법사항이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각하 될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북한인권 담당자에게 문의 후 새터민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남한의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망 확인서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안내함. 현재로서는 논의 중이나 우리위원회가 조사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 ③ 내담자가 원하여 상담종결 함.

* 본 상담은 추석맞이 새터민과 함께하는 만찬 모임 시의 방문상담 임.

“새터민-북 배우자 이혼 가능” ‘새터민보호법’ 시행 뒤 첫 판결

기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터민 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현영 판사는 22일 이아무개(33)씨 등 새터민 13명이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개정 취지와 이씨 등이 북한을 이탈하게 된 경위,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남북이 나뉘어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태가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터민들의 이혼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남북 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북한의 배우자에게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은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새터민 보호법이 2월말 시행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터민 가운데 배우자가 남한에서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배우자가 남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새터민이 아니다’라는 통일부 장관 이름의 서류를 붙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429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이후 유사한 이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한겨레신문 2007. 06. 23.)

기타

인권위 조사대상이라고 볼수 없는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하면,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진정이 제기될 경우는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된다.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각하될 수 있다.

제목 :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헌법재판소 결정 부당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지인이 ○○병원에 2006. 3.~12.까지 당뇨로 입원하였음. 의사는 지인에게 장기 복용 시 사망의 가능성이 있어 복용이 금지된 ○○○라는 약을 3개월 여간 복용시켰고 결국 지인은 2006. 4. 사망하였음. 지인의 딸이 병원 의사(살인미수)와 ○○경찰서 경찰(직무유기)을 상대로 ○○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딸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헌법소원에서조차 각하결정을 받았음.
- ② 의사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를 바랍.

답변요지

- ①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사안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거친 사안은 우리 위원회의 각하사유에 해당됨을 설명함.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관련 진정에 대한 인권위 입장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03. 5. 26. 제42차 전원위원회 결정).

그러나 수사기관의 내사·진정과 관련하여, ①수사기관의 내사·진정은 수사가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각하할 수 없고, ②수사기관의 내사·진정에 대한 공람종결 등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③위원회가 이 건을 조사할 경우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고, ④간접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으며, ⑤사건통계로 보아 위원회의 업무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⑥ 위원회로서도 각하 사건 비율을 줄이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내사·진정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진정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예비조사결과 수사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등 위원회가 진정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 한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각하하도록 함. (2007.5.28.제10차 전원위원회 결정)

*관련조항: ①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7호: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 : 경찰의 교통사고 편파조사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딸(고3)이 2006. 12. 3. OO대학 앞 횡단보도에서 친구와 함께 초록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음. 친구는 전치 2주, 딸은 10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담당 경찰이 가해자는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며 초록 불에 건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음. 경찰이 피해자 측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 ② 경찰은 초록 불에 건넜다는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데 증인을 찾기는 어려움. 그런데 내담자는 현장검증 시 OO대학교 경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초록 불이었다고 말한 것을 녹음하였음.

답변요지

- ① 경찰의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도움을 주기 어려움을 설명함. 따라서 경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담당 변경을 요청해 볼 것과 청문감사관실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안내함.
- ② 내담자가 녹음한 자료에 대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안내함.

제목 : 판사의 불공정한 재판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12년전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함.
- ② 내담자는 최근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함.
- ③ 내담자는 민사소송의 재판부가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④ 내담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판에 직접 개입해 주기를 바람.

답변요지

- ① 내담자에게 진정의 원인된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 위원회법상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부당·편파수사와 재판 관련 진정에 관한 인권위 입장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다.

본래 법원이나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위원회에 또 하나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그 중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하기 위함(접근성, 유연성, 신속한 조치, 전문지식의 제공,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 처리)이다. 그러나 업무 관할이 다른 기구의 관할과 중복되는 경우, 기술적인 충돌로 인해 양 기구 모두 효과성을 저해받기 때문에, 이 같은 충돌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규정을 둔 것이다. 특히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진행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p483~p484)

그러나 부당·편파 수사와 관련하여, ①진정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인한 인권침해 부분에 관해서는 진정인이 실제로 아무런 권리구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수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각하를 하는 것이 잘못된 법 적용이고, ②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를 감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진정인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기타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각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2007. 5. 28. 제10차 전원위원회 결정)

제목 : 고용허가제 이직 횟수 제한 개선 요구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1년의 체류 기간을 남겨 두고 있는데, 회사의 폐업, 합의 이직, 일거리 부족으로 3회의 이직을 하였음. 내담자는 남은 기간 동안 더 근무하고 싶으나, 고용센터에서는 3회 이직했고, 합의하여 이직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이직이 불가능하다고 함.
- ②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귀책으로 3회의 이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회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음.
- ③ 위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함.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더라도 진정하고 싶음.

답변요지

- ①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함. 그러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살피더라도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려움을 설명함.
- ③ 내담자의 진정 의사가 확고하여 진정접수함.

국회의 입법 관련 진정에 대한 인권위 입장

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하여 ‘국회의 입법을 조사·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속된 권한(헌법 제40조)이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권한도 부여받아 법률의 위헌여부까지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구별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법률’에는 이미 제정된 법률 뿐 아니라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 위도 포함되고, 국회에 의해 제정·개정되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은 조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사항을 진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의 권한이 있으므로(법제19조 제1항 제1호), 진정이 입법 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한 뒤에도 국회에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p481~p482)

제목 : 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법무부에 난민 자격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였고, 재심사에서도 역시 거절 당하였음.
- ② 내담자는 자신의 종교에 의한 박해 사유를 법무부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생각함. 자신의 사정을 감안해 법무부에서 난민 상담을 보다 철저히 해주기를 바람.
- ③ 법무부에서는 내담자가 34회나 출국한 경험이 있음을 예로 들어 난민 자격을 거절하였으나, 내담자는 그 34회 간 한번도 ○○○국에 간 적은 없고,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갔음.
- ④ 또한 법무부에서는 ○○○ 인 내담자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를 중대하지 않은 듯 거절 사유로 밝혔으나, 자신은 ○○○ 으로 ○○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임.
- ⑤ 캐나다 대사관, UNHCR 등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더 이상 도움 받을 곳이 없음. 법무부의 난민 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에 인권위의 판단을 바람.

답변요지

- ① 내담자에게 법무부의 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차별 요소가 있었다면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안내함.
- ② 난민 자격 심사에 있어서 법무부의 재량권이 있음을 설명함. 내담자가 법무부의 난민 불가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판단 받고자 함.

난민인정을 구하는 진정에 관한 인권위 입장

법무부의 난민인정 신청 불허가 부당하다는 진정은, 난민인정 심사과정 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심사 결과의 당부를 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05진인995의 선행 결정례 : 난민인정을 구하는 진정취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각하

제목 :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등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한 바 있음. 내담자는 대학 도서관 등에서 아버지가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했다는 자료를 수집하여 05년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했음. 그 당시 아버지와 함께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은 13명이 있었는데 9명은 유공자로 인정을 해주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를 시킨 상태임. 항일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생사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답변요지

- ① 우리 위원회 업무영역을 안내 후 유공자 인정여부는 보훈처의 고유업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 ②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안내함.
-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을 안내함.

국가유공자 지정을 구하는 진정에 관한 인권위 입장

국가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정한 보상수급권은 국가보상적 성격 및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보장되는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헌재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진정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제목 : 보호관찰소 직원의 폭행과 욕설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들은 16세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 아들이 학교에서 교사와 문제를 일으켜 ○○보호관찰소의 출두요구에 따라 오늘 아침 9:00 보호관찰소에 갔음.
- ② 그런데 아들이 보호관찰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전화하여 가 보니,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한 직원이 아들을 발로 차고 욕을 하였다고 함.
- ③ 인권위에서 즉시 와주기 바람.

답변요지

- ① 우리 위원회에는 현장출동제도가 없음을 안내함.
- ② 그러므로 보호관찰소 직원의 폭행과 욕설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③ 우리 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과정을 설명함.
- ④ 내담자가 진정하기를 원하여,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방법을 안내함.

긴급출동을 요청 관련 인권위 입장

인권위원회는 긴급 출동제도가 없음. 다만 위원회법 제48조는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정하고 있음. 중국 결정으로서의 권고가 아니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거나 증거의 확보·인멸을 방지 등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하고 할 수 있음.

*관련조항: 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에 대한참여
 3. 시설수용자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정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명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자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차별행위

All Humanrights for All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29.>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7월24일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기초하여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권고하였다.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차별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이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 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요청 이 높아지고 있는 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 바,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차별금지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차별구제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권고법안」 주요골자

- 법안의 구조

- 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

- 차별의 정의 구체화, 범위 확대 및 보완(안 제2조)

-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20개의 차별 사유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함

-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 규정

- 위원회의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및 대통령의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명시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함

-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적시

- 고용, 교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등 영역별 차별 금지 규정 명시(안 제11조~제22조)
- 참정권, 행정서비스, 수사·재판절차 등의 영역에서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및 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차별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적시(안 제23조~제28조)
-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안 제29조) 규정

-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안 제30조), 특별한 권리구제 장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안 제31조),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안 제37조) 도입
- 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임시조치, 차별적 행위의 중지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안 제38조), 손해배상의 특례제도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지급 결정 가능(안 제39조),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0조) 도입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 관련 기사

성별·장애·인종 등 이유 부당 대우 안돼

차별 금지법안 내달 입법예고

- 법무부, 간접차별·광고도 금지 -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지·인종·학력·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조례·정책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근로 △재화·용역·공급 △교육 △법령·정책집행 △참정권 행사, 수사·재판과정 등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으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간접차별’도 금지했다.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차별을 드러내거나 조장하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차별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차별 중지, 손해배상,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차별 진정이나 소송을 낸 사람에게 해고·징계·퇴학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차별 입증을 차별 피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소송 지원 방안이 빠진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영선 인권연구팀장은 “늦었지만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차별 사유가 구체화되고 차별의 범위 역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한 뒤,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이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신문 2007. 09. 29.)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경찰의 성별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신청 거부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아내와의 불화로 아내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신청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내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함. 그러나 관련 법에 여성만 강제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내담자는 이것이 성차별이라며, 담당 경찰관의 답변을 녹음한 것을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진정하겠다고 함.

답변요지

- ① 담당 경찰의 강제 퇴거 명령 신청 거부가 성차별이라 생각한다면, 진정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함. 진정 의사를 명확히 하여 진정할 것을 권유함.

위 상담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성별을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2006. 12. 22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5. 11. 처와 부부싸움을 하여 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이하 "△△△"이라 함)가 강제퇴거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담당 형사인 000은 △△△이 신청한 강제퇴거 명령만 처리하고 진정인이 신청한 강제퇴거명령은 남자라는 이유로 처리해 주지 않았는 바 이는 성차별이므로 000과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를 원한다.

주문

OO경찰서장에게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 행사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 있는 바, 비록 진정인이 △△△으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나 ○○○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도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며,

2006. 5. 24. 진정인이 ○○○에게 전화를 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도 2006. 11. 7. 우리 위원회의 조사 시 △△△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진정인은 피해가 경미하였는데 자신이 실수하여 진정인이 신청한 임시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과 △△△의 가정폭력사건 담당 경찰관이었던 ○○○이 진정인의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해 주지 않아 진정인이 결과적으로 가정폭력특례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다만 이러한 ○○○의 행위를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별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상의 과실로 인권 침해적 결과가 발생한 기본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은 실수로 진정인이 신청한 임시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당시 가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 진정인 것은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시 위 ○○○은 진정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하였다기보다는 가정폭력 피해의 정도가 진정인보다 더 큰 △△△의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실수로 △△△이 신청한 임시조치만 처리하고 진정인이 신청한 임시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때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사법 경찰관은 이를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요청한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사법절차에 따른 진정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결론

가정폭력관련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진정인의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53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제목 :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상담요지

- 내담자는 ○○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사무실에 근무한다며 다음과 같이 문의함.

- 1 내담자의 학과에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학생이 많이 있음. 그런데 2007.2.21. ○○광역시의 소방직 지방공무원 채용공고에 남성만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능 한지 알고 싶음.

답변요지

- 1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공고에 여성을 배제하였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 함.
- 2 내담자가 홈페이지에 진정하겠다고 함.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회사의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

내담자는 직원이 100여 명인 방송사에 근무하는 아나운서임. 그런데 회사에서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남자는 정규직으로 뽑고 여자는 1~3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내담자의 경우에도 04.1. 3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연말이 계약만료임. 그런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음. 회사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약을 3년 이상 연장하면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데 여성은 나이가 많으면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 회사가 여성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부당함.

제목 : 이혼한 여성 가정에 대한 카드사의 부당한 호적등본 요구

내담자는 카드단말기를 만드는 정보통신업체에 근무 중임. OO카드의 경우 다른 카드사와는 달리 이혼한 여성 가장에게 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이혼 전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전화한 것임.

제목 : 법무부의 사법고시장 남녀화장실 차별적 배치

내담자는 07. 2. 15. OO고등학교에서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보았음. 그런데 고시에 여성화장실은 3층 한곳뿐이고, 남성화장실은 1층 두 곳, 2층과 4층 한곳씩 모두 4곳이었음.이로인해 여성 응시자들은 화장실 앞에서 몇 십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시험응시자의 여성 비율이 30%로 남성보다 낮으나, 여성화장실을 한 곳만 지정한 것은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남녀차별임.

제목 : 영세민 지정에 있어 편부 가정에 대한 차별

내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편부 가정의 가장으로 공공근로를 하여 버는 월 6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음. 얼마 전 동사무소에 영세민 신청을 하러 갔으나 나이가 44세로 아직 적다며 받아주지 않음. 편부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나이와 관계없이 영세민 신청을 받아주는데 편부 가정에 대해서만 받아주지 않는 것은 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여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직원채용에서의 성별 구분 모집 2007. 03. 28.**

진정요지

2007년도 OO공업의 채용공고문을 보았는데 지원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함

판단

1. 차별의 예외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경찰공무원이 위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채용기준은 특정 집단의 해당 직군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준 채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여성의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성별이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성별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함.

2. 성별이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현금을 수송해야 하고 무거운 샘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점,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험시공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여성이 근무하기에 어려운 근무 조건이고 그 결과 여성을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의 운반은 남녀 공히 위험한 업무이고, 비록 샘플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여성 중에서도 남성보다 신체적,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성이 있을 수 있어 남성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의 시험시공 역시 여성 중에서도 남성만큼 신체적,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채용하는 부문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현금을 수송하고 무거운 샘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 일은 신체적,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강인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에 특정한 체력 기준을 요구하지도 않고 별도의 체력 테스트도 없이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채용하는 부문의 직무를 남성만이 담당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

「근로기준법」제63조에 여성인 임신부에 한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위험한 직무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성 전체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검토의견 : 권고

권고내용 :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선발하지 말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인권 위에 보고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

‘미혼 여성에 한함’ ‘남자27세 이상’

직원모집 때 성차별 여전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성적·신체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최근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342곳에 게시된 채용광고 1만1918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9.9%인 1176건이 성적·신체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미혼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을 제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미혼 여성 사무직원 모집’ ‘비만자 제외 매장 판매직원 모집’ 남성 영업지원 모집 ‘남자27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 등 성적·신체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모집·채용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1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93.8%가 법을 거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경리·창구 상담직으로 여성만 모집한 경우가 53.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생산·영업직종에서 남성만 모집한 사례가 44.65로 많았다. 나머지는 ▲직종별로 남녀 분리 모집 1.6% ▲남녀에게 나이 등 다른 조건 부여 0.4% ▲미혼·외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 부과 0.3% 등이다.

노동부는 위반 업체 가운데 모집기간이 끝난 527건은 경고 조치하고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649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없어 관행적으로 차별 광고를 하고 있었다”면서 “사무보조·경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여성만을 뽑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서울신문 2007. 08. 24.)

제목 : 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와 그로 인한 불이익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빌딩관리본부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고 있음.
- ② 2006. 02. 신입 본부장 ○○○이 예하 직원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예배 참석을 강요함.
- ③ 내담자를 비롯한 △△△, □□□은 ○○○의 강요에 따르지 않았고,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미참석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함. 이에 △△△, □□□은 자진 사퇴하였음.
- ④ 2007. 04. 17. 내담자는 전기팀장으로부터 내담자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본부장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음.
- ⑤ 본부장의 종교 강요는 부당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음.
- ⑥ 내담자는 2007. 04. 17. 고충팀장과 상담한 내용을 첨부하여 진정함.

답변요지

- ① 종교를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함.
- ② 위원회에서 피진정인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내담자와 피진정인 사이의 조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음을 설명함.
- ③ 진정 접수함.

위 상담 사례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예배불참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7. 07. 13.

진정요지

OO빌딩관리본부(이하 '본부')의 관리본부장인 피진정인은 본부 직원인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사내 예배 참석 및 OO빌딩 11층에 위치한 OO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와 이로 인한 불합리한 업무 환경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의 관행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주문

1. OO빌딩관리단에게 OO빌딩관리본부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OOO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OOO이 직원들에게 사내예배 참석이나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진정인 및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퇴사를 하기에 이른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목 : 사립대학의 특정종교 예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아들은 07년 기독교 재단인 ○○대학교에 입학하였음.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기 를 원하는데, 기숙사 입실자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를 봐야하고 2회 이상 결석하면 퇴실시 킨다고 함. 이에 아들은 기숙사 신청을 포기하였음.
- ② 또한 학교과정에도 예배가 있으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F학점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 ③ 대학에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 모두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 함.

답변요지

- ① 사립대학의 특정종교 예배 참석 여부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 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아들의 의사를 타진하여 진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2005. 12. 05.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캠퍼스 학생으로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생활관 관생선발규정은 불교의식인 수계대법회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판단

가. 정교분리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고,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학칙 등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대학교의 수계대법회 참석은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불교정신을 체득케 하는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며, 생활관 정원의 70% 이상을 수계대법회 참석과는 상관없는 신입생에게 할당하고 있어 수계대법회 참석이 생활관 입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 대학이 수계대법회 참석을 과도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불교정신의 구현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비추어 불교신자와 수계대법회 참석자를 우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수계대법회 참석에 불참한 학생을 재학 중 1년간 생활관 입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입관이 가능하므로 제한되는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위법한 행위로서 진정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종교를 이유로 대학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계대법회 참석을 강요하고 종교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결과, 헌법 제20조와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종교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목 :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상담요지

- 1 내담자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임. ○○중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로 창제시간과 예배시간이 있음. 내담자의 아들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창제시간과 예배시간에 출석하지 않았음. 그랬더니 목사는 결석처리를 하였으며,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창제시간에 결석하고 있으므로 졸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음.
- 2 기독교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강제로 한 종교를 강요하면서 그 종교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석처리하고 졸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 생각됨.

답변요지

-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를 당하였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공립중학교 담임교사의 특정종교 강요

내담자의 자녀가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임. 그런데 담임교사가 조례와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의 기도를 시킴. 얼마 전까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기도를 시켰음. 이에 내담자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에서 해당교사를 지도했음. 그 후 담임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교사의 주도로 기도시간을 가지고 있음. 이는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이므로 시정되기를 원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 제목 : OO고등학교의 종교 활동 강요행위 개선 요구의 건 2004. 08. 27.

진정요지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 만 해야 하는 현 학생회칙의 개정 요구
- 2) OO고 입학 시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았다는 선서강요, 아침 학급조회 시 번호 순으로 강제기도, 3박 4일간의 생활관 합숙 시 기도와 찬송을 강요 하는 등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 활동 강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요망.

쟁점

종교재단 설립 사학인 OO고등학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종교를 이유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

합의내용

-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에 다니는 자만 해야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한다.
-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 활동 문제 등에 대하여는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한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기사

“종교재단 학교 선교이유 학습권 침해해선 안돼”

강의석씨 “다른 종교재단 학교도 변화하는 계기 됐으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이겨 학교로 돌아갔던 강의석(21. 서울대 3년)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내 종교 자유를 침해당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며 강씨가 모교인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해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감독기관으로서 조치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외로운 싸움은 고교 3학년이던 2004년 6월 시작했다. ‘모든 학생은 예외 없이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에 그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1항)는 짧지만 또렷한 목소리를 내며 1인 시위로 저항했다. 학교는 한 달 만에 강씨를 제적시켰고, 이후 법원은 강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졸업 뒤 서울대에 진학한 강씨는 2005년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100원의 소송을 냈다.

재판 뒤 강씨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기쁘다. 이 판결이 다른 (종교재단)학교들까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씨는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지난 4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06년 3월 현재 종교재단이 설립한 고등학교는 245곳, 종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163곳이다. 이 중 10곳에서 종교과목 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글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한겨레 2007. 10. 06)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컴퓨터 실기 시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모니터 제공 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약시로 시각장애3급임. 올 2, 3월에 컴퓨터활용능력시험 및 워드필기시험을 쳤는데 주최측에서 시험지를 200% 확대한 후 제공하여 무사히 치를 수 있었음.
- ② 현재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장에 일반적으로 비치된 14~15인치 모니터의 경우 화면이 너무 작아 내담자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③ 오늘 책임자와 통화하여 모니터만 큰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안된다는 답변을 하여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답변요지

- ① 컴퓨터 실기 시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크기의 모니터를 제공치 않는 것이 비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진정을 원하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자, 인터넷으로 진정하겠다고 하여 상담종결함

위 진정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할 것 권고 (2007.07.19.)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시각장애3급인 김모씨(남, 52세)가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상시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를 제공할 것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진정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 2회 별도로 수시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확대 시험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17인치 모니터 제공 을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 처럼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상시 검정은 매일 실시되는 반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정은 1년에 단 2회 실시되어 자격증을 빨리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상시검정에 응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시검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해 수시검정 실기시험에 응시한 시각장애인은 49명에 불과하여 상시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17인치 모니터를 제공하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 업무와 예산에 현저히 부담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6. 12. UN에서 채택된「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2008. 4. 시행을 앞두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또는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의 원칙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고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로 인하여 특정 활동을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용주(사업자)의 ‘업무의 재구성’, ‘지원 장비의 확보’,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의 개조’,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험시간의 연장’ 등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 널리 알려진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시검정에 응시한 진정인을 위해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4인치 모니터로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그 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실질적으로 연장할 것 권고 2007.7.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정인 배 모씨(시각장애1급, 여, 21세) 등 5명은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2배 정도 연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 수험능력시험 및 사법시험이 1.5배 연장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시험 시간 연장이 아니다”며 2006년 8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007년도 교사임용시험 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차 시험과목인 교육학(60분)은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전공(150분)은 20분을 연장한 170분으로 1.13배, 2차 시험과목인 논술(60분) 및 학습지도안(60분)은 각각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시험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는 시험의 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 것만으로는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이렇게 느린 이유는 시력을 사용하여 일반글자를 읽는 방법은 단어 중심으로 한꺼번에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반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촉독(觸讀)을 하는 점자는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읽어 나가기 때문이며, 일반 수험생은 시력을 사용하여 시험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점자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점자를 사용하면 문제와 문제 사이의 이동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점자로는 도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도표를 풀어 점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시험문제와는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존의 시험시간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위 사항들에 의할 때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은 적절한 시험시간이 아니며 이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시험시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1.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시험시간 연장

-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 : 점자로 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해서는 1.5배 연장, 약 시 수험생에 대해서는 1.2배 연장
-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법시험, 의·치의학교육입문 검사시험 : 1.5배 연장.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를 이유로 채용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도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마침.

제목 :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음.
- ② 위원회 권고에 따라 6급의 경우는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6급은 거의 정상인이나 다름 없어 권고의 효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
- ③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니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전화한 것임.

답변요지

- ①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 대해 소개함.
- ②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위원회 진정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권고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상담종결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직권조사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2005. 08. 25.

주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법무부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하여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상법 제732조는 정신적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장애인 보호 책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의도와 달리 이러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하여 보험업법의 개정을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의 단체보험을 통한 재해대비를 위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가입법')의 개정을 권고한다.

민간보험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업법에 보험자의 불합리한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할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을 보험자가 입증하도록 하며 장애인에 대한 보험자의 차별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의 경우 집단재해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을 통한 재해대비가 장애인 차별이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대비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시설 등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선과 보험사의 보험인수기준, 보험상품 약관 등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권고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장애인 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별 보험사의 장애인과의 보험계약에서 불합리한 근거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약관, 특약, 보험인수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국무총리에게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한다.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 개선은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개선 노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우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심사·평가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재정지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재해대비 단체보험 지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료 지원 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들의 정책 조정과 재정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처리방안>

- 상법 제732조의 개정권고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위 조항의 삭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법무부는 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 그 외 보험업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및 장애인 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정권고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한 바 소관부처별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제목 : 00사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거부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03. 00사 주주총회에 참석했는데, 글자로 된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실적 등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볼 수 없었음.
- ② 이에 내담자는 00사에 점자 자료, 직원의 자료 낭독, 자료에 대한 녹음테이프 제공을 담당자와 비서실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 ③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관련 자료가 제공되기를 원함.
- ④ 내담자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중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답변요지

- ① 장애를 이유로 용역이나 재화 이용에 차별을 당한 경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함.
- ② 조사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하여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조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것을 권유함.
- ③ 진정접수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결정

- 제목 : 주주총회 시 점자자료 미 제공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2007. 08. 02.

진정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3. 00주식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실적 등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음. 이에 00사측에 점자자료를 요구하고,

만일 그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면 직원이 낭독해주거나 또는 자료를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이는 시각장애인 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인바, 시각장애인 주주가 파악할 수 있는 변형된 자료 형식으로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원함.

판단

- 요약 -

본 진정사안은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들에게 제공한 주총관련 자료를 시각장애인 주주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된 자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를 주관하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현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자변형 프로그램으로 목자를 점자로 변환하는데 별다른 비용 소요 없이 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식회사가 일반주주에게 제공하는 주주총회 자료는 결산보고서, 사업계획보고, 재무재표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정보라 할 것으로, 시각장애인 주주는 그 자료 파악에 비장애인 주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임.

「UN장애인권리협약」제2조는 '장애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승인,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이며,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추구 및 그 재량적 운용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과 사적자치를 향유하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주주총회시 해당 주주의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것인바, 시각장애인이 그 정보에 충실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나 녹음테이프 또는 컴퓨터 파일로 제공되어야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였다 할 것임.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제안한 주주총회 개최시 녹음한 테이프 제공 또는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전화설명 등은 1급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에는 미흡한 것으로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현재 피진정인이 1급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제안한 자료제공 형식은 「UN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시각장애인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 인용

- 이유 : 주주총회 시 시각장애인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형하여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권고내용

피진정인은 주주총회 시 시각장애인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점자나 녹음테이프 등으로 변형하여 제공할 것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조(개념 정의) '장애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인 권과 기본적 자유의 승인,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을 의미한다.

3. 상법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공무원 채용 시 나이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2005년 ○○시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려고 했으나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응시 하지 못함.
- ② 2006년 국가직(보호관찰직)공무원 채용에서도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함.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도록 권고 해주길 바랍.

답변요지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 시 차별을 당하였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우리 위원회는 2005. 11.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 이라고 ○○도교육감에게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을 안내함.
- ③ 서류 구비하여 방문 진정예정 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 연령 제한 2007. 04. 30.

진정요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 상한을 5급의 경우에는 32세로, 7급의 경우에는 35세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나이에 의한 고용차별임.

검토의견

제도개선 권고

이유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6·7급은 35세 이하로, 5급은 32세로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이를 초과한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규정인 「공무원임용 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6·7급과 5급의 공개경쟁시험응시연령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목 : 나이에 의한 평등권 침해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06년 00시에 개인택시면허를 신청 했음. 내담자는 다른 사람과 동점으로 개인 택시면허 대상자로 인정되었음.
- ② 그런데 00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동점일 경우에는 나이순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그래서 내담자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했 음.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로 생각됨.

답변요지

-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에 의해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평등권침해(개인택시면허관련) 2007. 04. 30.

진정요지

- 가. 피진정인이 「00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이하 “면허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 나.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연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결정요지

- 가.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규정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함.
- 나.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OO센터 경력직 간호사 모집 시 나이차별

내담자는 OO센터에서 비정규직 간호사로 5년간 근무했음. 최근에 모집 공고한 OO센터 5급 간호사직에 응시원서를 제출했는데 내담자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음. 인사담당과 수간호사는 정규직 나이제한이 35세로, 내담자(38세)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음. OO센터 모집공고 내용에는 나이제한이 없음. 그러나 인사담당은 대외적으로는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인사규정도 있고, 나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했음.

제목 : OO시 보훈병원의 조리사 정규직 채용 나이 차별

내담자(43세)는 OO시 보훈병원에서 일용직 조리사로 일한지 6개월 되었음. 기간제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7.1. 부터 계약직 전환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내담자의 나이가 40세가 넘어서 안된다고 했음. 6. 30. 자로 퇴직을 하라고 함. 내담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서 우선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하여 퇴직해야 한다면 부당함. 내담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2자녀를 키우고 있으므로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람.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철폐 추진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연령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12명은 5, 7, 9급 국가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5급은 32세까지 7급은 35세까지 9급은 28세까지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안의원 측은 "외국은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은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연령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위헌요건인 6명을 넘기지 못해 기각했다.

사회전반에 걸쳐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제한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2~3년 전부터 지원자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없애오다가 올 4월에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 대부분의 기관이 연령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노동부가 올 2월 입법예고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빠르면 2008년부터 연령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구직자들은 연령제한 철폐에 대부분 찬성의 입장이다.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 최근 구직자 및 직장인 2544명에게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81.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실력이 있어도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없어져' (53.8%), '나이제한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져' (20.3%), '연령에 따른 차별은 인권침해' (14.9%)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관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다. 2005년 국정감사 때 당시 중앙인사위원장은 "연령제한을 없애면 '고시낭인'이 생겨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서울신문 2007. 08. 03.)

‘00세 이하 채용’ 못 쓴다

내년부터 연령차별 금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하지 못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 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과 함께 임금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 교육훈련·배치·진보·승진·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별 피해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시정 권고를 한다. 사업주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소송·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하는 경우,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중앙일보 2007.09.19.)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차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제목 : 기능직 공무원의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지자체의 기능직 공무원인데, 정규직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 받은 반면, 계약직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음. 내담자가 행자부에 질의하니, 행자부에서는 규정이 그렇다고 함. 내담자는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 보도를 보았다며, 내담자도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비정규직이란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위원회에 진정해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함.

비정규직 경력에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사례

- 제목 : OO원의 인턴경력 산정 차별 2007. 04. 1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원에 입사하기 전, 종합병원에서 인턴 약사로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으나 호봉 산정 시 당해기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

판단

- 1) 인턴 약사라는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 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피진정인 인사규정 및 [별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는 단지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인 인턴 약사였다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됨.

- 2) 피진정인은 약사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파트타임제 등으로 근무할 경우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란 단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나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이므로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기간 근무한 경우 반드시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에서 정규직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파트타임제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달라 업무 경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무한 시간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음.
- 3) 우리 위원회는 OO공사 사건(03진차6) 및 △△공사 사건(06진차310)에서 계약직 경력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 연관성 여부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해왔음.

검토의견 : 권고

- 이유

OO원이 호봉 산정시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진정인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함.

● 제목 : 초임 호봉 산정 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 불인정 2006. 11. 06.

진정요지

OO공사는 호봉산정에 있어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대학 전임강사의 경력을 80% 인정하고, 일반기업체 경력을 50% 인정하는 것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다.

결정요지

피진정인에게 초임 호봉산정 시 경력을 반영함에 있어 비정규직인 시간강사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 기준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인정 방식은 시간강사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제목 : 비정규직 부당 해고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부속고등학교(공립)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음. 1998년 계약직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자 학교 측에서는 어제 책상을 빼라고 했음.
- ② 9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답변요지

- 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 ② 노동부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함.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해고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OO고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원 정년 50세 제한 2007. 02. 20.

진정요지

OO시 소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조리보조원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년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OO고등학교 등 몇 개 학교만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50세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람.

판단

- 1) 이 사건의 진정의 요지는 피진정인이 비정규직인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규직과 달리 정함으로써 고용상의 차별을 하였다는 것인바,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50세로 제한한 것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었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은 불리한 대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임.

- 2) 먼저 피진정인은 취업규칙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이 국가 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법령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고 하여 차별의 항변이 될 수는 없음(「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6. 12, 중앙노동위원회, 참조).
- 3) 2004. 5.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취지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임이 확인됨. 이와 같은 취지의 지침을 반영하여 피진정인은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제정하고, 피해자와 계약해지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4)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이를 반영한 00시 교육청의 제반 지침, 그리고 피진정인이 00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제정한 관련 규정들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할 때,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병력이 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대학 수능 이후 급식인원의 감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진정인과의 근로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음. 비정규직에게 정년 제한을 두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음.
- 5) 피진정인은 취업규칙 제29조의 규정과 조리보조원 채용규정 제4조를 정년 적용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조리보조원 채용규정 제4조는 입직 연령을 규정한 조항이며, 취업규칙 제29조는 00시 교육청이 예시한 취업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년 규정을 임의로 정한 것임. 만 50세는 피진정인이 2000. 9. 조리보조원 채용규정을 정하면서 입직 제한 연령으로 규정하였는데 입직 연령을 퇴직 연령으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됨. 피진정인은 조리보조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만 5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리보조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만 50세 정년이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년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6) 따라서 다른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만 57세의 정년과 달리 이를 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만 50세로 정년을 제한한 것은 비정규직인 점을 이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됨.

검토의견 : 권고

- 조치이유 : 00고등학교가 조리보조원 정년을 만 50세로 정하여 피해자를 퇴직시킨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됨.

제목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2000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 기간제 교사에게도 퇴직금이 지급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
- ② 내담자는 퇴직금을 받고자 지역 교육청에 문의 해 본 바 계약기간이 2003.03.03 ~ 2004.02.29.로 되어 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 ③ 정규교원은 3월 1일자로 신규발령을 내면서 기간제 교사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공휴일을 피하여 발령하는 것은 차별임.
- ④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람.

답변요지

- 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을 당하였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 함.
- ② 내담자가 서류 구비하여 진정하겠다고 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OO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퇴직금 지급 차별 2007. 05. 29.

진정요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3월 1일 등 공휴일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함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검토의견 : 권고

권고이유 : 진정인에 대하여 공휴일과 일요일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권고함.

권고내용 : 진정인에게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함.

인정사실 및 판단

- 1) OO교육청은 진정인이 2003. 3. 3.자에 임용된 것은 OO초등학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초등학교의 관련 공문과 학교장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2) 2003. 3. 1.은 국가공휴일이며, 2003. 3. 2.은 일요일로 근무일은 아니나, 담임 배정 등 학교의 일정은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근로계약기간에서 특별히 제외되어야 하는 날은 아니며, 정규직 교원의 경우에도 당일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받는 날임. 더구나 기간제 교원의 경우 당해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만 1년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
- 3) 우리 위원회는 이처럼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됨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해왔음.(02진차64 사건 등)
- 4)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2005년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를 수정하여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함으로써 2005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피해발생이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러나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당해 사건도 기존 결정례와 같이 차별행위 시정 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 대우는 평등권 침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2002년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OO중학교 교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기간제 교원 차별실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시도별 기간제 교원의 처우에 대해 자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서울 OO중학교 교장에

계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3.25.)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시간강사 등을 이유로 한 방학기간 중 급여 미지급 2006. 12. 22.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달리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표1. 진정인의 2006년 시간강사 등 근무경력〉

근무기간	임용구분	소속학교	수업시수
3. 18.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3. 22.	시간강사	"	1일 4시간
4. 12. ~ 5. 10.	시간강사	△△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5. 1. ~ 5. 12.	시간강사	□□ 초등학교	총 39시간
5. 19. ~ 5. 20.	시간강사	▽▽ 초등학교	2일 9시간
6. 1. ~ 6. 16.	시간강사	◇◇ 초등학교	11일 48시간
6. 19. ~ 6. 23.	시간강사	◎◎ 초등학교	4.6시간(총 23시간)
6. 26. ~ 8. 25.	시간강사(학습 부진아 지도)	<<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6. 29. ~ 8. 25.	시간강사	"	총 48시간
7. 12.	시간강사	●● 초등학교	1일 4시간
8. 28 ~ 9. 26	기간제교사	▷▷ 초등학교	주당 28시간
9. 27 ~	기간제교사	■□ 초등학교	주당 22시간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사의 방학 기간 중 보수 지급도 그 임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차별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 중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하여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시간강사는 「초·중등 교육법」 제22조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용되어 특정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므로 그 임용사유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해 정규교사의 질병휴직, 병역의무 이행, 실종, 해외유학, 육아휴직, 파견 근무 등 한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임용된다.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03. 7.)」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는,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용사유가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규교사와 다르지 않다. 진정인은 비록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교사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신분을 잃게 되는 방학 중에도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규교사와 임용사유와 형태가 다른 시간강사 등도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기여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우수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생계를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교원관리 정책상의 문제로 보여지고,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지급이 학기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닌 이상 방학 중 임용되지 않은 시간강사 등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임용이 유지되는 정규교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와 같이 방학기간 중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시간강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목 : 사립학교 근무기간 불인정

상담요지

- ① 며칠 전 ○○시에서 “중등학교 교사의 국공립학교간 전보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왔음. 이에 의하면 전보대상이 되는 사람은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기간산정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포함될 수 없게 되어 있음.
- ②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인권 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람.

답변요지

- ① 사안의 경우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진정방법과 진정접수 후의 절차를 안내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국립학교 전보 시 사립교원경력 배제 2007. 07. 13.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 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 정함으로써 사립 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를 차별하고 있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판단내용

-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립학교 근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 즉 사립학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나. 먼저,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동일직위 내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당해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대학 부속학교의 경우 그 대학의 장)이 되는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는 그 신분 및 인사권자가 다르며 서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립학교로의 전보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을 공립학교 근무경력과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다. 또한,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정원 조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전보될 수 있어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짧은 교육공무원의 국립학교 근무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라.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 요건을 정함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목 :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발급 우대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자로, ○○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으려 하고 있음.
- ② ○○시는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간 근속하며 무사고 운전한 자를 2순위 1호로 하고, 택시운전 무사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2순위 2호로 정하고 있음.
- ③ 내담자는 서울에서 영업용 택시를 4년간 운행하고, 연이어 ○○시에서 4년 1개월째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고 있음. 내담자는 현재 8년 1개월의 택시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음.
- ④ 내담자는 택시운전 경력이 7년 이상임에도 동일회사에서 근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접수함.

답변요지

- ① “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라는 위원회 권고를 설명하고, 택시 운전 경력이 많음에도 동일회사에 근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다만, △△시의 사례와 위의 권고 사례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내담자의 사안이 차별행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설명함.

*내담자가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였음.

사회적 신분은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 사례

제목 : OO공단의 평등권 침해

내담자는 1967년 OO대 의대에서 조교를 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1970년 7월에 제대를 했음. 그 당시에는 전임 강사 발령이 3월 1일에 한 번 있었으므로 제대 후 즉 1970년 7월부터 1971년 3월까지 전임 강사 대우라고 하여 전임 강사와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대기 발령이었음. 내담자는 1971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1991년 귀국하여 교수로 재직한 후 2년 전 정년퇴임을 했음.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년 이상 재직을 해야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내담자의 경우는 2개월이 모자람으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함. 전임강사 대우를 받았던 8개월은 가산해 줄 수 없다고 함.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했는데 기각되었음.

제목 : 회사택시 기사의 사보험 가입 제한

내담자는 회사 택시기사로서, 현재 50대 연령이며, 5년전 40대 연령시, OO질병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가입 신청했으나 미승인되었으며, 얼마 전 또다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문의하자 개인택시 기사는 가입이 가능하나 회사 택시기사는 아예 가입이 안 된다는 것임. 비록 택시기사라 하더라도 건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함

제목 : 계약직의 부당한 해고

내담자는 05. 05. OO은행 계약직 운전직으로 입사했음. OO은행 운전직에는 정규직 4명, 2년 이상인 사람 13명, 2년 미만인 사람 5명이 있음. 그런데 얼마 전 2년 미만인 사람 5명에게 12월 말까지 그만 두라는 해고통지를 보내 왔음.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2년이 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됨.

제목 : 일용직에 대한 수당 지급 차별

내담자의 아내는 OO구청에서 일용직으로 5년 동안 일함. 그러나 퇴직금 지급 시 수당 산정 등에서 차별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주차 수당은 인정되나 월차 수당은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 당사자간 구두 조정 중에 있음. 일용직과 상용직이 하는 일이 동일함에도 구분을 두어 수당 등에 차별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제목 : 일용직에 대한 수당 지급 차별

내담자는 OO시설관리공단 소속 스포츠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계약직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려 하자 사측은 계약직 직원의 경우 병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연차로 대신할 것을 강요함. 노동부에 문의하니 병가 사용은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하여, 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전화한 것임.

동일택시회사에 대한 우대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선 2004. 11. 22.

진정요지

OO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면허규정”이라 한다) 별표는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회사 근속 및 동일회사에서의 성실의무이행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 발급 우선순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택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 택시운전능력과는 무관한 요건으로써 동일회사 근속기간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택시운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주문

1. OO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OO시 훈령 제168호) 별표가 동일회사 근속 및 동일회사에서의 성실의무이행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택시운전자 중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에게 OO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별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 중 동일회사 근속 및 동일회사에서의 성실의무이행 요건을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가. 이 사건 면허규정이 택시운전자에 대해 동일회사 근속 및 동일회사에서의 성실의무이행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면허신청자의 인성 및 성실도의 평가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동일회사 장기근속이 면허신청자의 인성 및 성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무사고 운전경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필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택시운전자 중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위 3. 인정사실과 같이 택시운전자가 고양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동일회사 근속 또는 동일회사에서의 성실의무이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택시운전자가 자유롭게 직장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우리위원회는 △△시, □□시, ◇◇시, ◎◎시, <<시에 대해 동일회사 근속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우선해 부여하는 것은 운전예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사실이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과 상관성이 없음에도 우대하는 것은 장기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개인택시면허 발급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복합운전경력자 차별 2006. 12. 22.

진정요지

피진정인 OO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복합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적용하면서도 이에 따른 순위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일 차종의 운전경력자에 비해 복합 운전경력자를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 운전경력자에 대한 별도 순위를 신설하거나 복합 운전경력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복합 운전경력 산정 및 적용 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판단

〈택시, 버스 복합 운전경력 환산식〉

- 버스운전경력(X)를 택시운전경력(Y)로 환산하는 경우,

$$Y = X \times \frac{10\text{년(택시분야 1순위 운전경력)}}{13\text{년(버스분야 1순위 운전경력)}}$$

- 택시운전경력(Y)를 버스운전경력(X)로 환산하는 경우,

$$Y = X \times \frac{13\text{년(버스분야 1순위 운전경력)}}{10\text{년(택시분야 1순위 운전경력)}}$$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단일 운전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복합 운전경력을 가진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피진정인이 차종별 면허비율제를 도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합 운전경력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자 해당 분야 운전경력 외 다른 분야의 운전경력도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복합 운전경력의 경우 차종별 업무의 성격, 근로조건, 우선순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력이 혼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합 운전경력의 유형 분류, 복합 운전 경력의 산정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복합 운전경력이 구성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경우에 대해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 한편, 복합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가산한 경력 연수가 단일 운전경력으로 이루어진 경력 연수와 같거나 비슷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질에 있어 복합 운전경력과 단일 운전경력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복합 운전경력의 가산으로 인한 순위 변동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순위 내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사업용자동차 분야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시의 개인택시면허 규정상 복합 운전경력의 유형 분류와 경력 산정 및 적용 기준이 단일 운전경력자에 비해 복합 운전경력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차별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제목 : 타지역 개인택시 운전경력 불인정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소재 ○○운수에서 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5개월 동안 택시운전을 하였음.
- ② ○○시에서 1년 6개월정도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였음에도 ○○시(거주지)로 전환하기 위해 ○○시청에 2006. 12. 택시면허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하였음.
- ③ ○○시에서는 ○○시장이 면허한 운수업체에서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과거2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타 지역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생각함.
- ④ 또 국가유공자는 개인택시면허 대수의 7% 범위내에서 우선 면허하는데, 유공자 본인은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계자녀는 3순위로 되어 있음. 경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를 위원회에서 시정해주길 원함.

답변요지

- ① 기존 유사 권고사례(타 지역 택시면허 경력 불인정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등)를 설명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내담자가 강력히 원하여 진정 접수함.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응시자격미달로 인한 임용무효처리

내담자는 2000. 3. 1.부터 ○○시 학생체육관 소속 수영강사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지금까지 근무해 옴. ○○시 교육청 산하의 위 체육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2007년도 근로계약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시행하였지만 이전의 수영강사들에게 형식적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그대로 고용하였고, 내담자도 같은 절차를 밟아 현재까지 수영강사로 일해 옴. 그런데, 2007. 3. 6. 내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공고일인 2006. 12. 13. ○○, △△, □□ 중에 있지 않아 응시자격 중 주소지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용무효처리 통보를 받음.

제목 :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입사 불합격

내담자의 아내는 OO사 입사 시험에서 서류는 물론 면접에서도 통과하였으나 OO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됨.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규정상의 평등권침해등 2005. 06. 20.

진정요지

- [1]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사업 면허업무규정상 '동일회사에 5년 장기 근속한 자를 우대한 것' 이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되, 적절한 유예기간 후 폐지하거나, 점진적인 축소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사업 면허업무규정상 동일회사에 5년 장기근속한 자를 우대한 것은 당해 규정의 목적이 개인택시 기사들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개인택시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운전의 숙련정도·해당 지역 지리에 대한 숙지정도·도덕성 정도를 가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동일회사에 5년 이상 장기 근속했는지 여부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며, 그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해당된다.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되, 면허규정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 없이 동일회사에 장기근속해온 다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예기간 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함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이용 차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2005.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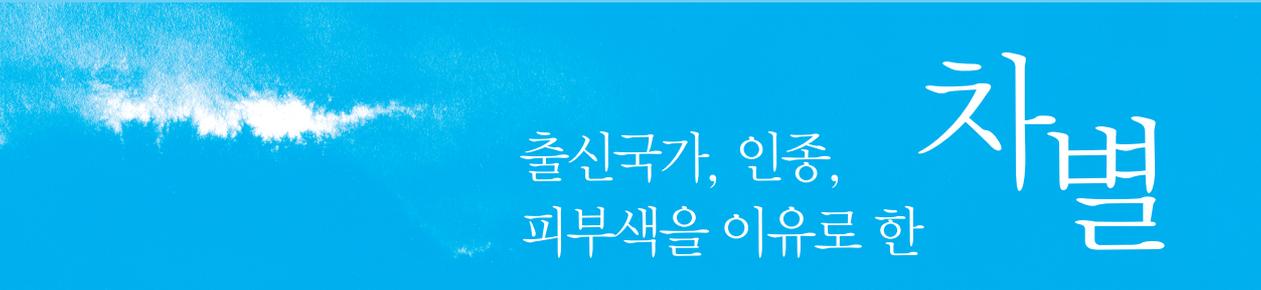
내용요지

- [1] 개인택시 신규면허신청 자격을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구역내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정한 것이 사업구역 외 운전경력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
- [2] 훈·포상 또는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그 종류에 따라 2년~6월까지 기산하면서 OO시장 이외의 타 시장 표창 수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 시장표창 수상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결정요지

- [1] 개인택시면허자는 제한된 특정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곳곳으로 신속히 운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아야 함은 택시사업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이 기본요건을 갖추었음을 가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을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사업구역 외에서만 운전경력 있는 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2] 특정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발급하는 피진정인으로서 특정 지역에 기여한 자를 우대하거나 지역에 봉사할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의 공적과 여러 등급의 훈격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는 가산제도를 두면서, 수상경력 중 가장 낮은 훈격에 해당하는 기초차치단체장 표창의 경우 사업구역 내에서의 검증된 공적에 기초하여 피진정인이 수여한 표창에 대해서만 우대하는 것은 피진정인이 가산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이 표창 수여의 자격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여 시행하면서 그 수상자에게 면허 시 우대하는 것은 표창에 대한 부상에 해당하는 면도 있어, 피진정인이 수여한 표창 수상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이 타 시장표창 수상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중국동포인 아내(피해자)와 국제 결혼하여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음.
- ② 피해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인천의 한 회사에 채용 면접을 하였음. 그런데 회사의 면접관이 회사 방침으로 국적취득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비정규직 자리를 권유함. 이는 부당한 차별임

답변요지

- ① 출신 민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진정방법을 안내함.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내담자는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1996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 내담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에 등록한 후 학원에서 지정해준 00병원에서 실습면접을 갔음. 면접관인 간호부장은 “한국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하겠으나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기에는 어렵겠다.”고 하여 내담자는 그 병원에서 실습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관련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국적차별 2003. 03. 10.

결정요지

외국인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대상 수급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6. 08. 22.

진정요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불리하고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조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니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 바람.

조치 : 각하

조치이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것으로 진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인권정책본부에서 그 정책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중임.

조치내용 : 각하 후 정책본부로 이관

※ 위 진정사건은 입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정책본부에서 검토함.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6. 10. 10.**

진정요지

피해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OO섬유에서 1999. 5. 10.~ 2005. 11. 5.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

조치 : 각하

각하사유 :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의견 : 각하 후 이송

- 위 진정사건의 내용은 임금체불 문제로 각하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 등의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노동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관련 기사

“외국인노동자에도 동일한 기본권을”

현재 ‘산업연수생 지침’ 위헌 결정

퇴직금·휴가 등 조항 없어

연말까지 연수생 일부 혜택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노동법 예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노인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0일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2명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중소기업청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등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이들 지침을 국가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에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요구할 권리는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 근로자가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가 이날 위한 결정을 내린 조항은 산업연수생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4조, 8조1항, 17조이다. 이들 조항은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일부 근로기준법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자의 핵심권리인 △퇴직금 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 △연차유급휴가 △임산부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과 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권을 똑같이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돼 퇴직금과 휴가 등 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노동부는 시종의 산업연수생을 점차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으로 신분을 바꿀 계획이지만,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존치되므로 일부 산업연수생들이 이날 현재 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팀은 “현재 결정을 존중하되, 구체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개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해 현재가 아닐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합헌 판단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지성수 현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뜻”이라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우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한겨레신문 2007. 08. 31.)

제목 : 인터넷 가입 외국인 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랜 세월 살고 있는 중국화교임. 인터넷 게임업체(고스톱 게임)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전화문의를 하니 외국인은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했음.
- ② 한국에 세금 다 내고 사는데 한국인이면 자유롭게 가입하는 인터넷에 가입을 못하는 것은 부당함. 진정하면 시정개선이 되는지 궁금함.

답변요지

- ① 인터넷 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외국인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면 국적에 의한 차별로 평등권침해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외국인도 한국 업체에 의하여 차별을 당한 경우 진정이 가능함을 설명함.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함.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외국인의 수영장 이용금지로 인한 차별

내담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영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로 근처의 수영장을 알아보았으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음.

제목 : 레스토랑의 흑인 차별

내담자가 이태원의 한 식당을 들어갔음.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자, 종업원은 신분증을 요구한 후, 아프리카인은 식당에서 받지 않는다고 했음. 내담자가 흑인이어서 그러냐고 하니, 당당하게 그렇다며 흑인은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 당시에 식당 안에는 외국인이 많았고 모두 백인이었음.

출신국가, 피부색,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권고」
2006. 08. 21.

삼청교육대 피해자중 외국인에 대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보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삼청보상법의 입법부작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삼청보상법에 외국인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제목 : 화교학교 학력 미인정 차별 2006. 08. 29.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7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화교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권고한다.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2006. 08. 22.

진정요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는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민간보호시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차별임

조치 : 각하

조치이유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20조의 보조금 규정에 따른 것이며
-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각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무료숙박 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쉼터와 같은 민간시설에 정부가 보조금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 다만, 향후 장기적 정책과제로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의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제1소위로 이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이용차별 2007. 05. 10.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 8.부터 한국에 취업차 거소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로, 장기 거주를 예상하고 국내 주택을 청약 받고자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청약 1순위 제한으로 2순위 청약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1순위인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청약 1순위 제한은 차별임.

결정요지

제39조 제1항(기각)제2호-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70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성차별

제목 : 성차별 문의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최근 국제결혼업체(○○○ 국제결혼)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전단지를 받아 보았는데, 전단지에 ○○나라 신부의 장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성차별이 아닌지 궁금함.

-아 래 -

- 가. 남편에게 절대 순종 남편을 하늘같이 여긴다.
 나. 외모가 한국 여성과 다름없다 순수하며 착하다.
 다. 사치하기 싫어하며 검소하다.
 라. 순종형 복종형이다 시키는 대로 뭐든지 잘한다.
 마. 60년대 우리 어머니 상이다.

답변요지

- ① 상기 내용은 현재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함.
 ② 현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있음을 내담자에게 전달하고 상담 종결함.

출신국가, 피부색,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기사

인종차별 국가로 낙인찍힌 한국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 차별적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순수혈통주의라는 편협한 틀에 갇혀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다른 인종,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다른 인종, 국가 출신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 교과서에 포함시키라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여성배우자 문제와 관련해 별거, 이혼 시 법
적 거주 지위를 보장하고 국제결혼 중개기관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았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이들 가정 자녀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다. 바야흐로 다민족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제도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처럼 내외
국민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할 수 도 있다. 의식과 제도가 사회변화와 동떨어진 데 따른 부담
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그런 만큼 유엔의 권고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선 외국인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 특히 갱신 불가능한 3년짜리 고용계약만을 허가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언젠가는 외국인 정주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와 노동력을 끌어들이
기 위한 제대로 된 이민정책도 이제 마련해야 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08. 21)

외국인 100만명 시대

중국인 44만 - 미국인 12만- 베트남인 6만
불법체류자 22만명 ... 10년 새 50% 늘어

24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보 분석과. 모니터에 전날 하루 동안 늘어난 체류 외국
인 수(입국 외국인 수에서 출국 외국인 수를 뺀 것)인 2087명을 기존의 수에 더하자 '1000254'라
는 숫자가 됐다. 사상 처음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최경식 정보분석과장은 “어제까지는 100만 명에서 1800여 명이 모자랐고 최근최근 통상 하루에
약400명의 체류 외국인 늘어나 100만 돌파에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어제 관광객 입국
이 많아 생각보다 당겨졌다”고 말했다.

◇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 외국인 100만254명에는 여행객·연수자는 물론 불법 체류자까지

들어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국적자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 수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4913만명)의 2%에 해당된다.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72만 497명이다. 나머지는 90일 이내의 체류만 허용된 단기 체류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4만 1334명(4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11만7938명-12%)과 베트남인(6만4464명-6%)이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인 중에는 15만 명 이상의 중국동포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증가세는 가파르다. 1997년에는 38만 여 명에 불과했다. 2005년 74만명을 돌파하더니 올해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10년 새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더욱 그 추세가 강해져 지난해 7월 말 (86만여명)부터 한 해 동안에만 약 15%가 늘어났다. 결혼 이민자는 2002년 3만4710명에서 10만4749명으로 5년 새 3배로 증가했다. 영웅 자격자는 이 기간에 6022명에서 1만5567명으로 2.5배 불어났다.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유엔이 최근 한국인의 지나친 순혈주의를 지적했듯이 제도와 관습의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 체류 22만명 = 100만명 중 22만5273명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있다. 10년 전(14만8000여명)에 비해 50%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그중 중국인이 약 10만 2000명(한국계는 3만7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인·베트남인·태국인 순으로 많다. 법무부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조치를 하고 있다. 추 본부장은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범칙금을 면제해 주거나 재입국은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로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등록 외국인=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비자)을 가지공 IT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한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 중 거주(통상 2년간)·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2만9000명이다. 결혼이민자도 이에 해당된다.

(중앙일보 2007. 08. 25.)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친구의 아들이 금년 ○○도 경찰청 순경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1.67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1.65미터임) 불합격되었음.
- ② 이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랍.

답변요지

- ① 사안의 경우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다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진정방법과 진정 접수 후의 절차를 안내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사관학교 응시자격에 있어 신장에 대한 차별

내담자의 아들은 키가 159 센티미터인데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고자 함. 그런데 응시 자격을 보니 남자는 164 센티미터, 여자는 159센티미터로 되어 있음. 158 센티미터이면 현역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남녀의 키를 구별해 놓았으며 159 센티미터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생각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위원회 권고

● **제목 :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침해 2005. 04. 11.**

진정요지

- [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육체적인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육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야 하는 바, 일괄적으로 키와 몸무게에 의해서 판별하는 것은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함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기사

경찰, 키·몸무게 제한 없앤다

내년 하반기 채용부터... 체력검사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찰 공채시험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채용 시 신체조건 폐지를 경〇찰이 3년 만에 수용한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관 채용 시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체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 경찰관 채용 때는 남성의 경우 키 167cm 이상·몸무게 57kg 이상, 여성은 키 157cm 이상·몸무게 47kg이상이어야만 경찰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조건 규정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종전 신체조건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가치로 여기는 경찰 활동에 부합된다고 판단, 이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신 업무 특성상 신체접촉이 많고

범인 체포 등 강인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 체력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범인 제압·사격술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좌우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측정을 추가하고, 현재 검사종목인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의 평가기준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 채용기준은 올해 안에 정비된 후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경찰직·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의 응시자격에서 신체조건을 폐지하라고 각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직과 철도 공안직, 소년보호직의 신체조건이 이미 폐지됐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 여건이 성숙지 않았다”며 당시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경찰직의 신체조건 폐지 결정으로 교도소 교정직 채용에만 제한조건이 남게 됐다. 김춘일 기자

(경향신문 2007.08.07.)

제목 : 용모에 의한 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자동차정비사로서 2006. 7. 16.부터 정비업체에 근무를 했는데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 해고 당했음.
- ② 내담자는 해고 당한 후 다른 정비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하자,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 ③ 내담자는 얼굴에 흉터 등이 없고 대머리인 편이나 위의 사항이 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요지

- ① 우리 위원회에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도록 설명함.
- ② 진정서 작성 시 차별받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안내함.

용모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용모에 의한 차별

내담자는 34세 여성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나 뚱뚱해서 채용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음. 2006. 9월 경 OO어린이집 교사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원장이 "나이가 45세이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함.

운전하는데 외모가 무슨 상관인지… 외모 중시 풍조 부채질 우려… “취업에 결정적 요인 아니다”

강신훈(46·대구 북구)씨는 ‘머리카락 없는 자의 설움’을 톡톡히 겪었다. 김씨는 4년 전에 차린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운전 분야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외모 탓이 컸다. 대형 음식점 주차 요원에도 지원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고민 끝에 3월 가발을 맞췄다.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신기하게도’ 곧바로 대구 시내 한 호텔의 주차요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는 ‘가발을 맞춘 뒤 젊어 보여서인지 곧바로 직장을 얻을 건 좋았지만 운전하는 데 도대체 외모가 무슨 상관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중·고령 구직자들의 외모 관리 열풍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의 외모 중시 풍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일부 젊은이들만의 고민으로 여겨져 온 외모 콤플렉스가 고령 구직자들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이 매우 씁쓸하다’며 ‘외모 가꾸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큼 돈 없는 사람은 결국 재취업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취업이 실패하는 모든 원인을 외모에서만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며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부분은 구직자의 ‘인물’이 아니라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취업 전문가는 ‘경력이나 사람의 됴됨이보다 외모가 더 중시되는 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재취업을 위해 자기 관리에 힘쓰는 구직자까지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직지원 서비스업체 제이엠커리어의 최나영 책임컨설턴트는 ‘면접 때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진진한 태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외모가 중요하다고 해서 결코 취업 성패의 결정적 요인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한국일보 2007.08.24.)

제목 : 강제 두발 단속

상담요지

- ① 2006. 10. 13. 07:50경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 선생이 머리가 조금 길다고 가위로 뒷머리, 옆머리를 강제로 잘랐음.
- ② “자를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했다는 이유로 뺨을 1대 맞았음. 당일 내담자뿐만 아니라 50명 정도의 학생이 머리가 잘렸고, 뺨도 맞았음.
- ③ 내담자는 교무실로 가서 ○○○ 선생을 만나 “학교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머리를 잘랐느냐?”면서 묻자, “머리 위가 좀 길다.”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음. 현재 학교 규정은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④ 다른 반에서는 선생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제두발단속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때린 적도 있음.
- ⑤ 강제이발을 중지시키고, 때리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함.

답변요지

학교 교사의 강제 이발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다른 반 학생이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맞은 사례가 있어, 내담자의 이름을 외부에 밝히지 말아달라고 재차 요구함)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용모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2005. 06. 27.

내용요지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는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고, C중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귀밑 5cm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고 있음

결정요지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 강제이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C중학교에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차별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제목 : 농어촌특별전형에서의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의 가정은 재혼가정으로 아들의 경우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며,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은지 오래되었음.
- ② 아들은 현재 고3으로 서울예전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예정이나 입학 서류의 경우 친권자 서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아들을 농어촌 학생으로 볼 수 없다며 지원 자격에 미달된다는 답변을 들음.
- ③ 아들은 초, 중, 고를 모두 농촌에서 보냈으며 내담자의 가정이 오랫동안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류뿐만 친권자 위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교육부에 문의하니 입학전형의 경우 학교에 자율권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답변요지

- ①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재혼가정 자녀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을 필요로 함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진정을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자 인터넷으로 진정하겠다고 하여 상담종결함.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가족수당 지급차별

내담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내담자의 직장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가족구성원 4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4인이 넘을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 함. 내담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원회에 문의하고자 함.

제목 : 차남에 대한 청약 자격 차별

내담자의 남편은 차남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현재 세대주는 시아버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음. 내담자의 남편은 실질적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 자격에서 제외됨. 장남의 경우 세대주가 부모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차남에게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제목 :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적 신문기사 제목

내담자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서 “사생아”라는 표현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생아와 관련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함. 내담자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언어사용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결정

● 제목 :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차별 2005. 11. 07.

진정요지

- [1]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이혼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인지 여부(적극)
-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이혼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현행 호적제도상 부모 이혼시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므로 이혼한 남성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게 되어 실질적 양육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채 이혼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임
-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주택의 특별공급에서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2006. 12. 1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성년 자녀 3명을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들과 동일하게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3명의 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와 달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인 바, 특별공급제도란 도시계획 공공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주, 세입자에게 보상되어지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효시로 사회정책상 필요성에 따라서 주택공급을 특별히 우선해서 받을 대상과 조건을 지정하는 것인 바, 그 담당 국가기관인 피진정인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와 목적, 사회정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특별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가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사회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성년의 자녀들을 둔 부모 역시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민법」상 성년자인 만20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청약 예·부금 가입이 가능하여 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가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차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제목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7년간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음. ○○병원에서는 5년이 지나면 승진을 시켜 주고 있음. 내담자의 경우에는 5년 되던 해에 임신을 하여 승진의 기회를 놓쳤음.
- ② 내담자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05. 10. 0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06. 10. 01. 복직했음. 06. 11. 26. 승진 공고가 있었는데 내담자는 승진자 명단에 없었음. 실장에게 문의한 바 “1년씩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킬 수 있느냐? 라고 주임이 이야기 했다.”라고 했음.
- ③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첫째 아이 때도 승진의 기회를 놓쳤는데 또 이번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함.

답변요지

- 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육아휴직을 사유로 한 재계약 거부 부당

내담자는 ○○유통에서 년 계약직 사무직으로 5~6년간 근무했음. 2004년 당시 내담자가 임신사실을 알리자 회사는 캐시근무직(3교대 근무로 서서 일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음)으로 발령을 냈고 경미한 업무배치전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했음. 내담자가 유산기로 입원치료를 받고 노동부에 진정하자 회사는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시켰음. 내담자가 2005. 9. 27. 출산하여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회사는 휴직중인 2006. 2. 28. 계약 만료일이라며 퇴사처리했음. 내담자가 이의제기하자 회사는 9. 27.까지 육아휴직으로 연장을 하더니 다시 또 계약만료를 이유로 통보했음. 내담자의 인사평정 점수가 낮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임. 회사 측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조처로 조사하여 내담자가 복직되기를 희망함.

제목 : 은행의 임신을 이유로 한 퇴직 강요

내담자는 OO은행의 직원으로 현재 임신 상태이며, 출산예정일이 8월이라 7월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함. 그런데 회사에서 5월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였고, 6월 초에는 내담자 자리의 책상과 컴퓨터 전 화기까지 모두 치워버렸음. 또한 현재는 명예퇴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음. 전에 임신했던 여직원들도 조기퇴직을 강요당했던 터라 내담자는 출산 후 계속 근무는 바라지도 못함.

제목 :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의 차별

내담자 부부는 시각장애인인데 부인은 OO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음. 부인은 33살로 결혼한 상태에서 입학을 했고 학교 측에서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부인은 임신 7개월인데 학교 측에서는 1년 동안 휴학을 하라고 함. 즉 출산 후 복학하라는 것임.

임신 ·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7. 03. 09.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건소에서 12년째 계약직 의사로 일하여 왔고 2006. 11. 9. 계약 만료되어 2006. 9. 26. 신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었음. 진정인은 지난 12년 동안 큰 무리없이 의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던 바, 이번 불합격은 진정인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신규채용에 응시하였고 진정인을 합격시킬 경우 산후휴가 등을 주어야 하는 부담때문에 진정인을 불합격 시킨 것으로서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임.

판단

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물론「UN 여성차별철폐협약」제11조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등은 임신이나 출산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또는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이므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곧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고 모성 기능은 사회의 인력을 재생산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산후휴가의 부담 등 일정 기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이지 임신부 개인에게 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만약 임신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면접에서의 질문에 의한 차별금지와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자신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임신을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진정인은 임신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하여 진정인이 평점을 낮게 받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용차별이 이루어지는 가장 주요한 최초의 관문은 채용시 서류심사와 면접의 과정인데,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 기한 특정그룹의 배제나 불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어 나타나 그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용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사후적인 통계로만 그 경향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서구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면접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하게 아예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체를 차별대우라고 보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만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모집, 선발, 채용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실무지침'에서 응시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기업주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해당응시자에게 어떠한 특정 사유, 예를 들어 '장애'나 '18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양육여부' 또는 '키', '몸무게', 또는 '임신'이나 '출산계획' 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고용 차별을 다루는 사건의 경우 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응시자의 면접 결과를 놓고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응시자의 성, 장애, 병력, 외모 등이 고용 상 차별적 요소로 작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면접 위원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에서 보건소장의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차별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명백한 차별의 의도가 있었음을 담고 있는 경우이므로 피진정인이 달리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피진정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진정인이 그 사유로 불합격 처리 되었다는 것을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은 진정인이 임신부로서 곧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OO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방송사의 혼인을 이유로 한 해고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방송에서 5년간 아나운서로 근무했음. 결혼을 하자 편성제작국장이 사직서 양식을 사전에 준비하여 “결혼을 했으니 퇴직을 하면 프리랜서로 일하도록 해주겠다, 계약직 여직원의 경우 결혼하면 아예 다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본 따면 안되니까 사표를 쓰라”며 강제퇴직을 종용했음. 내담자는 회사의 강요로 2006. 6. 16. 퇴직서를 쓸 수 밖에 없었음. ○○방송의 경우 130여 명의 직원 중 정규직 여직원은 3명밖에 되지 않으며 계약직 여직원의 경우 결혼을 하면 모두 퇴직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차별이 심한 구조임.
- ② 지방노동위원회와 변호사 상담 후, 진정여부를 결정하겠음.

답변요지

- ①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하여 퇴직을 종용했다면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평등권침해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에게 우리 위원회의 진정접수의 절차 및 권리구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6. 12. 22.

진정요지

○○방송에서는 결혼한 계약직 여직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였으며 모두 퇴사처리를 하였음. 이에 부당한 해고처분을 못하게 인권위에서 권고를 해주길 원함.

주문

피진정인에게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을 개선하고 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다.

판단

여성에게 대해서만 결혼을 퇴직조건으로 채용하거나 결혼 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가 결혼을 함에 따라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 이어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사직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퇴직 관행에 따라 진정인이 퇴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회사의 인사규정은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모두 적용되는데 인사규정에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상사인 편성팀장, 편성제작국장, 보도국장도 진정인에게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계약직을 포기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의 자유로움 외에도 경제적인 이익이 커야 함에도 진정인의 경우 2005년도 급여총액이 35,289,770원인데 반하여 전속 프리랜서가 된 후 받은 주당 출연료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3,800,000원으로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바, 결혼 후 주택마련·양육 등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 등 재테크를 준비해야 할 입장인 진정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출퇴근의 자유로움만 향유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회사가 계약직 여직원의 경우 결혼을 하면 퇴사하게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남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 나 여성은 기혼자가 한 명도 없는 내부 고용현황, 근무 중인 계약직 여직원 6명 중 4명과 정규직 여직원 3명 중 2명, 퇴직한 여직원 중 1명이 결혼하면 퇴사하는 관행이 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 하였다기 보다는 피진정회사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진정인이 피진정회사를 퇴사하고 계약직에서 전속 프리랜서로 전환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피진정회사의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관행은 여성에 한하여 결혼을 이유로 다른 남성들과 동등하게 고용될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 할 것이다.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혼인여부에 따른 고용과정에서의 차별

내담자는 현재 OO금고(△△구 소재)에서 계약직으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음. 입사 당시 회사에서는 근무성적에 따라 2년 이후에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내담자가 기혼이라는 이유로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고 있음. 2005년 8월경 회사 전무와 영업지원팀 부장은 내담자와 동료직원(OOO, 4년근무, 기혼)을 불러서 “아줌마니깐 정직원으로 전환해 줄 수 없다. 대신 연봉을 3백만원 인상시켜 주겠다”고 하였음. 당시 내담자는 계속 항의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까봐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내담자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미혼 직원이 3명이 정직원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고용과정에서의 차별을 시정하여 주길 원함.

제목 : 결혼을 이유로 한 퇴직 권고

내담자는 물류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계약 당시 12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사측으로부터 약속받았으나, 내담자가 11월 결혼 예정이라고 하자, 계약 만료 시점인 2007. 8. 1.부터 11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고 퇴직하라는 말을 들음. 또한 사측은 “우리 회사는 결혼한 여자는 안 쓴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함. 사측의 이러한 발언을 녹음해두었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전화한 것임.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사상 ·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공기업의 면접을 앞둔 정당가입여부 조사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당 당원으로, 공기업인 공사채용에 응시하여 면접을 며칠 앞두고 있음. 그런데 정당가입여부를 제출하라고 함.
- ② 면접을 앞두고 정당가입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며, 내담자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함.

답변요지

- ① 공기업의 사생활 침해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함.
- ② 다만 공기업의 면접을 앞둔 정당가입여부 조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기업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③ 내담자가 좀더 생각해보고 진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06년 ○○시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10급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교육까지 받았음. 그런데 신원조회에서 05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할 수 없다고 했음.

답변요지

- 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결격사유로 알고 있음을 안내함.
- ③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안내함.
- ④ 내담자는 우리 위원회에 진정 후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겠다고 함.

위 상담 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조무직 합격자의 합격취소 2006. 11. 13.

진정요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기능직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연수교육을 마치고 임용대기 중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부적격자로 합격을 취소함

판단

- 1)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피진정인의 위임 규정등을 살펴보더라도 합격자에 한 취소규정이 없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임.

2)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 대한 합격취소 사유로서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들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 기능직 조무직렬이 보안업무에 해당하거나, 조무직렬에 합격한 자들이 근무하게 될 학교시설이 보안시설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원조회회보사항 중 특이사항 등 기재사항에 보안과 관련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등 진정인들과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업수 수행’과 관련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존재해야한다고 판단됨.

*참고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02-11014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국가정보원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안전보장업무 및 보안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조사 또한 보안을 위하여 공무원임용예정자 등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관계공무원의 신규임용 자체의 배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근무하게 될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규정하고 있는 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진정인들이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등에 근거한 신원조회 부적격을 이유로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전과를 이유로 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검토의견 : 권고

적용이유 : 피진정인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진정인들의 합격취소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의 기능직 시험에 있어 합격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경찰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총기 불허가

내담자는 32세로 수업을 하고자 수업면허를 취득하였음.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수업면허를 가지고 경찰서에 총기허가를 받아야 함. 수업면허를 취득하기 전, 내담자는 관할 경찰서에 총기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경찰서 측은 내담자가 조직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있어 내규에 의해 총기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함. 내담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과오로 조직폭력에 가담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 하지만 현재는 조직폭력과 무관하며 경찰서에서도 이를 알고 있음. 그럼에도 약 10년 전 전과를 이유로 총기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부당함. OO지방경찰청에 해당 사안을 문의한 뒤, 총기허가가 안될 경우 진정하겠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소방공무원에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2007. 04. 11.

진정요지

진정인이 울산광역시지방소방공무원시험 1차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2차 체력검사, 3차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으나, 고등학교시절 집행유예가 있었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됨

결정요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의 여부, 전문지식의 유무 등에 대한 그 적부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정인들이 필기시험에서 높은 순위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필기시험의 합격 또는 고득점 취득이 곧 최종시험의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접 위원들이 재량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전과 경력자라 하더라도 본 건과 동일 시험 또는 동일 분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수 있다는 점, 면접 위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전과 경력만을 평가 자료로 삼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판단할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소속 면접위원들이 진정인들에 대하여 전과를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검토의견 : 기각

적용이유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제목 :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시설 입소 거부

상담요지

- ①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내담자가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입소할 수 없다고 함. 요즘 기업체에서도 고용상 불이익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너무한 것 같음.

답변요지

- ① 위원회의 업무와 조사대상에 대해 설명함. 병력을 이유로 재화와 용역 이용에서의 차별을 당했다면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에게 진정의사를 묻자 지금 당장은 진정의사가 없다고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진정 하겠다고 하여 상담으로 종결함.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불합격

내담자는 부모에 의해 “수직 감염”된 B형간염 보균자임. 얼마전 공립중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 지도교사로 지원하였으나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후 학교에서 채용을 거부당함. 병원 측은 내담자가 “간염 보균자”라고 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이 어렵겠다는 식으로 말함. 내담자는 학교 측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답답한 마음에 전화한 것임.

제목 : 병력에 의한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내담자는 O나라 출신의 유학생으로 O시의 한 대학에 2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하였음. 2006년 3월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았고, 지난 9월 23일 한국에 도착하였음. 도착 다음인 9월 24일 일요일,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고 치료를 받는 과정을 거쳤음. 이 사건 이후 학교는 내담자의 입학과 장학금 지불을 거부한 채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종용하고 있음. 내담자는 학교에서 쫓겨난 후 25일 귀국할 수 밖에 없었으나 10월 4일 다시 돌아왔음. 내담자는 현재 학교 측의 성실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호스텔에 머물고 있으며 곧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태인데, 1월에 전화로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어는 내담자의 약점(weakness)이 무엇이나고 물었고 내담자는 다른 점들과 함께, 간질을 앓고 있는 것도 밝혔음. 당시 인터뷰어는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내담자가 처한 상황(condition)일 뿐이라고 하였음. 학교 측에서는 이전에 병력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어떠한 설명조차 없었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큰 무리가 없음에도, 이러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것은 부당하며 인권위의 도움을 얻고자 함.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활동성 B형 간염환자에 대한 채용차별 2007. 08. 02.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5. 14. 경남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로부터 경력사원으로 합격되어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활동성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취소되었음.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함

판단

가. 「고용정책기본법」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전염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채용에서 타락시킨 사유는 활동성B형간염보균자는 전염성이 높다는 것과 조선업의 업무특성상 B형간염이 간기능 저하, 만성피로 및 간질환으로 전이되어 진정인의 업무능력 저하 및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간학회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의할 때 B형간염은 모자감염(출산전후 모성으로부터 신생아에게로 전염), 성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고 타액이나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고 있으며 활동성B형간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와같이 B형간염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전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도 B형간염 환자를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 10. 5. 이 규정을 개정하여 B형간염 환자를 제외시켰음.

대한간학회의 의견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B형간염보균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발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기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반인들이 활동성이면 감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감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활동성 여부가 간기능의 손상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판례는 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 및 업무적합성 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이며(서울고등법원 2004누1379), 대법원은 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건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04두14441호 판결).

노동부는 2002. 2. 'B형간염 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을 만들어 법률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B형간염 환자가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 10. 22. 'B형간염보균자는 전염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는 현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 유무와 상관없이 B형간염보균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전염 및 업무수행 시 건강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B형간염보균자를 채용에서 탈락시킨 진정사건에서 이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권고한 사실이 있음[06진차142(2006. 12. 22), 06진차324(2007. 2. 20), 06진차392(2007. 3. 9)].

위 사항들과 함께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진정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타난 간기능 수치가 피진정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진정인을 정밀검진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진정인은 만성 B형간염보균자이지만 현재 간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동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 진정인이 피진정회사에 지원하기 전 8년 동안 다른 조선회사에서 피진정회사에 지원한 부분과 같은 부분인 선각부분에서 일을 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며 B형간염보균자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활동성B형간염을 잘못 이해하여 진정인을 활동성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켰는바,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검토의견 : 인용

이유 :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단지 진정인을 채용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됨.

권고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병력과 관련한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생략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바. 풍진
나. 백일해	사. 폴리오
다. 파상풍	아. B형간염
라. 홍역	자. 일본뇌염
마. 유행성이하선염	차. 수두

제30조(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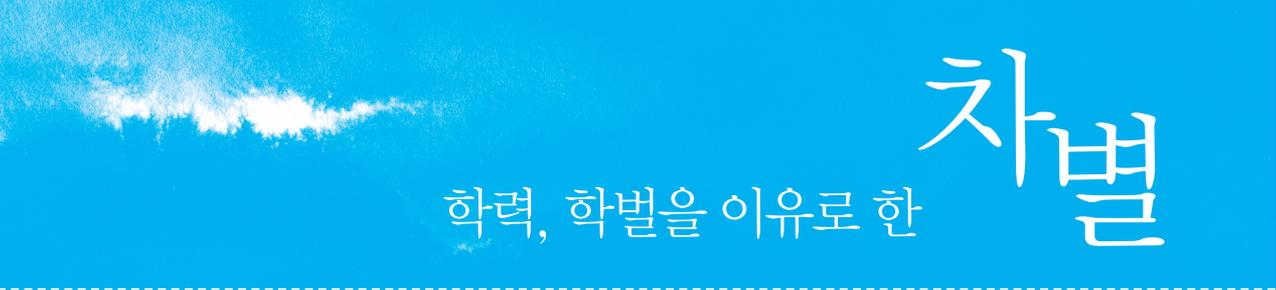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호텔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차별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제목 : 공단의 자격증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상담요지

- ① 현재 ○○공단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의 경우 응시자격을 4년제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 ② 관련 전공여부를 보지 않고 학력으로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함.
- ③ 다른 자격증의 경우 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없었는데 정보처리기사만 학력제한을 두고 있음.

답변요지

- ① 공단의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진정방법을 문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접수방법을 안내하고, 진정사건처리과정과 구제권한을 설명함.

학벌 ·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독학사에 대한 차별

내담자의 아들은 ○○대학교 공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그동안 독학사 제도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이번 학기가 지나면 조기졸업을 할 예정이며, 이미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90% 이상을 취득한 상태임. 최근 아들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MEET 시험에 응시를 했다가 정원의 150%를 선발하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격요건인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이는 독학사 제도에 의한 졸업예정자를 일반 졸업예정자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생각함.

제목 : 학력에 의한 차별

내담자는 OO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했는데 생산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회사 내규에는 생산직에는 전문대 졸업 이하의 학력자만이 갈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는 학력에 의한 역차별로 생각 됨.

제목 :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

내담자는 OO시에서 채용하는 통역직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영어통역의 경우 영문학과, 영어학과 졸업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있음

학력 · 학벌에 의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학력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2007. 04. 11.

진정요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전공학과와 무관하게 정보처리 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은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과 구제를 구한다는 내용임.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함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각하 결정

● 제목 : 제목: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6. 05. 29.

진정요지

공무원 9급시험시에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공무원 7급시험시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보처리기능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차별임

조치 : 각하

적용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0호

이유

진정인의 진정취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10(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2003헌마30 판결로 동 사안을 기각결정 하였음. 따라서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들에 비추어서도(05진차122사건 등 참조)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 됨.

학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기각 결정

● 제목 : 산업기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제한 2007. 07. 13.

진정요지

진정인은 자동차 종목분야 산업기사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자로, 현행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검정은 응시자격 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응시할 수 없는 바, 개인적으로 실력을 갖춘 자라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응시자격 제한을 철폐해 주기 바람.

판단

진정인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검정의 응시자격을 철폐하여 누구라도 산업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기를 원하는 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응시자격을 두는 목적과 현행 산업기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내용이 목적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지,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가. 먼저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응시자격을 두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한해 약 200만명(기술?기능분야)이 응시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검정내용과 방법을 정교하게 마련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1회의 필기 및 실기시험, 평균 3~6시간의 검정시간으로는 응시자의 지식과 실기능력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학교 및 산업현장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실천적 능력으로서의 노하우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자격검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자격 응시자가 응시하기 전에 이수한 각종 교육훈련, 산업현장에서의 근무경력 그리고 관련 자격의 취득을 응시요건으로 설정하여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임. 이는 기술자력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강화하고, 각 등급 단계별로 평생경력경로를 제시하여 기술자력의 등급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국가기술자격 근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다음으로 현행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학력의 경우 개개인의 교육훈련수준은 기술과 능력의 정형화된 대표적인 측정수단으로 널리 인정되므로 1차적 검증의 수단으로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또한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학력으로 관련학과의 경우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와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 설정하고, 비관련학과의 경우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는 각각 1년 또는 6개월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비록 비관련학과라 하더라도 수학기간이 4년임을 고려할 때 각 자격 간에 적절한 비례가 인정됨.

- 중 략 -

이상을 살펴볼 때, 현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해당 기술자격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췄는지의 여부에 대한 1차적 검증단계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도 학력만을 기준으로 하였다거나 각 응시자격간에 비례를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더 나아가 하위 등급의 자격으로부터 상위 등급의 자격을 단계별로 취득하면서 자격 취득자가 체계적인 학습과 현장경험을 쌓도록 하여 평생경력경로 제시를 통해 평생학습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격제도 등급체계의 목적에 비춰보아도 합리적이라 판단됨.

검토의견 : 기각

이유

조사결과 국가기술자격 제도상에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두어 일정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을 지원요건으로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07 인권상담 사례집

성희롱

*All Humanrights
for All*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현행법상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1995년 12월30일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3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성희롱을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은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5년 6월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출범하게 되면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로 되어 있었던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고 성희롱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명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1) 육체적 행위

- 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성과 관련된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직장 내 성희롱

제목 : 성희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시 ○○구 ○○동사무소 9급 공무원임.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상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
- ② 2006. 9월초 경 △△동사무소 직원 ○○○의 생일 파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함. ○○사무소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가 내담자에게 입술에 뽀뽀를 함.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내담자에게 “좋겠다”라고 까지 함. 당시 분위기 때문에 내담자는 화를 내지 못함.
- ③ 2006. 9. 26. 저녁 술자리에서 ○○○가 내담자에게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 봄. 이후 내담자의 가슴을 만짐.
- ④ 내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말을 전달하였으나 ○○○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냄.
- ⑤ ○○○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와주길 바라지만 ○○가 내담자가 근무하는 동사무소 상사와 친분이 두터워 오히려 내담자에게 불이익 또는 이상한 소문이 날까 걱정이 됨.

답변요지

- ① 직장 업무상 가진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우리 위원회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가 불이익, 사건이 공개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여 우리 위원회 성차별팀장에게 성희롱 사건의 조사방법 등을 문의하여 안내 함.
- ③ 진정접수 원하여 진정접수 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2006.12.13.)**합의내용 :**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문서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2. 진정인 피진정인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함.
3. 진정내용 뿐만 아니라 본 합의내용이 피진정인에 의하여 외부로 발설될 경우 본 합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피진정인이 지기로 함.

제목 :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자동차관련업소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함.
- ②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담자에게 문자를 보내오고, 계속적으로 성적수치감을 느끼는 얘기를 하며 내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함.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남편의 휴대전화에 음성을 남기는 등 계속적으로 내담자를 괴롭힘.
- ③ 가해자를 매장시키고 싶음.

답변요지

- ① 내담자에게 인권위의 조사대상 등 업무를 안내하고,
- ② 진정접수절차 및 조사절차를 설명함.
- ③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 접수하겠다고 하여 종결함.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2007. 06. 22.)

권고내용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당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며,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직장을 사직하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사례 83

파견지 상사의 성희롱

제목 :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주식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했음. 근무지에 3명의 상사가 있으며 성적비하 발언을 많이 하여 성적굴욕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음. ○○○ 본부장은 “너는 사장의 첩이다, 발정난 암캐다, 사장 어깨를 주무르고 들어왔다”는 말을 하고, △△△ 사장은 숙소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덮치려고 한 적이 있으며 “덮치려고 했는데 오늘은 참았다, 니가 뭐 볼게 있다고 문을 잠갔냐”고 했음. □□□ 차장은 “너 가슴 탕탕하다 야, 네가 내 꿈에 나왔다 이 혼할건데 나랑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하고 성적 스킨십을 했음.
- ② 수차례 내담자가 상사에게 경고하고 이의제기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06. 9.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성희롱 사유로 하여 파견지에 못 가겠다고 말했으나 합의를 보라고만 했음. 내담자는 파견이 보류되었다가 사퇴를 종용받아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임.
- ③ 회사에서 성희롱 사실내용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당함과 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랍.

답변요지

- ① 직장내 상사의 성적 언동에 의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회사가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성희롱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책임이 있음을 설명함.
- ② 내담자는 인터넷으로 진정할 예정임.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2007.03.09.)

합의 내용

- 피진정인들은,
 - 본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한다.
- OO(주)는,
 - 본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한 정신적 위자로 금 삼백만원을 지급한다.
- 진정인은,
 -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피진정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양당사자들은,
 - 향후 본 건 내용을 재론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유사 사례

제목 : 병원 원장의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1. 내담자는 개인병원 간호사로 근무한지 1달되었음. 원장(69세)이 평소에도 간호사들의 몸을 쿡쿡 찌르고 만지는 것을 좋아하며 며칠 전 내담자의 엉덩이를 만지더니 2007. 5. 22. 내담자의 가슴을 만졌음. 내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니 장난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음. 아들인 부원장에게 얘기했으나 화를 풀라고만 하고 해결해 주지 않고 있음. 다른 간호사들도 원장에게 모두 성희롱을 당하고 있으며 원장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현재의 대책임.
2. 내담자는 원장이 자주 친근감을 보이고 말을 걸려고 하여 소름이 끼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제목 : 회사 상사 및 협력업체 여사장의 성희롱 등

내담자는 대표이사 및 팀장, 자문회사인 협력업체 여사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강요당함. 회사의 상사들은 노래방에서 여사장과 강제로 부르스를 추게 하였고, 내담자가 몸을 빼자 여사장은 “나는 이렇게 순진한 남자가 좋다.”고 함. 또한 대표이사는 “사장님을 끝까지 책임져라. 대신 내일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등 성적인 접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함. 노동부에 전화하니 임금과 관련된 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는 OO시 소재 OO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음. 내담자는 체구가 작는데 상사들이 폭언과 폭행(머리 때리고 발로 차기)을 일삼고 있음. 내담자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OOO주임과 △△△부조장이 3~4차례 뒤에서 내담자를 껴안듯이 하며, 내담자의 성기를 만졌음. 또한 내담자가 지나갈 때면 성기를 툭툭 치고 있음. 내담자는 기분이 나쁜데 상사들은 웃으면서 장난으로 만지고 있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음.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 제목 :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2007. 04. 11.

진정요지

- 진정인은 OO공사 OO지사 고객센터(비정규직)에 팀장으로 2005. 5.부터 2007. 1.까지 근무하였음. 피진정인은 OO공사 OO지사의 총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성희롱을 해 왔음.
- 피진정인은 불필요한 회식을 잡아 진정인의 참여를 강요하고 회식 중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끌어안으려고 했음. 진정인이 회식 중 화장실에 가게 되면 뒤에서 따라와서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를 하기도 했음. 업무로 출장을 함께 가게 되면 다른 동료들이 있건 없건 항상 진정인 옆자리로 옮겨 앉아 추근덕 거렸음. 또한 피진정인은 출장이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진정인을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적도 있으며 진정인이 야근을 하고 있을 때면 술을 먹고 사무실로 찾아 와서 진정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탈의실 등에 숨어 있는 진정인을 찾아내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하였음.
- 피진정인은 본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OO시로 옮긴 이후에도 진정인에게 지속적인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그러면서도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음.
- 위 과정에서 진정인은 남편과 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사표를 냈음. 현재는 잠도 자지 못하고 생리가 중단되는 등 심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음.

합의 내용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진정인은 향후 피진정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함.

성희롱 관련 기사

“여 → 남 호적상 성별 전환자 징병검사 수치심 안느끼게”

인권위,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때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적상 성별을 바꾼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월 “법원 결정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충분히 냈지

만 징병 전담의사가 바지를 내리게 해 신체 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징병신체검사를 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일반 병역의무자들과 달리 특수한 병력 및 신체를 가진 진정인에게 이 는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거쳤으리라 예상되는 점 △호적상 성별을 정정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다른 병역 의무자들은 법원결정문, 진단서 등을 참조해 판정한 점 등을 볼 때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까지 김씨를 포함해 성별전환을 한 4명이 징병신체검사를 받았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한겨레 2007.08.21.)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학교 내 성희롱

제목 : 교수의 성희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대 ○○과를 졸업 후 동대학원에 입학하여 1학년을 다니고 07. 03. 28. 휴학을 한 상태임.
- ② 내담자는 학부 4학년 때 ○○○ 교수(이하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음. 가해자는 2005년 △△프로젝트로 일본 여행 시 여자 3명이 있는 호텔 방에 들어와서 술을 권하며, 자신이 앞으로 3인의 지도교수라고 하면서 온천 후 가운데 걸치고 있는 등을 더듬고 껴안았음. 모두가 싫어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다 아빠 같은 마음인데 뭘....”이라며 계속해서 스킨십을 강행했음.
- ③ 가해자는 연구실에서 어깨가 걸린다는 이유로 옆에 와서 어깨를 주무르라고 했음. 평소 옷차림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하는 등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자주 언급했음. 남자친구와의 잠자리에 대한 질문을 들만 있는 자리에서 자주 언급했음
- ④ 06. 03. 가해자는 회식 후 다른 팀원들에게 2차를 가자고 했으나 모두 안 가겠다고 했음. 그러자 가해자는 내담자에게 컷속말로 “그럼 너만 나랑 갈래? 우리 갈래? 카페에서 기다릴게...” 등의 성희롱을 하여 내담자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음. 가해자는 이튿날 혼자 그 카페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잤다는 이야기를 했음.
- ⑤ 가해자는 임금 횡령, 연구비 횡령, 뇌물 요구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좀더 지켜 볼 예정임.
- ⑥ 위의 성희롱을 조사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 원함.

답변요지

- ① 교수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함.

학교 내 성희롱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교수의 성희롱

00대 00학과 교수인 피진정인은 2004년과 2005년 2학기 교수학습이론 수업 중 “방금 발표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교태스러워 좋았다.,” “여학생들은 발표할 때 빨간색 짧은 스커트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음. 또한, 2005년과 2006년 1학기 교육과정 수업 중에는 “나에게 면담하러 올 때는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와라.”라고 말하였음. 이는 수업에 참여한 다수의 여학생들에 대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임.

제목 : 교장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공립 00중학교 교장이 6~7명의 남학생을 상대로 하여 성희롱을 했음. 교장은 여성적인 사람인데 가정 환경이 불우한 학생만을 골라 교장실로 유인하거나 자동차에 태운 후 성기를 만졌음. 또한 교장이 한 학생에게는 한문시험 채점을 해야 한다며 차에 태워 일산의 자택에까지 데려갔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려고 했음. 졸업생 중에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며 교장은 이전에 부임했을 때도 성희롱을 한 사례가 있었음. 내담자는 4명의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당했다는 자료를 받았으며, 남성교사들은 근평을 이유로 하여 교장편을 들 우려가 있어 여교사들끼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제목 : 교사의 성희롱

내담자는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중임. 여교사가 남학생(이하 피해자)을 지속적으로 쓰다듬고 있는데 피해자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했음. 담임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에게 위의 사실을 알렸고, 교감 선생님은 보건교사인 내담자에게 상담해 왔음. 여교사는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를 쓰다듬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전화했음.

학교 내 성희롱 관련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 제목 : 대학 강사의 성희롱 2006. 05. 08.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수업관련 문의로 저녁과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여관에 데려가는 행위를 하였음.

조사과정 및 합의내용

- 2006. 3. 24. 피해자 조사에서 피진정인의 사과와 강사직 사퇴를 원하였고, 2006. 3. 31. 피진정인 조사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함.
- 2006. 4. 21. 진정인,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진정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나 “피진정인이 1)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개사과를 하였고,

- 2) 2006. 9.1.부터 향후 10년 동안 일체의 교직에 근무하지 않으며,
- 3) 합의를 위반할시 위약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실을 공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정인과 그 가족은 1) 합의이후 민·형사상 소 및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학교 내 성희롱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 제목 : OO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2007. 03. 28.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OO대학교 직원으로 전국대학노동조합원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파업을 벌이던 중 피진정으로부터 “가슴 보여, 거거나 달고 다니지?” “예쁜 것하고 이야기하니까 말도 잘 나오네” 라고 하며 진정인들을 성희롱하였음. 이에 엄격한 처리를 원함.

판단

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파업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파업이란 노동관계 당사자들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동참한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나 파업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에 드러나듯이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관련 조항에 명시된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무관하다고 판단됨.

나. 피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성희롱적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

-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전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요지와 같은 언동이 있었다고 판단됨.
 - 1) 진정인이 제출한 당시 동영상에는 피진정인이 앉고 있는 진정인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웃으면서 “가슴이 앞에 사람 보이니까 달아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고” 등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 점.
 - 2) 사건 당시 진정인과 함께 있던 참고인 000, △△△은 피진정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하고 참고인 □□□과 ◇◇◇는 사건 발생 이후 진정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한 점.
 - 3)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은 보직교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고 위 동영상에는 피진정인 주변에 4~5명의 보직교수가 있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이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다가 웃으면서 여수선한 상황에서 그 보직교수들이 등을 돌리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등 피진정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피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

-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증인이 있고 피진정인 언동이 동영상에 담겨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다고 판단됨.

다.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교직원과 교수의 관계이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조 측의 노조 전임자와 사측의 학생처장의 관계로서, 노사간의 대립으로 팽팽히 긴장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노조 측의 진정인에게 ‘가슴을 가리키며 가슴이 보이니 잘 닫고 다니라’고 한 행위는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 실제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동료와 보직교수들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강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이후 피진정인의 손가락질, 말투 등이 계속 생각나고 자신이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바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바보 같았다는 자책을 하게 되어 잠을 자지 못하며, 진정인이 임시직이면서 노조 전임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성희롱적 언동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괴로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것임.

검토의견 : 권고

권고내용

-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당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며,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인정되는 바,
 - 1)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인 OO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인권위에 보고할 것을,
 - 2) 피진정인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진정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함.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비신체적 성희롱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상담요지

- ① 내담자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음. 며칠 전 직원과 학부모 위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2차를 가차고 하면서 룸싸롱에 전화를 했음. 상사는 여직원들에게 “너희들 냄비를 아냐? 왜 냄비가 전화를 안받지” 라고 했음. 통화가 되자 상사는 상대방에게 “몇 명 목욕을 깨끗이 시켜서 준비시키고, 뒷물도 깨끗이 하고 있어라” 고 했음. 내담자는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며, 이후 잠도 잘 오지 않고 있음.
- ② 내담자는 2월 28일 퇴직한 이후에 진정여부를 고려할 생각임.

답변요지

- ① 업무관련 회식자리에서 성적 언동에 의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설명함.
- ②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의 효과와 권리구제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함.

비신체적 성희롱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OO시장의 성희롱

내담자는 OO시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음. 06. 07. 11. OO시장은 여성통장들을 위로하는 식사 자리에서 “가정이 화목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활발하고 원만한 성생활을 위하여 건배.”라고 했음. 그 자리에 참석했던 통장 중에 몇 명은 그 소리에 여성으로서 모멸감, 수치감을 느꼈다고 함.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전화를 했음.

제목 : 산부인과 의사의 성희롱

피해자는 2006. 7. 27. 00시 00분 00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함. 피해자는 마취 상태였으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수술 도중 담당 의사가 동료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네.” “이혼했나봐.” “보호자가 없어도 병원비만 내면 되지.” “네가 데리고 살아라.” 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낌. 내담자가 이 사실을 담당의사인 원장에게 항의하자 원장은 부인함.

제목 : 상사의 성희롱

내담자가 다니는 지자체의 남자 상사는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왜 째지 달린 것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러느냐?”라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을 함.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너 처녀냐?”는 등의 질문을 일삼는 등 성희롱을 하고 있어 위원회에 전화함.

비신체적 성희롱 관련 진정의 위원회 권고 결정● **제목 : 성희롱 2006. 12. 26.****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5. 5. ~ 5. 22.기간 00시 소재 00동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주유소 총무인 피진정인은 다른 직원에게 진정인을 일컬어 “노래방 데리고 가서 콜라에다 약을 타 어떻게 해보지 왜 그냥 보냈냐”, “거시기에다 대고 자기 손으로 그것 한번 해보지 않았겠느냐”, “그 여자는 내꺼니깐 건들지 마라” 등 말을 하고 영업 종료 후 진정인에게 술시중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하였음

권고내용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

판단

- 1)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 발생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00동 주유소 주유원으로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은 주유소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본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5호에 정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2)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여부: ○ 피진정인은 자신의 발언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000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듣지 않은 말을 거짓으로 지어 낼 필요성이 없는 점, △△△는 00주유소에서부터 피진정인과 숙식을 같이하고 있고, 함께 현재의 주유소로 옮겨 피진정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그 여자는 내 꺼니깐 건들지 말아라”, “콜라에다가 약을 타서 어떻게 한번 해보지 그랬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

- 위의 언동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불쾌감을 주는 저급한 표현으로, 특히 '콜라에다가 약을 타서..'라는 언동은 여성을 저항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성적인 관계를 가져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합리적 여성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이러한 언동이 당사자인 진정인에게 전달되었다면 성적 굴욕감 및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 술을 마시자거나, 술을 사와서 시중을 들라고 한 이야기는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결론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내 꺼니까 건들지 말아라”, “콜라에다가 약을 타서 어떻게 한 번 해보지 그랬냐”고 한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정한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제목 : 성희롱 2007. 01. 31.

진정요지

진정인의 여동생인 피해자는 직장 내 사장으로 부터 “니가 나의 이상형이다. 내가 결혼을 안했으면 너와 결혼했을 것이다, 니 손을 잡는데 10만원, 뽀뽀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은 하면서 웃었으며, 니가 우리 아들 새엄마를 해도 되는데 라는 등 상습적인 성적 모멸감과 수치감을 유발하는 언어로 성희롱을 하였음.

권고내용

-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
-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통보할 것을 권고

비신체적 성희롱 관련 진정의 위원회 합의 결정

● 제목 : 성희롱 2006. 12. 22.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상 진정인의 컴퓨터에 까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환경을 조성함.

합의내용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피진정인은 사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한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등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3. 향후 양 당사자는 본 건 내용을 재론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2007 인권상담사례집 · 2007 인권상담사례집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제목 : 목욕봉사과정에서의 성희롱

상담요지

- ① 2006. 11. 15. 10:00 ○○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남자 3명, 여자3명이 내담자의 집으로 이동목욕봉사를 나왔음. 욕조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는데, 욕조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매우 높았음.
- ② 치마를 벗고, 속옷만 입고 남자들이 내담자를 들어올린다고 하여 성인이어서 못한다고 하였음. 받침대를 빼고 여자들이 목욕을 시키면 안되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함. 다른 장애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였음.
- ③ “그러면, 감정싸움 할 필요없이 우리는 철수하면 된다.”고 하면서, 더 필요한 사람 하면 되지, 덜 답답해서 그렇다는 투로 얘기함. 내담자가 계속 거부하니 그냥 철수 하였음.
- ④ 다른 장애인들도 수치심을 느끼지만 봉사활동이어서 거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관행은 고쳐져야 함. 위원회에서 도와주길 원함.

답변요지

- ① 자원봉사자들이 한 언행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내담자는 장애인 이동목욕봉사는 의미 있는 활동이므로 먼저 단체(○○시 장애인총연합회)에 건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함. 그 결과를 보고 진정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장애인, 목욕하고 싶으면 수치심 견뎌라(?)

남자가 알몸 女장애인 수발...항의하면 “장애인이 무슨...” 타박

[2007-04-28 15:23:32]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를 돕기 위한 이동차량 목욕서비스가 남녀구분 없이 이뤄지면서 많은 장애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목욕봉사가 아쉬운 장애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치심을 감수하고 있다.

중증장애를 앓는 서 모(34) 여인은 최근 A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서비스를 신청했다. 미혼인 서 씨가 모르는 사람 5~6명에게 목욕을 받으려 한 결정은 쉽지 않은 것. 하지만 알몸 상태인 서 씨를 욕조에 옮기는 작업은 생면부지 남자 운전기사가 맡았다. 화들짝 놀란 서씨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을 욕조에 옮겨 줄 것을 부탁했지만 “장애인이 무슨 성별이 있냐? 다른 장애인들은 아무 불평 불만 없다”며 오히려 별종 취급을 당했다.

서 씨는 불만을 보건복지부와 시청 게시판에 올렸지만 돌아온 것은 온갖 명목으로 목욕 서비스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A 단체의 답변 뿐이었다.

시설에서 지내다 최근 자립생활을 시작한 중증 장애인 조 모(30) 씨도 B 장애인 단체가 실시하는 목욕 서비스를 신청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상담원이 목욕 자원봉사자가 여성 밖에 없으니 “목욕을 하려면 ‘수치심’을 견뎌라”는 뜻밖의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동목욕 서비스가 성별 구분없이 실시되면서 장애인들의 인격이 배려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총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봉사자 부족과 빡빡한 일정 탓에 성별에 대한 고민 할 겨를 없이 목욕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결국 한 주에 한 번 돌아오기도 힘든 목욕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들은 수치심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

부산 북구의 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동년배 이성에게 자신들의 알몸을 보이는 것을 힘들어 하지만, 괜히 말을 했다가 목욕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수치심을 그대로 감수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해 도입된 이동차량 목욕서비스가 서비스 기관의 배려부족으로 되려 장애인에게 말 못할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노컷뉴스 2007-04-28)

2007 인권상담 사례집

부 록

국가인권위원회법

*All Humanrights
for All*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정 2001. 5. 24. 법률제6481호
- 개정 2005. 3. 31. 법률제7427호(민법)
- 개정 2005. 7. 29. 법률제7651호
- 개정 2005. 8. 4. 법률제7655호(치료감호법)
- 개정 2005. 12. 29. 법률제7796호(국가공무원법)
- 개정 2005. 12. 29. 법률제7796호(국가공무원법)
- 개정 2006. 10. 4. 법률제8050호(국가공무원법)
- 개정 2007. 5. 17. 법률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보호소
 -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7.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 ①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 ⑥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시행일 2001.11.25]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 ①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인권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05.7.29). <2004.1.29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 조 효력상실>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7.29>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5.7.29>
- ④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7.29>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15조(자문기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 ①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 ①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급·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⑥ 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27조(인권자료실)

- ① 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 ④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② 삭제 <2005.7.29>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⑦ 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

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의 목적)

- ① 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질문·검사권)

-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진정의 기각)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05.7.29>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5.7.29>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7.29>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5.7.29>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 ⑤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제42조(조정)

-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②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개정 2005.7.29>
 -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2005.7.29>
-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①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개정 2005.7.29>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개정 2005.7.29>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결과와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 칙

제51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 칙

제56조(인권옹호업무방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

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개정 2005.7.29>
-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 2008.1.1] 제56조제2항

제57조(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1.11.25]

제58조(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6481호, 2001. 5. 24〉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 (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민법) 〈제7427호, 2005.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 내지 생략

부 칙 〈제7651호, 2005. 7.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치료감호법) 〈제7655호, 2005.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⑧내지 ⑨생략

부 칙 (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 내지 생략

부 칙 (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 10.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 내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㉒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해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ISBN 978-89-6114-016-4 93330